

제19116호 2017. 10. 24.(화)

【법 률】

○법률제14903호(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5
○법률제14904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149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4906호(천문법 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4907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0
○법률제14908호(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4909호(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12
○법률제14910호(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2
○법률제1491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14
○법률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16
○법률제14913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14914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149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4916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14917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14918호(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14919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4920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1492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8
○법률제14922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4923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32
○법률제14924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7
○법률제14925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39
○법률제14926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43
○법률제14927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0
○법률제14928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2
○법률제14929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3

(이면 계속)

○법률제14930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54
○법률제14931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56
○법률제14932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7
○법률제1493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58
○법률제14934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0
○법률제14935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62
○법률제14936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3
○법률제14937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64
○법률제14938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66
○법률제14939호(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67
○법률제14940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70
○법률제14941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71
○법률제14942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72
○법률제1494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73
○법률제14944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76
○법률제14945호(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76
○법률제1494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7
○법률제14947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78
○법률제14948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79
○법률제1494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82
○법률제14950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84
○법률제14951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94
○법률제14952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95
○법률제14953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97
○법률제14954호(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99
○법률제14955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101
○법률제14956호(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04
○법률제14957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10
○법률제14958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113
○법률제14959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114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8397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5
-----------------------------	-----

【부 령】

○국토교통부령제458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16
--	-----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91호(국적회복)	1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5호(하남감일 A-4블럭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6호(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7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옥포지구 A-3BL>)	1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26호(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B1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2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9호(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1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4호(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13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5호(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14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15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15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9호(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4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15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3호(도로구역 결정<변경>)	2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4호(접도구역 변경).....	2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5호(도로구역 결정<변경>)	2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6호(접도구역 변경).....	2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7호(지형도면<변경>)	2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8호(도로구역 결정<변경>)	2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9호(지형도면<변경>)	2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6호(하천점용 허가).....	2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7호(하천점용 허가).....	20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4호(도로구역 결정<변경>)	20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5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2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3호(하천점용 허가).....	2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4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2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5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2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6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2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7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2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8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2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9호(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2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2호(시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위치 이탈>)	2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3호(시설항로표지 기능정지<소등>)	21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1호(하천수 사용허가)	21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2호(실시계획 인가)	21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5호(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14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26호(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2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8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2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0호(한국산업표준 확인).....	2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217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388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7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5호(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18

○법무부공고제2017-267호(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0
○법무부공고제2017-268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0
○법무부공고제2017-269호(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01호(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2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3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2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4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345호(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취소).....	224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7-308호(2018년도 제62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225
○서울지방법우정청공고제2017-181호(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재선정)	228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고시제2017-272호(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23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학교<삼송6초> 시설사업 시행계획).....	240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241
○(서울)마포구공고제2017-989호(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241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공고제2017-54호(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42

【인 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243
--------------------	-----

【상 훈】

○서훈(외교부)	246
----------------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48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48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	249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김 상 곤

교육부장관

●법률 제14903호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과학교육 진흥법 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3. “과학·수학·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기본방향) ① 과학교육환경은 과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탐구능력 및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수학교육환경은 수학적 소양, 수학적 지식·문제해결능력 및 수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③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문제해결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④ 과학·수학·정보의 교과별 교육과 더불어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수학·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기관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전시·체험시설의 설치·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시설의 이용) ① 교육기관은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연구·실험 및 학습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융합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창의적 융합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교재·교육자료 개발
4.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6.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7.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업무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재·교육자료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교실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기관, 훈련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2. 과학·수학·정보 교원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
3. 과학·수학·정보 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교육 진흥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수학과 정보에 관한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과학교육 진흥법」의 제명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5조).
- 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의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7조).
- 다. 교육부장관은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교재·교육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이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0조)
-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김 상 곤

●**법률 제14904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 학생 복지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유 영 민
통신부장관

●법률 제149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인증하는 그린인터넷인증 제도가 인터넷중독의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인증 신청 건수가 연평균 3건에 불과하는 등 그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유 영 민
통신부장관

●법률 제14906호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민이 관공서 휴무일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주 5일제 정착을 위한 국민의 인식과 근로문화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유 영 민

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

박 상 기

●법률 제14907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2제2항 전단 중 “있다”를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2조의2제3항 중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를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자거래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태만·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추가하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장 관

김 영 춘

●법률 제14908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3호 중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를 “공개된 장소에서”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를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다노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6헌가3)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김 부 겸

●법률 제14909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비지도사시험의”를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날부터 1년”을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7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비업자의 경우 매년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률마다 행정형벌의 편차가 큰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장

김 영 춘

●법률 제14910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을 포함한 11명”을 “2명을 포함한 2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⑤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및 해양경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구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김 부 겸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중 “제148조 및 제148조의2”를 “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그 밖의”를 “차를 이동시키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경우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 위험행위,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를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2조제3항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약에”를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제140조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으로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을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16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5조제1항”을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6호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관 간 약정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며, 도로 외의 곳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김 부 겸

●법률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성검토”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행정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풍수해의”를 “자연재해의”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중전의 제1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성검토”로 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비”를 “정비 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2장제1절의 제목 중 “정비”를 “정비 등”이라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발계획등”을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으로,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검토하는”을 “검토 및 평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검토하기”를 “심의하기”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6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6조 앞의 “제2절 풍수해”를 삭제하고, 제16조의4 앞에 “제2절 풍수해”를 삽입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제목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풍수해의”를 “자연재해의”로, “5년”을 “10년”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로 한다.

-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풍수해저감”을 “자연재해저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풍수해저감사업비”를 “자연재해저감사업비”로 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중 “풍수해저감”을 “자연재해저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5조의4제4항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의2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진행 중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로 한다.

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의2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약”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이유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고,

자연재해와 관련한 계획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상 자연재해와 관련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맞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제도를 구분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함(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7항 신설).

다.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및 제2항).

라.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3항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제66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김 부 겸

●법률 제14913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레저문화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등 주변환경의 개선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며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김 부 겸

●법률 제1491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김 부 겸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관

김 현 미

●법률 제1491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본문 중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제6항까지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및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제9항”을 각각 “제10항”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7조제12항”을 “제147조제13항”으로 한다.

제151조제2항 본문 중 “제147조제12항”을 “제147조제1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김 부 겸

●법률 제14916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김 부 겸

●법률 제1491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 검찰, 경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김 부 겸

●법률 제14918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김 부 겸

●법률 제14919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한도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김 부 겸

●법률 제14920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의 제목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을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등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을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대책본부”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같은 법 제26조의 국가기관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자
2.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진·화산방재 정책심의회를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의3).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들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제1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제1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장 박 능 후**

●법률 제1492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제76조의 제목 중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을 “유족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 ⑦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제9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제1항 중 “급여”를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로, “5년간”을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1항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과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입양된 자가 과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함(제75조제1항 및 제76조).

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2조).

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제115조제1항 및 부칙 제5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

박능후

●법률 제1492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방문요양서비스”를 “방문요양과 돌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3.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홍보,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5.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의 수행기관 지원 및 평가
6.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배부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의6제2항제2호 중 “방문요양서비스나”를 “방문요양과 돌봄이나”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審査請求”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第2項”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第4項”을 “제5항”으로 한다.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3 신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독거노인 지원 사업의 홍보, 수행기관 교육 및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3 신설).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7조의4 신설).
- 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의 퇴소절차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자격 여부 및 입소자격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 바. 현행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함(제50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축함으로써”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로 한다.

제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으로 한다.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4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2급·3급으로”를 “2급으로”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를 “3배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7조제3항 각 호”를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시·군·구”를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제7조제3항 각 호”를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를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제33조의5”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제41조의3을 삭제한다.

제51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6조의3제1항”을 “제6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제57조 중 “제6조의3제1항”을 “제6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5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취임하는 임원 또는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회복지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도에 두었던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제5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군·구에 두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6조(복지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위촉되었던 복지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본다.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8, 제41조의3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장 관

박 능 후

●법률 제1492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발급”을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을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방법과 절차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를 “요청을 받은 자”로, “개인위치정보를”을 “개인위치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인위치정보를”을 “개인위치정보등을”로, “아니 된다”를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등”으로, “절차”를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제9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휴업, 폐업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중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를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신청서의 파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신청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문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실종아동등의 위치를 조속히 확인하여 발견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 지침의 교육·훈련 및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대상 시설의 신고, 허가 또는 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장**

박 능 후

●법률 제1492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0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4항 단서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제45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들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기관·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가족·친족,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 신체적·정신적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상담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제28조의2제3항”을 “제2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독립적 구성이 불가하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및 관할 경찰서의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사례전문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 사례전문위원회 위원의 명단,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 사례 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

제59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중 “제56조”를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의2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3. 제4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에 대한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의 유아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들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나.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6조).

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마.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6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 신설).

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6조의2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자. 아동학대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정비하여 현실화함(제71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보건복지
장 관

박 능 후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 부 겸

●법률 제14926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시험을”을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생물학적 동등성을”을 “임상시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을”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자격정지”를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자격정지”를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 외의 자”를 “제조업자 외의 자(제4호의 경우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상시험을”을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의약품”을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4.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회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 또는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 또는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제34조의 제목 중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를 “임상시험 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하 “임상시험등”이라 한다)”을 “임상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을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임상시험등”을 각각 “임상시험”으로, “임상시험실시기관이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을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상시험등을”을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로, “임상시험등이”를 “임상시험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를 “해당하여”로,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제3항제3호”를 “제34조의2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자”를 “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응급환자”를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임상시험등”을 각각 “임상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을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으로

로, “제3항제3호에 따른 임상시험등의 대상자의 동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임상시험등의 실시 기준”을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으로 한다.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등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을 준수할 것
3.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의뢰자와 책임자의 성명(법인명)·주소·연락처 및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것
3. 해당 의약품등을 연구 또는 분석(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 또는 분석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34조의2제1항 중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하려는 기관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제1호에 따라”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아 검체분석을”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한다.

1. 임상시험[인체로부터 수집·채취된 검체의 분석(이하 “검체분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2. 임상시험 중 검체분석을 실시하려는 기관
- ③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만 해당한다.
1. 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이하 이 호에서 “수용자”라 한다)를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상 수용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임상시험의 내용, 임상시험으로 인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건강상의 피해 정도와 보상 내용 및 보상 신청 절차 등을 임상시험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을 것
3.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임상시험성적서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를 작성·발급하고 그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34조의4의 제목 중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이하 “임상시험등 실시기관”이라 한다)”을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임상시험등”을 각각 “임상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상시험등 실시기관의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상시험등”을 “임상시

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임상시험등 실시기관에서”를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로, “임상시험등 업무를”을 “임상시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임상시험등에 참여하는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상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상시험등 실시기관”을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임상시험등”을 각각 “임상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임상시험등”을 각각 “임상시험”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장 및 첨부 문서(첨부 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을 “포장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명칭(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명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조 연월일(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조 연월일 대신에 사용기한을 말한다)”을 “사용기한”으로 한다.

법률 제14328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명칭(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명칭”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제65조의4로 하고,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5조의4(중전의 제65조의2) 중 “제65조”를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으로 한다.

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6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5조의3(첨부 문서 기재사항)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외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외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은 그 기준에서 의약외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6조 후단 중 ““제31조제4항”으로”를 ““제31조제4항”으로, “제52조제1항”은 “제52조제2항”으로,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는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및 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로 한다.

제6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범위와”를 “방법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은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제69조제1항제1호 중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한다.

제69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6조제2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경우

제74조 중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각각 “임상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4조의2제3항”을 “제34조의2제3항제3호”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성적서”를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로 한다.

제7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2. 제79조제2항제1호 중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정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제5조제1호·제3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기관등”을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검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및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1호 중 “제34조의2제3항”을 “제34조의2제3항제3호”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성적서”를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제3항”을 “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중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각각 “임상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3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95조제1항제10호 중 “제60조”를 “제60조(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6조제4호 중 “제63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1항을”을 “제63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또는 제65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3호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제3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5 중 “임상시험등”을 “임상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3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8항제2호, 제42조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5항, 제12조제5항, 제68조제6항·제7항, 제69조의4제4호, 제79조제2항제3호, 제79조의2, 제98조제1항제3호·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의약품 등의 광고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의약품 광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상시험 등의 계획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하여 제3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중 의료기관은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한정한다)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중 분석기관은 제34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한정한다)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중 분석·의료기관은 제34조의2제1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한정한다)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한정한다)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약외품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기재사항이 적혀있는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에 대해서는 제65조제1항,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및 제66조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 등을 알리도록 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 승인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제도를 각각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과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함(제2조제17호 및 제34조 등).
- 나.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 기술을 이전한 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등을 위탁제조판매업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함(제3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을 알리도록 함(제34조제3항제3호 신설).
- 라. 모든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의약품의 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도록 하며,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 마.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함(제68조제6항 신설).
- 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제79조의2 신설 등).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박 능 후
보건복지부장관

●**법률 제1492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응급의료기관등”을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로 한다.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1항 중 “구급차에”를 “구급차등에”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432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3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나.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 절차를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5항 및 제6항).

다. 응급환자 이송능력 확인 대상을 ‘구급차등’으로 명확히 함(제48조의2제1항).

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제2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장

박 능 후

●법률 제1492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을 “장제비·진료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절차”를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으로 한다.

③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벌칙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장

박 능 후

●법률 제14929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목적 외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이식·투여하거나 이식·투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1항 중 “제대혈은행의”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의”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이식·투여하거나 이식·투여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적격 제대혈 등을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 능 후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 무 위 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 운 규

●법률 제1493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를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하되”를 “5년마다 수립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 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양성·활용에 대한 지원
4.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재단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센터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센터
 3. 실험용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하는 센터
 4.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센터
 5.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제12조제1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를 “재단과”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를 “재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을 “재단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 제14조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 제16조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 제17조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각각 “재단”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 중 “제15조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를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 제20조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를 “재단에”로 한다.
- 제24조제1항 전단 중 “제6조제7항에”를 “제6조제8항에”로, “보건복지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각각 “재단”으로 한다.
- 제27조제4호 중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재단”으로 한다.
- 제28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운영에”를 “운영과 사무국 운영 등에”로 한다.

- 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에 각각 설치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시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지원기구 및 지원사무소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김은경

환경부장관

●법률 제14931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

김영주

●법률 제149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제14조제3항 중 “산재보험료율”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재보험료율”을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로, “금액”을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으로, “산재보험료율의”를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로, “비율을 그”를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재보험료율의”를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로, “비율을 그”를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김 영 주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3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①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퇴근의 정의 신설(제5조제8호 신설).

나.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출퇴근 중 경로 이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이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제37조제3항 신설).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관

김 현 미

●법률 제1493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구역이나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행정구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모집한”을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양한”을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로 한다.

②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피스텔 등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자 우선 분양의무를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하여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며,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제3항 중 “구성”을 “위원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를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중 “따른 승인을”을 “따라 지적전산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인을 신청하는”을 “신청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량기술자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적전산자료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별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전문가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16조).

나. 중앙지적위원회 및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28조제4항 신설).

다.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봄(제40조제6항 신설).

라. 지적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37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를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우선 고용대상”을 “채용의무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이전지역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2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3항 후단 중 “30인”을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함(제29조의2제1항 및 제5항).
- 나.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둠(제29조의4 신설).
-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제29조의5 신설).
- 라. 공동혁신도시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31조제3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

김현미

●법률 제14938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중 “변경할 때”를 “변경할 때 및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로, “주택지구 주변지역”을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전단 중 “지정할”을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선 승인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정하기”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지정된”을 “지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부지”를 “부지 및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으로 한다.

제4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49조의6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정부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택지역 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

김현미

●법률 제14939호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정부”를 “국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제13조제1호 중 “출연금(出捐金)”을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중 “정부”를 “국가”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항제10호 중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를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로 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제8항·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법률 제147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4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⑪ 법률 제1487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40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결과보고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에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이 저조하므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 제출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4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를 “의견청취 절차,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로 한다.

- ⑤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언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 **법률 제1494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5항 각 호”를 “제11조제7항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1조제4항 본문”을 “제11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3조제1항에 따른”으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를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를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질병 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를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제19조제3항 중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철회한 자 또는”을 “철회한 자,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또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 중 “토지소유자”를 “토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마목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다”으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를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를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제7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중 “토지소유자”를 “토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다”으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를 “3주택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7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9조제18항 중 “제39조제2항제4호”를 “제39조제2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제19조제2항제4호”를 “제19조제2항제5호”로 한다.

◇개정이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시 5년간 해당점 제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함(제19조제2항).
- 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제46조제3항 신설 및 제47조제1항).
- 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공급 수에 대한 현행법상의 특례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제48조제2항제7호).
-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

●법률 제1494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상향 조정”을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만 할 수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

●법률 제14945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협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4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제2조제3호·제7호·제15호”를 “제2조제3호·제8호·제16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 전단 중 “물류단지재정비사업(부분 재정비사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여야 한다”를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하되, 부분 재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조제4항 중 “지원기관에게”를 “지원기관에”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금액을 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고, 물류단지 개발시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의제조항에 포함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행정비효율을 제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4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9조의2제3항 중 “제14조의8”을 “제14조의8,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주주 1인의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1인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주 1인의 주식소유한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국민들이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시장 상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장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도록 명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상장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4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를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개발계획의 변경에”를 “건설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63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39조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불응한 경우

⑧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8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9 및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8조제2항,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청장의 업무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제2호·제6호·제10호·제14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건설청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건설청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제2호·제6호·제10호·제14호에 따라 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이 법 시행 후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는 때에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 등에 한정하여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를 적용한다.

④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는 때에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 등에 한정하여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를 적용한다.

- ⑤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설청장에게 신청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 처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를 행정복합중심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대상 제외 부(部)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종전의 대학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유지”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26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제5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사용되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을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1항에”를 “제21조제12항에”로 한다.

20의6.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제4호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의 정상적인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시행일부터 3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 차령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재등록하는 자동차 및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전기자동차·연료전기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아니한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말소된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도난차량이 회수된 경우와 동일하게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7조”를 “제47조의11”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중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3의 제목 중 “판매의”를 “판매 등의”로, “중지”를 “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또는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를 “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중 “자동차제조사”를 “자동차제작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를 “제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로, “제조사”를 “제작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로 한다.

제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

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②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교환·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환·환불중재

나.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②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

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11(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2조 전단 중 “제30조의5”를 “제30조의6”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관리사업 등”으로 한다.

제53조의2 중 “제84조제2항제20호”를 “제84조제3항제20호”로 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2. 이용약관의 개선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제1항제1호 중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후단 중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를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증서의”를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3항제23호에서 같다)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증보험회사”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58조의4 및 제58조의5를 각각 제58조의5 및 제58조의6으로 하고,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외관 사진

3.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④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제53조”는 “제65조의2”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제66조제1항제6호 중 “제56조”를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바목 중 “제58조의5제3항”을 “제58조의6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제72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체부품인증기관

14.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제75조제1호 중 “제21조”를 “제21조, 제30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4조제2항”을 “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7조의2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제80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자

제81조에 제25호의2, 제25호의3 및 제2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25의3.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의2 중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제9호·제11호 및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58조의3제1항·제4항,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6까지, 제65조의2, 제66조제1항·제4항·제5항, 제72조제1항제14호, 제75조제6호 및 제81조제25호의2·제25호의3·제2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2호,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 제77조의2제7호의2 및 제84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3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은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들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 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무 위반자들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운행에 관한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시험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함(제27조).
- 나.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6 신설).
- 다.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제47조의2 신설).
- 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제47조의4 신설).
- 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제58조 및 제58조의4).
- 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 사.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84조제2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 **법률 제14951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2019년 1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장기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편의시설 설치·보수 비용,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사업 등이 1년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중장기 사업목표 수립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공사기간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5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전용주차구획”을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1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3(중전의 제2호의2) 중 “제19조의22”를 “제19조의2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을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로 한다.

2의2.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제19조의23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9조의22 및 제19조의23을 각각 제19조의23 및 제19조의24로 하고, 제19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판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3(중전의 제19조의22)제5항 후단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4(중전의 제19조의23) 앞에 “제6장 보칙”을 신설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의22제2항”을 “제19조의2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9조의22제4항”을 “제19조의2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3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제30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의22제5항”을 “제19조의23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19조의22제1항”을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상주차장의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 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5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①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에 대한 개량 및 변경 등(이하 “개조”라 한다)을 임의로 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려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개조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개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조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개조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조승인절차, 개조신고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법률 제14868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2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한 자

3의3.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수행하게 한 자

3의4.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제81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제1호, 제78조제2항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8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조승인을 받거나 개조신고를 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제작된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승인절차가 없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안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54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화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① 장비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및 장비운영자가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의 종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우리나라와 항공보안장비 성능 상호인증 협약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그 성능을 인증받은 항공보안장비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항공보안장비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27조의3(인증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성능 인증을 위하여 항공보안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평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의5(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의4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경우
5.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성능평가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6(수수료) 제27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장비의 안전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운영과 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의 취소

제7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평가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 중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을 “제2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7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장비운영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항공보안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항공보안장비에 대하여는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장비운영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항공보안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항공보안장비의 종류·운영·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며, 항공보안장비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 운영하되, 인증·시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

김현미

●법률 제14955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항공기의 종류별”을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자격 및 교육평가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훈련운영기준을 전문교육기관지정서와 함께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설 등으로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8. 이 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8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제1항”을 “제48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34조제12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의2”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4호 중 “제48조제5항 및 제6항”을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40조 중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 중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4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교육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7조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한정을 받은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로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종교육증명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전문교육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이 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훈련 중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비행교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직업전문학교 등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조종사 교육훈련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법률 제14956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이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나. 그 밖에 가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5조의3을 삭제한다.

제15조의4제2항 후단 중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및 제15조의3에 따른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의 업무와”를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업무와”로 한다.

제1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4.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관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부터 제9장까지를 각각 제8장부터 제10장까지로 하고, 제7장(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2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2(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원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지원공사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3(사무소) ① 지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지원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원으로 한다.

②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① 지원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에 지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원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지원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의7(운영위원회) ① 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3.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도시개발채권의 발행

4. 그 밖에 지원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1. 지원공사의 사장

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해외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공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가. 해외건설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 나. 금융기관에서 해외건설금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 다. 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도시공학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인 사람
 - 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① 지원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③ 지원공사의 임원의 임면(任免)은 「상법」 제382조제1항, 제389조제1항 및 제409조제1항을 준용하고, 지원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8조의11(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원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8조의13(공무원 등의 파견 등) ①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지원공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④ 파견직원이 제28조의16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원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28조의14(대리인의 선임) ① 지원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5(비밀누설 등의 금지)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16(업무) ①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 ① 지원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지원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의18(차입) ①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8조의19(해외인프라·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지원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인프라·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④ 해외인프라·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해외인프라·도시개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제28조의20(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공사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의21(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8조의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8조의1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제4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의6을 위반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공사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지원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원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로는 지원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지원공사의 설립 이전에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지원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지원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고, 개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495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식육포장처리장”을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집유업의 영업자 및”을 “집유업의 영업자,”로, “영업자는”을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으로 한다.

제9조의4제4호 중 “제12조제2항·제3항”을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 “원유”를 “원유, 식용란”으로, “작업장”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8항”으로 한다.

②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업장”을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제22조제1항 중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을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발급”을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를 “검거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을 “포상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7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5호의2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본문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2, 제5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이유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며, 식용란의 출하 시 산란일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제12조제4항 신설).

나.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제12조의2제2항 신설).

-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 라.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2조).
-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4항 신설).
- 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제39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제14958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승계)”를 “(승계 및 신고)”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계자(상속인은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1항 단서”를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조제3항(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2조·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1항 단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제14959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관

김 현 미

●대통령령 제2839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6층 이상일 것

제1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제32조제2항제1호 중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을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32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부 칙

제1호(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16층 미만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의 건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 축소(제10조의3제1항제2호)

종전에는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연면적의 규모는 층수 또는 높이와 달리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축소함.

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및 단독·공동주택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부 령

●국토교통부령 제45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I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56조제2항”을 “제61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397호, 2017. 10. 24. 공포, 10. 24. 및 12. 1. 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지진구역 I에서 건축하는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모든 지역에서 건축하는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9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이기순	1943.01.18	여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2	1974.10.29	외국국적취득
조수진	1981.01.29	여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5	2003.08.11	외국국적취득
강태선	1937.09.11	남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88	2013.05.24	외국국적취득
남익희	1938.01.09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산 1	1979.04.01	외국국적취득
다시제 베그습다	1973.03.07	여	몽골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141	2008.08.26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복금	1959.10.01	여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1133	1996.02.28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경숙	1951.07.20	여	독일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행정길 100-5	1985.06.15	외국국적취득
김남우	1950.04.28	남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35	1988.12.31	외국국적취득
문수빈	1987.04.15	여	우즈베키 스탄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200	2015.06.27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양선	1952.04.09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55길 12-3	2004.08.19	외국국적취득
금기화	1952.02.06	여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294-11	2014.09.25	외국국적취득
김수출	1938.08.14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90	2006.11.17	외국국적취득
박기화	1945.04.25	여	미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20	2016.11.01	외국국적취득
허순희	1949.11.2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27	1973.11.13	외국국적취득
박종숙	1952.05.05	여	미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191-7	2006.05.05	외국국적취득
이형자	1948.07.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6길 9-8	1978.04.18	외국국적취득
고신천	1952.05.26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3	1997.12.08	외국국적취득
이인옥	1949.07.29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02번길 43	2001.07.10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47.04.10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7	1977.06.08	외국국적취득
사롤	1990.11.27	여	몽골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127번길 11	2012.12.30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강민환	1951.11.13	남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17번길 101-50	2010.07.15	외국국적취득
김용주	1946.01.28	남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71-2	2004.01.20	외국국적취득
박열	1946.05.14	남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17	2014.11.17	외국국적취득
황정환	1947.01.04	남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84	2016.10.18	외국국적취득
김차득	1947.05.23	남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820	2001.08.10	외국국적취득
김열만	1950.02.14	남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220	2002.07.04	외국국적취득
정창현	1950.10.19	남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216	2016.04.06	외국국적취득
팜티꾸엔	2001.11.04	여	베트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42-36	2017.04.27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하주영	1945.01.22	여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460	2000.01.25	외국국적취득
서영희	1951.05.07	여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87번길 28	1999.05.25	외국국적취득
이희종	1952.05.14	여	미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20	2016.10.11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2014.07.07	여	마다가스카르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조천리 469	2016.07.01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경진	1950.04.10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7길 12	2014.08.14	외국국적취득
유제권	1950.09.0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길 36-22	1992.07.31	외국국적취득
안보길	1952.02.1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17	2001.08.14	외국국적취득
김명미	1948.04.2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50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김양곤	1952.04.03	남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봉정길 265-1	2005.02.22	외국국적취득
김옥분	1952.04.26	여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산 12	1979.10.31	외국국적취득
이민숙	1952.04.21	여	독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0길 48	1993.05.24	외국국적취득
한운기	1980.06.26	남	덴마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21	1984.05.14	외국국적취득
강영길	1946.05.24	남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6길 39	1981.11.20	외국국적취득
최은철	1948.03.08	여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54	1978.08.09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52.05.1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635	1999.09.20	외국국적취득
이관영	1948.10.2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56	1996.07.02	외국국적취득
박임숙	1922.12.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길 21-6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분숙	1928.01.1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92-4	1999.12.03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36.08.15	여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가실리 109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전봉심	1943.09.01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9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신미진	1981.05.10	여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3.03.08	외국국적취득
한용희	1943.05.23	남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2길 10	2012.10.29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나윤이	1934.03.30	여	타이완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616	1976.11.02	외국국적취득
정인용	1949.07.13	남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5나길 65-26	1981.01.21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36.08.23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49	2001.12.17	외국국적취득
김길자	1950.09.1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63	1995.12.08	외국국적취득
안경희	1952.05.18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84-22	1999.08.26	외국국적취득
양천모	1951.02.26	남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109	2000.08.02	외국국적취득
송영하	1952.05.20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41-10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임성균	1952.05.19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93	2015.09.19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옹우인티 투이	1987.01.15	여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나길 32-25	2009.11.28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강숙	1952.05.23	여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32	1991.10.10	외국국적취득
한양섭	1952.05.03	여	미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173	1986.12.12	외국국적취득
김일호	1940.02.28	남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17-14	1991.06.14	외국국적취득
최순옥	1953.11.26	여	중국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8	2013.05.25	국적취득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경식	1952.04.0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12	1994.11.22	외국국적취득
마양원	1936.08.28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1965.10.08	외국국적취득
김광숙	1942.03.27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5	2005.10.26	외국국적취득
전태숙	1948.11.13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15길 21-33	1994.04.14	외국국적취득
강인	1952.01.08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11	2014.01.14	외국국적취득
문이만	1950.11.24	남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308-1	2012.04.03	외국국적취득
타다라트 포티산	1971.11.20	여	타이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123	2005.11.04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루시안나	1980.03.12	여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574	2008.09.06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광석	1950.01.12	남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 131	2016.07.27	외국국적취득
지용규	1946.03.15	남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92	1993.02.05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창규	1951.05.03	남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82	1991.05.14	외국국적취득
남정희	1948.02.02	여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기양리 105	1983.06.03	외국국적취득
후꾸오까 가즈요	1969.01.22	여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문덕로1길 32-7	1996.06.26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상수	1950.11.22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상서동 21	2016.10.18	외국국적취득
남경희	1977.07.27	여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306	2012.06.07	외국국적취득
양영경	1940.12.10	여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847	2002.06.27	외국국적취득
노수현	1950.03.11	남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668	2016.10.14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야마구찌 마유미	1965.10.30	여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용각리 816	1996.07.30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대후	1949.03.05	남	미국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안길 32-6	1986.08.12	외국국적취득
유대숙	1952.05.08	여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54	1982.04.15	외국국적취득
안민식	1952.03.08	남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64	1993.07.16	외국국적취득
한익수	1947.02.19	남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4길 28	1987.12.17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2.04.25	여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요성리 408	2007.02.23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52.05.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09	1995.03.17	외국국적취득
유경자	1942.08.25	여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1002번길 113-3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49.03.0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5길 61-4	1987.12.09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41.09.1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5길 61-4	1988.03.09	외국국적취득
조한규	1949.06.17	남	호주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73	2003.05.08	외국국적취득
유정엽	1933.09.1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39-6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송방자	1944.03.04	여	미국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팔길 462	1980.09.17	외국국적취득
진원목	1929.01.0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39-6	2001.07.03	외국국적취득
방미자	1954.11.08	여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로 178	2016.04.10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석봉	1954.08.05	남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로 178	2016.04.10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경희	1940.10.21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서야동 123	2013.09.17	외국국적취득
배미라	1952.03.10	여	미국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48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이신웅	1945.02.01	남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자산공원길 20-1	2013.02.2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5호

하남감일 A-4블럭 공공주택(공공분양)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A-4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4블럭
 - 나. 사 업 면 적 : 25,875.00㎡
 - 다. 대 지 면 적 : 25,875.00㎡
 - 라. 연 면 적 : 78,031.64㎡
 -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589세대, 지상1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4. 사 업 비 : 194,122,130천원 (주택도시기금 38,495,000천원)
5. 사업기간(변경) : 2010. 12. ~ 2020.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주택토지공사 수도권주택센터(031-738-3341), 경기도 공동주택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00), 수도권주택센터 (031-738-334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6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강원도(033-249-2957), 원주시(033-737-3964),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사업단(033-769-04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7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I.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 가. 명칭(변경없음)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 나.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 다. 면적(변경없음)
 - 3,596,951.2㎡(1단계: 1,809,487.2㎡/ 2단계: 277,841.8㎡/ 3단계:414,687.2㎡/ 4단계:1,094,935.0㎡)
 -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31,021인
 - 건설호수 : 11,932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평균분양면적 (㎡)	비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581,642.3	163,500.8	81,486.1	264,646	6,145	2,080	1,694	2,013	15,976	5,408	4,403	5,234	-	
단독주택	206,956.4	11,242.6	14,039.9	100,780	719	42	49	241	1,870	109	127	627	-	
필지형단독	206,956.4	11,242.6	14,039.9	258	719	42	49	1	1,870	109	127	3	260~330	
블록형단독	-	-	-	100,522	-	-	-	240	-	-	-	624	330	
공동주택	374,685.9	152,258.2	67,446.2	163,866	5,426	2,038	850	1,772	14,106	5,299	2,210	4,607	-	
60㎡이하	93,252.5	-	-	-	1,692	-	-	-	4,400	-	-	-	83	
60㎡~85㎡이하	271,485.4	152,258.2	47,214.2	-	3,626	2,038	630	-	9,427	5,299	1,638	-	116	
85㎡초과	9,948.0	-	20,232.0	163,866	108	-	220	1,772	279	-	572	4,607	142	
주거복합	-	-	(47,426.2)	-	-	-	795	-	-	-	2,066	-	149	
85㎡초과	-	-	(47,426.2)	-	-	-	795	-	-	-	2,066	-	149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박 상 우
원주시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1)	원 창 목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13개소	254,234.3	203,589.0	12,260.2	38,385.1	-	
이전 공공 기관	이전1	반곡동 1858-2대	21,782.0	21,782.0	-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전2	반곡동 2049-2대	20,154.0	20,154.0	-	-	-	도로교통공단
	이전4	반곡동 2047-7대	4,919.0	4,919.0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전5	반곡동 2047-8대	13,456.0	13,456.0	-	-	-	대한적십자사
	이전6	반곡동 2047-10대	23,131.0	23,131.0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전7	반곡동 1894-5대	31,385.0	31,385.0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전8	반곡동 1910-8대	3,870.3	3,870.3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전9	반곡동 1914-1대	19,307.0	19,307.0	-	-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전10	반곡동 1860-6대	4,500.0	4,500.0	-	-	-	대한석탄공사
	이전11	반곡동 1914-6대	30,536.0	30,536.0	-	-	-	한국관광공사
	이전12	반곡동 1914-3대	32,600.0	32,600.0	-	-	-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전13	반곡동 2049-4대	12,260.2	-	12,260.2	-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전14	반곡동 2047-14대	38,385.1	-	-	38,385.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3월 19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4. 6. 30

2단계 : 2015. 3. 31

3단계 : 2016. 12. 31

4단계 : 2017.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3,596,951.2	1,809,487.2	277,841.8	414,687.2	1,094,935		3,596,951.2	1,809,487.2	277,841.8	414,687.2	1,094,935	100.0	50.3	7.7	11.5	30.4	100.0	50.3	7.7	11.5	30.4	
클러스터 용지	소 계	398,769.6	203,589.0	24,946.7	88,132.9	82,101	감) 1,352	397,417.6	203,589.0	24,946.7	88,132.9	80,749	11.1	5.7	0.7	2.5	2.3	11.0	5.7	0.7	2.5	2.2	
	이전공공기관	254,234.3	203,589.0	12,260.2	38,385.1	-		254,234.3	203,589.0	12,260.2	38,385.1	-	7.1	5.7	0.3	1.1	-	7.1	5.7	0.3	1.1	-	13개소
	산학연 클러스터	144,535.3	-	12,686.5	49,747.8	82,101	감) 1,352	143,183.3	-	12,686.5	49,747.8	80,749	4.0	-	0.4	1.4	2.3	4.0	-	0.4	1.4	2.2	12개소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154,399.3	106,973.1	-	47,426.2	-		154,399.3	106,973.1	-	47,426.2	-	4.3	3.0	-	1.3	-	4.3	3.0	-	1.3	-	
	상업업무	106,973.1	106,973.1	-	-	-		106,973.1	106,973.1	-	-	-	3.0	3.0	-	-	-	3.0	3.0	-	-	-	
	복합용지	47,426.2	-	-	47,426.2	-		47,426.2	-	-	47,426.2	-	1.3	-	-	1.3	-	1.3	-	-	1.3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114,163.3	600,833.7	165,283.5	81,486.1	266,560		1,114,163.3	600,833.7	165,283.5	81,486.1	266,560	31.0	16.7	4.6	2.3	7.4	31.0	16.7	4.6	2.3	7.4	
	단 독	계	333,018.9	206,956.4	11,242.6	14,039.9		333,018.9	206,956.4	11,242.6	14,039.9	100,780	9.3	5.8	0.3	0.4	2.8	9.3	5.8	0.3	0.4	2.8	
		필지형	232,496.9	206,956.4	11,242.6	14,039.9	258	232,496.9	206,956.4	11,242.6	14,039.9	258	6.5	5.8	0.3	0.4	0.0	6.5	5.8	0.3	0.4	0.0	
		블럭형	100,522	-	-	-	100,522	100,522	-	-	-	100,522	2.8	-	-	-	2.8	2.8	-	-	-	2.8	
	공 동	계	758,256.3	374,685.9	152,258.2	67,446.2	163,866	758,256.3	374,685.9	152,258.2	67,446.2	163,866	21.1	10.4	4.2	1.9	4.6	21.1	10.4	4.2	1.9	4.6	
		아파트	758,256.3	374,685.9	152,258.2	67,446.2	163,866	758,256.3	374,685.9	152,258.2	67,446.2	163,866	21.1	10.4	4.2	1.9	4.6	21.1	10.4	4.2	1.9	4.6	
	준 주 거	11,981.5	8,284.8	1,782.7	-	1,914		11,981.5	8,284.8	1,782.7	-	1,914	0.3	0.2	0.0	-	0.1	0.3	0.2	0.0	-	0.1	
	근생시설	10,906.6	10,906.6	-	-	-		10,906.6	10,906.6	-	-	-	0.3	0.3	-	-	-	0.3	0.3	-	-	-	
공원 · 녹지	소 계	931,426.7	273,517.5	62,525.9	160,652.3	434,731		931,426.7	273,517.5	62,525.9	160,652.3	434,731	25.9	7.6	1.7	4.5	12.1	25.9	7.6	1.7	4.5	12.1	
	근린공원	589,775.3	56,693.4	17,300.2	119,472.7	396,309		589,775.3	56,693.4	17,300.2	119,472.7	396,309	16.4	1.6	0.5	3.3	11.0	16.4	1.6	0.5	3.3	11.0	8개소
	어린이공원	6,376.4	4,844.4	-	-	1,532		6,376.4	4,844.4	-	-	1,532	0.2	0.1	-	-	0.0	0.2	0.1	-	-	0.0	4개소
	소공원	6,389.0	5,162.0	-	-	1,227		6,389.0	5,162.0	-	-	1,227	0.2	0.1	-	-	0.0	0.2	0.1	-	-	0.0	8개소
	수변공원	138,792.7	104,602.2	34,190.5	-	-		138,792.7	104,602.2	34,190.5	-	-	3.9	2.9	1.0	-	-	3.9	2.9	1.0	-	-	12개소
	체육공원	39,887.3	10,037.3	-	29,850.0	-		39,887.3	10,037.3	-	29,850.0	-	1.1	0.3	-	0.8	-	1.1	0.3	-	0.8	-	2개소
	완충녹지	85,637.2	44,416.1	4,319.6	8,846.5	28,055		85,637.2	44,416.1	4,319.6	8,846.5	28,055	2.4	1.2	0.1	0.2	0.8	2.4	1.2	0.1	0.2	0.8	11개소
	경관녹지	19,542.1	11,934.1	-	-	7,608		19,542.1	11,934.1	-	-	7,608	0.5	0.3	-	-	0.2	0.5	0.3	-	-	0.2	5개소
	공공공지	4,347.9	1,864.8	-	2,483.1	-		4,347.9	1,864.8	-	2,483.1	-	0.1	0.1	-	0.1	-	0.1	0.1	-	0.1	-	6개소
	하 천	40,678.8	33,963.2	6,715.6	-	-		40,678.8	33,963.2	6,715.6	-	-	1.1	0.9	0.2	-	-	1.1	0.9	0.2	-	-	7개소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998,192.3	624,573.9	25,085.7	36,989.7	311,543	증) 1,352	999,544.3	624,573.9	25,085.7	36,989.7	312,895	27.8	17.4	0.7	1.0	8.7	27.8	17.4	0.7	1.0	8.7	
	도 로	620,667.0	480,116.4	8,221.4	19,187.2	113,142		620,667.0	480,116.4	8,221.4	19,187.2	113,142	17.3	13.3	0.2	0.5	3.1	17.3	13.3	0.2	0.5	3.1	가각 등 기타포함
	주차장	21,662.0	20,795.7	866.3	-	-		21,662.0	20,795.7	866.3	-	-	0.6	0.6	0.0	-	-	0.6	0.6	0.0	-	-	19개소
	광 장	15,331.7	15,331.7	-	-	-		15,331.7	15,331.7	-	-	-	0.4	0.4	-	-	-	0.4	0.4	-	-	-	6개소
	수도공급설비	6,017.6	1,497.8	-	4,519.8	-		6,017.6	1,497.8	-	4,519.8	-	0.2	0.0	-	0.1	-	0.2	0.0	-	0.1	-	가압정1개소 배수지1개소
	전기공급설비	4,567.7	4,567.7	-	-	-		4,567.7	4,567.7	-	-	-	0.1	0.1	-	-	-	0.1	0.1	-	-	-	1개소(변전소)
	가스공급설비	48.2	48.2	-	-	-		48.2	48.2	-	-	-	0.0	0.0	-	-	-	0.0	0.0	-	-	-	3개소
	방송통신시설	7,471.0	7,471.0	-	-	-		7,471.0	7,471.0	-	-	-	0.2	0.2	-	-	-	0.2	0.2	-	-	-	1개소
	주유소	3,945.2	1,095.9	-	2,849.3	-		3,945.2	1,095.9	-	2,849.3	-	0.1	0.0	-	0.1	-	0.1	0.0	-	0.1	-	2개소
	교 육 시 설	유치원	5,105.4	5,105.4	-	-		5,105.4	5,105.4	-	-	-	0.1	0.1	-	-	-	0.1	0.1	-	-	-	3개소
		초등학교	31,894.0	-	15,998.0	-	15,896	31,894.0	-	15,998.0	-	15,896	0.9	-	0.4	-	0.4	0.9	-	0.4	-	0.4	2개소
		중 학 교	15,956.2	15,956.2	-	-	-	15,956.2	15,956.2	-	-	-	0.4	0.4	-	-	-	0.4	0.4	-	-	-	1개소
		고등학교	19,999.9	19,999.9	-	-	-	19,999.9	19,999.9	-	-	-	0.6	0.6	-	-	-	0.6	0.6	-	-	-	1개소
	보육시설	1,324.0	-	-	1,324.0	-		1,324.0	-	-	1,324.0	-	0.0	-	-	0.0	-	0.0	-	-	0.0	-	1개소
	공공청사	52,914.7	27,574.7	-	2,588.0	22,752	증) 1,352	54,266.7	27,574.7	-	2,588.0	24,104	1.5	0.8	-	0.1	0.6	1.5	0.8	-	0.1	0.7	5개소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16,496.2	16,496.2	-	-	-		16,496.2	16,496.2	-	-	-	0.5	0.5	-	-	-	0.5	0.5	-	-	-	2개소
	종교시설	10,060.1	8,517.1	-	-	1,543		10,060.1	8,517.1	-	-	1,543	0.3	0.2	-	-	0.0	0.3	0.2	-	-	0.0	5개소
	유수지	6,521.4	-	-	6,521.4	-		6,521.4	-	-	6,521.4	-	0.2	-	-	0.2	-	0.2	-	-	0.2	-	3개소(수변공원, 근린공원내 수1,수2 포함)
	체육시설	158,210	-	-	-	158,210		158,210	-	-	-	158,210	4.4	-	-	-	4.4	4.4	-	-	-	4.4	1개소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지구내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류별	폭원 (m)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	187	166	1	8	12	42,858	35,688	1,193	1,567	4,410	620,667.0	480,116.4	8,221.4	19,187.2	113,142		
일 반 도 로	계		-	106	91	-	5	10	38,080	32,496	150	1,151	4,283	561,874.4	447,150.2	998.6	16,681.6	97,044	
	대 로	소계	-	7	7	-	-	-	18,523	16,330	-	260	1,933	308,626.1	234,201.9	-	8,683.2	65,741	
		1	33~37	2	2	-	-	-	12,809	12,349	-	-	460	121,989.3	101,902.3	-	-	20,087	
		2	30~34	2	2	-	-	-	1,878	1,618	-	260	-	67,669.8	58,986.6	-	8,683.2	-	
	중 로	3	21~29	3	3	-	-	-	3,836	2,363	-	-	1,473	118,967.0	73,313.0	-	-	45,654	
		소계	-	37	30	-	-	7	9,249	7,031	-	181	2,037	159,738.1	129,455.2	-	2,735.9	27,547	
		1	20~23	3	3	-	-	-	1,144	1,144	-	-	-	26,203.7	26,203.7	-	-	-	
		2	15~19	19	15	-	-	4	5,914	4,578	-	181	1,155	105,672.4	86,109.5	-	2,735.9	16,827	
		3	12~15	15	12	-	-	3	2,191	1,309	-	-	882	27,862.0	17,142.0	-	-	10,720	
	소 로	소계	-	62	54	-	5	3	10,308	9,135	150	710	313	93,510.2	83,493.1	998.6	5,262.5	3,756	
		1	11	17	15	-	-	2	3,325	3,117	-	-	208	37,340.2	34,965.2	-	-	2,375	
		2	8	41	36	-	4	1	5,411	4,745	-	561	105	45,401.3	39,673.4	-	4,346.9	1,381	
		3	1~6	4	3	-	1	-	1,572	1,273	150	149	-	10,768.7	8,854.5	998.6	915.6	-	
보 행 자 전 용 도 로	계		-	81	75	1	3	2	4,778	3,192	1,043	416	127	43,456.6	32,966.2	7,222.8	2,505.6	762	
	대 로	소계	-	4	4	-	-	-	330	330	-	-	-	9,529.9	9,529.9	-	-	-	
		1	33~37	1	1	-	-	-	94	94	-	-	-	3,287.2	3,287.2	-	-	-	
		2	32	1	1	-	-	-	18	18	-	-	-	578.1	578.1	-	-	-	
	중 로	3	21~29	2	2	-	-	-	218	218	-	-	-	5,664.6	5,664.6	-	-	-	
		소계	-	7	7	-	-	-	611	611	-	-	-	9,561.6	9,561.6	-	-	-	
		1	10~20	3	3	-	-	-	404	404	-	-	-	7,825.0	7,825.0	-	-	-	
		2	-	-	-	-	-	-	-	-	-	-	-	-	-	-	-	-	
	소 로	3	10~15	4	4	-	-	-	207	207	-	-	-	1,736.6	1,736.6	-	-	-	
		소계	-	70	64	1	3	2	3,837	2,251	1,043	416	127	24,365.1	13,874.7	7,222.8	2,505.6	762	
		1	-	-	-	-	-	-	-	-	-	-	-	-	-	-	-	-	
		2	6~8	8	7	1	-	-	1,714	671	1,043	-	-	12,269.0	5,046.2	7,222.8	-	-	
		3	6	62	57	-	3	2	2,123	1,580	-	416	127	12,096.1	8,828.5	-	2,505.6	762	
가각 등 기타		-	-	-	-	-	-	-	-	-	-	-	15,336	-	-	-	15,336		

나. 지구외 도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금 투자 계획	1단계	7,216	757	3,089	353	313	199	750	1,263	492				
	2단계	474								474				
	3단계	658									550	108		
	4단계	48											48	

○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및 국고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II.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나. 면적(변경없음)

- 3,596,951.2㎡(1단계:1,809,487.2㎡/2단계:277,841.8㎡/3단계:414,687.2㎡/4단계:1,094,935.0㎡)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박 상 우
원주시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1)	원 창 목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 3. 19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4. 6. 30

2단계 : 2015. 3. 31

3단계 : 2016. 12. 31

4단계 : 2017. 12. 31

5.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사업단에 비치)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협의에 관련된 사항 : 게재생략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 등의 수용에 관련된 협의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강원도,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구역명(변경없음) : 강원원주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변경없음) : 강원원주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사업 전체

○ 면 적(변경없음)

- 3,596,951.2㎡(1단계:1,809,487.2㎡/2단계:277,841.8㎡/3단계:414,687.2㎡/4단계:1,094,935.0㎡)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강원원주 혁신도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계			3,596,951.2	1,809,487.2	277,841.8	414,687.2	1,094,935	100.0	50.3	7.7	11.5	30.5	
도 시 지 역	주거	소 계	2,279,209.3	1,377,051.5	219,285.7	192,874.1	489,998	63.4	38.3	6.1	5.4	13.6	
		제1종전용 주거지역	149,469.6	149,469.6	-	-	-	4.2	4.2	-	-	-	
		제2종전용 주거지역	128,740.2	2,632.2	-	-	126,108	3.6	0.1	-	-	3.5	
		제1종일반 주거지역	285,221.9	241,245.3	12,108.9	20,121.7	11,746	7.9	6.7	0.3	0.6	0.3	
		제2종일반 주거지역	314,746.5	178,799.5	-	7,152.0	128,795	8.8	5.0	-	0.2	3.6	
		제3종일반 주거지역	789,858.3	444,906.8	180,447.4	69,822.1	94,682	22.0	12.4	5.0	1.9	2.6	
		준주거지역	611,172.8	359,998.1	26,729.4	95,778.3	128,667	17.0	10.0	0.7	2.7	3.6	
	상업	일반상업지역	251,956.2	187,040.8	-	61,679.4	3,236	7.0	5.2	-	1.7	0.1	
	녹지	자연녹지지역	1,065,785.7	245,394.9	58,556.1	160,133.7	601,701	29.6	6.8	1.6	4.5	16.7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구분	합 계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기정	187	166	1	8	12	42,858	35,688	1,193	1,567	4,410	620,667.0	480,116.4	8,221.4	19,187.2	113,142
대로	기정	11	11	-	-	-	18,853	16,660	-	260	1,933	318,156.0	243,731.8	-	8,683.2	65,741
중로	기정	44	37	-	-	7	9,860	7,642	-	181	2,037	169,299.7	139,016.8	-	2,735.9	27,547
소로	기정	132	118	1	8	5	14,145	11,386	1,193	1,126	440	117,875.3	97,367.8	8,221.4	7,768.1	4,518
기타	기정	-	-	-	-	-	-	-	-	-	-	15,336	-	-	-	15,336

※ 기타 : 도로가각, 가감속차로 면적

구분	구분	1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기정	26	24	-	-	2	17,776	17,108	-	-	668	196,645.4	174,183.4	-	-	22,462
대로	기정	3	3	-	-	-	12,903	12,443	-	-	460	125,276.5	105,189.5	-	-	20,087
중로	기정	6	6	-	-	-	1,548	1,548	-	-	-	34,028.7	34,028.7	-	-	-
소로	기정	17	15	-	-	2	3,325	3,117	-	-	208	37,340.2	34,965.2	-	-	2,375
기타	기정	-	-	-	-	-	-	-	-	-	-	-	-	-	-	-

구분	구분	2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기정	71	61	1	4	5	14,935	11,630	1,043	1,002	1,260	231,590.6	190,393.8	7,222.8	15,766.0	18,208
대로	기정	3	3	-	-	-	1,896	1,636	-	260	-	68,247.9	59,564.7	-	8,683.2	-
중로	기정	19	15	-	-	4	5,914	4,578	-	181	1,155	105,672.4	86,109.5	-	2,735.9	16,827
소로	기정	49	43	1	4	1	7,125	5,416	1,043	561	105	57,670.3	44,719.6	7,222.8	4,346.9	1,381
기타	기정	-	-	-	-	-	-	-	-	-	-	-	-	-	-	-

구분	구분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기정	90	81	-	4	5	10,147	6,950	150	565	2,482	177,095.0	115,539.2	998.6	3,421.2	57,136
대로	기정	5	5	-	-	-	4,054	2,581	-	-	1,473	124,631.6	78,977.6	-	-	45,654
중로	기정	19	16	-	-	3	2,398	1,516	-	-	882	29,598.6	18,878.6	-	-	10,720
소로	기정	66	60	-	4	2	3,695	2,853	150	565	127	22,864.8	17,683.0	998.6	3,421.2	762
기타	기정	-	-	-	-	-	-	-	-	-	-	-	-	-	-	-

※ 단계별로 구분된 도로의 경우 노선수는 전단계에 포함함(예:1,2단계→1단계)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 1)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3)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 4)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1) 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 3)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 4)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6개소	52,914.7	27,574.7	-	2,588.0	22,752	증) 1,352	54,266.7	27,574.7	-	2,588.0	24,104	-	
기정	801	공공청사	-	반곡동 1809-6대	2,588.0	-	-	2,588.0	-		2,588.0	-	-	2,588.0	-	-	
기정	802	공공청사	-	반곡동 1924-1대	992	-	-	-	992		992	-	-	-	992	-	
기정	804	공공청사	-	반곡동 1858-5대	15,574.7	15,574.7	-	-	-		15,574.7	15,574.7	-	-	-	-	
기정	805	공공청사	-	반곡동 958답 일원	21,760	-	-	-	21,760		21,760	-	-	-	21,760	-	
기정	806	공공청사	-	반곡동 1824-2대	12,000.0	12,000.0	-	-	-		12,000.0	12,000.0	-	-	-	-	
신설	807	공공청사	-	반곡동 1288-1목 일원	-	-	-	-	-	증) 1,352	1,352	-	-	-	1,352	-	

2) 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문화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1) 하 천(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 1) 이전공공기관 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변경)

구분	가 구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기 정					변경 감)	변 경 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143,183.3	-	12개소	144,535.3	-	12,686.5	49,747.8	82,101	1,352	143,183.3	-	12,686.5	49,747.8	80,749	
기정	클1	13,344.2	-1	반곡동 1858-4대	13,344.2	-	-	13,344.2	-		13,344.2	-	-	13,344.2	-	
기정	클2	34,080	-1	반곡동 1296-1전	16,065	-	-	-	16,065		16,065	-	-	-	16,065	
			-2	반곡동 1298전	8,505	-	-	-	8,505		8,505	-	-	-	8,505	
			-3	반곡동 991-7답	9,510	-	-	-	9,510		9,510	-	-	-	9,510	

구분	가 구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기 정					변경	변 경 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클3	3,212.1	-1	반곡동 1860-5대	3,212.1	-	3,212.1	-	-		3,212.1	-	3,212.1	-	-	
기정	클4	9,474.4	-1	반곡동 1916-2대	6,474.7	-	6,474.7	-	-		6,474.7	-	6,474.7	-	-	
			-2	반곡동 1916-6대	2,999.7	-	2,999.7	-	-		2,999.7	-	2,999.7	-	-	
기정	클6	4,843.8	-1	반곡동 1913-12대	4,843.8	-	-	4,843.8	-		4,843.8	-	-	4,843.8	-	
기정	클8	13,060.1	-1	반곡동 1922대	13,060.1	-	-	13,060.1	-		13,060.1	-	-	13,060.1	-	
기정	클9	25,675	-1	반곡동 766-1전	11,089	-	-	-	11,089		11,089	-	-	-	11,089	
			-3	반곡동 530-1전	14,586	-	-	-	14,586		14,586	-	-	-	14,586	
기정	클11	16,395.1	-1	반곡동 1809-11대	16,395.1	-	-	16,395.1	-		16,395.1	-	-	16,395.1	-	
기정	클13	2,104.6	-1	반곡동 1809-8대	2,104.6	-	-	2,104.6	-		2,104.6	-	-	2,104.6	-	
변경	클14	7,437	-1	반곡동 1288-3목	8,789	-	-	-	8,789	감) 1,352	7,437	-	-	-	7,437	
기정	클15	6,813	-1	반곡동 725-3전	6,813	-	-	-	6,813		6,813	-	-	-	6,813	
기정	클16	6,744	-1	반곡동 535전	6,744	-	-	-	6,744		6,744	-	-	-	6,744	

나.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1) 단독주택 용지(변경없음)

■ 필지형 단독주택(변경없음) : 게재생략

■ 블록형 단독주택(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 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유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① 유치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② 초등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③ 중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④ 고등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청사(변경)

구분	가구	확 지												비고	
	가구 번호	확지 번호	위 치	면 적 (㎡)											
				기 정					변경	변 경 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	6개소	52,914.7	27,574.7	-	2,588.0	22,752	증) 1,352	54,266.7	27,574.7	-	2,588.0	24,104	
기정	공1	1	반곡동 1809-6대	2,588.0	-	-	2,588.0	-		2,588.0	-	-	2,588.0	-	
기정	공2	1	반곡동 1924-1대	992	-	-	-	992		992	-	-	-	992	
기정	공4	1	반곡동 1858-5대	15,574.7	15,574.7	-	-	-		15,574.7	15,574.7	-	-	-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구분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기 정					변경	변 경 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정	공5	1	반곡동 958답 일원	21,760	-	-	-	21,760		21,760	-	-	-	21,760	북부지방 산림청
기정	공6	1	반곡동 1824-2대	12,000.0	12,000.0	-	-	-		12,000.0	12,000.0	-	-	-	원주지방 환경청
변경	공7	1	반곡동 1288-1목 일원	-	-	-	-	-	증) 1,352	1,352	-	-	-	1,352	강원지방 우정청

5) 문화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① 수도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② 전기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③ 가스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④ 방송·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건강한 도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사업단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옥포지구 A-3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옥포지구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옥포지구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주)서한 사장 조 종 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내 A-3BL	-
나. 사업 면 적(㎡)	34,855.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m ²)	34,855.00	좌 동	-
라. 연 면 적(m ²)	71,114.21	81,184.67	증 10,070.46
마. 사 업 규 모	공공분양 아파트 11개동(697세대, 10~18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분양 아파트 8개동(688세대, 10~18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 9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26,194,938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20.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대구시 주택과, 달성군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2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B1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제15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B1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B12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조규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B12블록

나. 사업면적 : 18,217.00m²

다. 대지면적 : 18,217.00m²

라. 연 면 적 : 5,305.53m² (용적률 : 29.12 %)

마. 건축면적 : 4,061.77m² (건폐율 : 22.30 %)

바. 사업규모 : 단독주택 54동, 공동주택 2동(60세대, 지상2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90m² 21세대 (84m²A형) - 전용면적 84.94m² 33세대 (84m²B형)

- 전용면적 84.96m² 6세대 (84m²C형)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아. 사 업 비 : 30,110,987천원

4. 사업기간 : '17. 10. ~ '18. 12.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비고 5, 별표 13 제2호 나목 6) 비고 4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비고 5, 별표 13 제2호 나목 6) 비고 4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해당시설의 설치·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
4. “해사세척시설”이란 바닷모래를 담수로 세척하여 건축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제2장 신청절차 및 방법

제3조(신청방법)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별표 제1호서식의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 ② 종합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해사세척시설’에 한정하여 별표 1 내용 중 가의 ‘3. 조사결과’ 항의 ‘(2) 염 성분 이온(Cl^- , SO_4^{2-} , Na^+ , Mg^{2+} , Ca^{2+} , K^+ 등) 농도분석결과’와 ‘나. 원인물질 탐색 결과’ 항목을 제외한다.
- ③ 별표 1의 제3항 ‘가’목부터 ‘라’목 까지 작성은 ‘환경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수질 분야 정도관리검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 검토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염 인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결과 통보서를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염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2.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임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완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
4. 사업자 등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염 인정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염 인정위원회)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소속하에 염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생태독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
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팀장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염 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로도 의결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 부적합으로 의결하며, 사업자 등이 제시한 시험·분석결과가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및 ‘염’으로 판단되어도 방류해역 ‘염’ 농도보다 월등히 높아 해양생물중에 독성이 나타날 경우 ‘부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생태독성기준 초과 원인이 ‘염’이라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는 제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배제)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자료 보관) 과학원장은 증명신청서 및 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 ① 생태독성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증명을 받은 이후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염 증명의 효력을 상실한다.

③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염 증명을 받은 경우 과학원장은 염 증명을 취소하여야 하며, 관할 점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장은 염 증명 받은 사업자를 점검할 수 있으며, 당초 증명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염 증명을 취소하고 관할 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염 증명 유효기간 연장) ① 염 증명을 받은 폐수배출시설은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 까지 해당 기관의 배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 취급물질 및 공정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3년간 염 증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이 염 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염 증명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연장 신청서’(이하 ‘연장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10부 (별표 1 의 제1항 및 제2항 만 작성)
2. 종합평가보고서(연장신청용) 전자 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③ 과학원장은 동 보고서를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되 종합평가보고서 내용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전 고시의 폐지) 중전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제2015-1호, 2015.01.15)은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26조 ③항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64호(2017.4.14.)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안성천 군문·안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고, 하천 개수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개 요 : 제방보축 L=9.54km, 호안공 L=3.71km, 자전거도로 L=19.76km, 구조물공 1식, 교량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7년 4월 4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11월 8일 (5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변경없음)

토지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안성	공도	신두	133	답	3,406	210	김종오	181				
2	안성	공도	신두	132-1	답	2,528	218	김종오	181				
3	안성	공도	신두	132	답	604	61	김기용	181	공도단위 농협		근저당권	
4	안성	공도	신두	114	답	1,301	181	정길수	안성시 승인동 88 동신아파트 102-1107	농협 중앙회		근저당권	
5	안성	공도	신두	113	답	640	84	정길수	안성시 승인동 88 동신아파트 102-1107	농협 중앙회		근저당권	
6	안성	공도	신두	111	답	2,884	352	정길수	안성시 승인동 88 동신아파트 102-1107	농협 중앙회		근저당권	
7	안성	공도	신두	244-4	구	12,237	2,599 2,668 20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8	안성	공도	신두	110	답	4,686	268	정지영	송탄시 이충동 381 현대아파트 107동 803호				
9	안성	공도	신두	90	답	3,371	615	손태순	81				
10	안성	공도	신두	244-10	도	1,082	21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1	안성	공도	신두	90-2	답	2,036	45	김순기	180				
12	안성	공도	신두	90-3	답	1,902	58	김순기	180				
13	안성	공도	신두	89	답	4,900	537	정인옥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180				
14	안성	공도	신두	산96	임	2,489	93	국	국(산림청)				
15	안성	공도	신두	442-9	구	35	1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6	안성	공도	신두	244-7	천	1,046	1,012	국	국(국토교통부)				
17	안성	공도	신두	438-5	천	25,959	5,266	국	국(국토교통부)				
18	안성	공도	신두	244-5	제	8,167	8,167	국	국(국토교통부)				
19	안성	대덕	죽리	694-24	천	64,701	101	국	국(기획재정부)				
20	안성	공도	신두	244-6	천	668	438	국	국(국토교통부)				
21	안성	공도	신두	50-4	답	195	194	국	국(국토교통부)				
22	안성	공도	신두	49-2	천	163	159	국	국(국토교통부)				
23	안성	공도	신두	49-6	제	528	148	국	국(국토교통부)				
24	안성	공도	신두	49-8	제	1,237	443	국	국(국토교통부)				
25	안성	공도	신두	50-6	답	209	7	국	국(국토교통부)				
26	안성	공도	신두	50-2	답	160	136	국	국(국토교통부)				
27	안성	공도	신두	49-11	천	180	7	국	국(국토교통부)				
28	안성	공도	신두	49-13	제	244	9	국	국(국토교통부)				
29	안성	공도	건천	418-7	구	9,151	8	국	국(국토교통부)				
30	안성	공도	건천	428-12	천	39,203	22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1	안성	공도	건천	359-1	구	4,888	2,788 1,14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2	안성	공도	건천	428-13	천	22,873	13,459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3	안성	공도	건천	428-20	천	16	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4	안성	공도	건천	734-1	도	15	2	국	국(국토교통부)				
35	안성	공도	건천	735-1	구	14	2	국	국(국토교통부)				
36	안성	공도	건천	207-4	전	26	9	국	국(경기도)				
37	안성	공도	건천	360-56	답	36	36	한국 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38	안성	공도	건천	734	도	239	195	국	국(국토교통부)				
39	안성	공도	건천	735	구	376	290	국	국(국토교통부)				
40	안성	공도	건천	208-1	전	435	380	국	국(경기도)				
41	안성	공도	건천	207-1	전	242	236	국	국(경기도)				
42	안성	공도	건천	731	천	200,484	9307	국	국(국토교통부)				
43	안성	미양	신계	366	천	81,475	502	국	국(국토교통부)				
44	안성	공도	건천	428-12	천	39,203	23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5	안성	공도	건천	428-13	천	22,873	9,26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6	안성	공도	건천	209-5	전	102	100	송영기	서울 동작구 상도동 450 상도동래미안1차A 107-805				
47	안성	공도	건천	734	도	239	47	국	국(국토교통부)				
48	안성	공도	건천	208	전	775	771	정일영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길 9-6	안성 과수농협		근저당권	
49	안성	공도	건천	735	구	376	78	국	국(국토교통부)				
50	안성	공도	건천	208-1	전	435	58	국	국(경기도)				
51	안성	공도	건천	784	구	5,772	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성 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2	안성	공도	건천	750-10	답	289.4	93	국	국(안성시)				
53	안성	공도	건천	750-1	답	791.1	8.8	박종택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36, 104동 603호(태산1차아파트)				
54	안성	공도	건천	750-11	답	10	10	국	국(안성시)				
55	안성	공도	건천	750-2	답	747.6	27.4	박종택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45				
56	안성	공도	건천	750-3	답	3,177	127	맹희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소신두길 21	농어촌 진흥공사		근저당권	
57	안성	공도	건천	785	제	265	24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58	안성	공도	건천	750-4	답	4,221.5	187.6	박종섭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원승두길 185-3	공도농협 안성농협		근저당권 근저당권	
59	안성	공도	건천	750-5	답	1,386.8	60.1	설세광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05-18 대두3차빌라 디-401				
60	안성	공도	건천	750-6	답	3,409.4	148	설세광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05-18 대두3차빌라 디-401				
61	안성	공도	건천	750-7	답	2,421.2	105.3	설세광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05-18 대두3차빌라 디-401				
62	안성	공도	건천	750-8	답	1,005.2	55.8	설세광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05-18 대두3차빌라 디-401				
63	안성	공도	건천	750-9	답	915.5	77.8	설세광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05-18 대두3차빌라 디-401				
64	안성	공도	건천	221-4	답	5,184	334	설세광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05-18 대두3차빌라 디-401				
65	안성	공도	건천	221-5	답	6,942	1,481	설명광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05-18 대두3차빌라 디-401				
66	안성	공도	건천	479-2	전	1,597	619	이주영	서울 성북구 종암동 130 아이파크 종암동 103-1002				
67	안성	공도	건천	209-3	답	476	462	송영기	서울 동작구 상도동 450 상도동래미안1차A 107-805				
68	안성	공도	건천	408-18	도	188	179	국	국(국토교통부)				
69	안성	공도	건천	408-29	천	2,334	1,561	국	국(국토교통부)				
70	안성	공도	건천	486	전	734	734	정일영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길 9-6	안성 과수농협		근저당권	
71	안성	공도	건천	485	전	2,744	418 1,058	김식천	공도면 건천리 535				
72	안성	공도	건천	731	천	200,484	11,700	국	국(국토교통부)				
73	천안 서북	성환	양령	537-80	천	9,424	72	국	국(국토교통부)				
74	안성	미양	신계	366	천	81,475	2,854	국	국(국토교통부)				
75	안성	미양	신계	326	천	16,476	254	국	국(국토교통부)				
76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3-3	답	118	78	국	국(국토교통부)				
77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3-4	구	945	529	국	국(국토교통부)				
78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3-5	구	283	5	국	국(국토교통부)				
79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5	답	4,415	341.3	국	국(기획재정부)				
80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0-17	제	160	2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81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0-16	구	116	10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82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0-31	제	131	13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83	천안 서북	성환	신가	439-1	천	30,402	91	국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성 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4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9	도	649.8	153.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85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8	구	941.1	73.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86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4-6	답	5,816.6	236.2	국	국(기획재정부)				
87	천안 서북	성환	와룡	392-10	천	1,798	35	국	국(국토교통부)				
88	천안 서북	성환	와룡	11-7	임	1,312	11	국	국(기획재정부)				
89	천안 서북	성환	와룡	11-5	천	463	11	국	국(국토교통부)				
90	천안 서북	성환	와룡	10-10	천	2,493	8	국	국(국토교통부)				
91	천안 서북	성환	신가	454-5	도	1,464	83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92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7	구	1,142	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93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3-9	답	5,676.8	295.6	우관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와룡리 43-8	성환농협		압류 근저당권	
94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50	구	11,748.5	6,701.6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95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6	구	693.9	58.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96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5	도	1,403.7	147.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97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2-10	답	4,336.8	411.2	우관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와룡리 43-8	성환농협		압류 근저당권	
98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7-23	구	337	1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99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4	구	1,305.8	9.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00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7-24	제	93	31	국	국(국토교통부)				
101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1-13	답	3,885.6	419.9	이동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와룡리 17-4				
102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7-25	천	1,302	59	국	국(기획재정부)				
103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7-26	구	750	4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04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1-12	답	2,283	1.4	국	국(기획재정부)				
105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2	구	674.1	55.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06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1	도	1,645.8	170.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07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0-7	답	4,086	243	이동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와룡리 17-4				
108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6-2	구	3,312	3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09	천안 서북	성환	신가	467-1	도	396	29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10	천안 서북	성환	신가	467-2	도	215	5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11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39	구	1,413	21.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12	천안 서북	성환	신가	499-9	답	3,039	7.4	정상민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79길 18, 266동 402호 (고덕동)	농협 은행(주)		근저당권	
113	평택	평성	평궁	359-10	도	293	43	국	국(국토교통부)				
114	평택	평성	평궁	382	도	79	40	국	국(국토교통부)				
115	평택	평성	평궁	330-1	도	80	6	국	국(국토교통부)				
116	평택	평성	평궁	329-4	천	40	33	국	국(국토교통부)				
117	평택	평성	평궁	329-1	천	29	17	국	국(국토교통부)				
118	평택	평성	평궁	329-2	천	16	10	국	국(국토교통부)				
119	평택	평성	평궁	383-2	천	17	1	국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성 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20	평택	평성	평궁	329-6	천	1,632	714	국	국(국토교통부)					
121	평택	평성	평궁	329-5	천	78	78	국	국(국토교통부)					
122	평택	평성	평궁	383	천	11,537	34	국	국(국토교통부)					
123	평택	평성	평궁	383-3	천	1,937	796	국	국(국토교통부)					
124	평택		군문	347-1	천	1,441	641	국	국(국토교통부)					
125	평택		군문	297-7	천	202	144	국	국(국토교통부)					
126	평택		군문	301-3	천	357	231	국	국(국토교통부)					
127	평택		군문	301-4	답	311	81	국	국(기획재정부)					
128	평택		군문	300-2	천	63	2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29	평택		군문	300-3	천	182	99	국	국(기획재정부)					
130	평택		군문	299-3	천	414	187	국	국(국토교통부)					
131	평택		군문	304-3	천	56	1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32	평택		군문	304-2	천	225	97	국	국(국토교통부)					
133	평택		군문	304-1	천	602	316	국	국(국토교통부)					
134	평택		군문	305-1	천	658	248	국	국(국토교통부)					
135	평택		군문	305-3	천	400	210	국	국(국토교통부)					
136	평택		군문	305-4	천	79	43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37	평택		군문	348-1	구	52	3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38	평택		군문	198-24	천	395	229	국	국(국토교통부)					
139	평택		군문	198-27	천	72	24	국	국(국토교통부)					
140	평택		군문	198-29	천	575	308	국	국(기획재정부)					
141	평택		군문	341-1	도	70	33	국	국(국토교통부)					
142	평택		군문	375	천	473	256	국	국(국토교통부)					
143	평택		군문	341-2	도	105	52	국	국(국토교통부)					
144	평택		군문	197-3	천	129	32	국	국(국토교통부)					
145	평택		군문	328	천	76,916	601	국	국(국토교통부)					
146	평택	평성	평궁	369-2	천	561	325	국	국(국토교통부)					
147	평택	평성	평궁	364-1	도	1,352	2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48	평택	평성	평궁	171-10	천	423	231	국	국(국토교통부)					
149	평택	평성	평궁	171-7	천	36	29	국	국(국토교통부)					
150	평택	평성	평궁	171-11	천	636	258	국	국(국토교통부)					
151	평택	평성	평궁	170-4	천	1,091	472	국	국(국토교통부)					
152	평택	평성	평궁	169-5	천	321	44	국	국(국토교통부)					
153	평택	평성	평궁	168-5	천	1,014	464	국	국(국토교통부)					
154	평택	평성	평궁	172-17	천	1,693	774	국	국(국토교통부)					
155	평택	평성	평궁	168-6	천	969	409	국	국(국토교통부)					
156	평택	평성	평궁	167-35	천	34	7	국	국(국토교통부)					
157	평택	평성	평궁	167-37	천	673	242	국	국(국토교통부)					
158	평택	평성	평궁	167-39	천	338	121	국	국(국토교통부)					
159	평택	평성	평궁	178-5	천	284	100	국	국(국토교통부)					
160	평택	평성	평궁	167-19	천	185	80	국	국(국토교통부)					
161	평택	평성	평궁	167-40	천	2,000	643	국	국(국토교통부)					
162	평택	평성	평궁	167-36	천	999	342	국	국(국토교통부)					
163	평택	평성	평궁	166-8	천	651	291	국	국(국토교통부)					
164	평택	평성	평궁	166-6	천	642	25	국	국(국토교통부)					
165	평택	고덕	동고	80-1	천	107,551	428	국	국(국토교통부)					
166	평택	고덕	동고	231-2	답	3,800	130	국	국(국토교통부)					
167	평택	고덕	동고	231-1	답	3,518	14	국	국(국토교통부)					
168	평택	고덕	동고	79-173	답	112	113	국	국(기획재정부)					
169	평택	고덕	동고	79-21	답	442	84	국	국(기획재정부)					
170	평택	고덕	동고	79-172	답	227	220	국	국(기획재정부)					
171	평택	고덕	동고	79-20	답	1,430	304	국	국(기획재정부)					
172	평택	고덕	동고	79-171	답	96	95	국	국(기획재정부)					
173	평택	고덕	동고	79-19	답	864	168	국	국(기획재정부)					
174	평택	고덕	동고	79-170	제	587	584	국	국(국토교통부)					
175	평택	고덕	동고	79-18	답	3,502	314	고기봉	평택읍 신대리 337					
176	평택	고덕	동고	79-169	제	615	622	국	국(국토교통부)					
177	평택	고덕	동고	79-17	답	3,036	404	이영환 외14인	경기도 평택시 소사2길 9, 105동 1402호 (평택소사SK뷰아파트)					
178	평택	고덕	동고	79-160	천	25,792	14,169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79	평택	고덕	동고	79-168	제	165	160	국	국(국토교통부)					
180	평택	고덕	동고	79-16	답	652	75	이영환 외14인	경기도 평택시 소사2길 9, 105동 1402호 (SK뷰아파트)					
181	평택	고덕	동고	79-167	제	450	457	국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82	평택	고덕	동고	79-15	답	1,932	219	이영환 외14인	경기도 평택시 소사2길 9, 105동 1402호 (평택소사SK뷰아파트)				
183	평택	고덕	동고	79-136	구	1,102	1,09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84	평택	고덕	동고	79-166	제	511	510	국	국(국토교통부)				
185	평택	고덕	동고	79-14	답	2,170	145	이영환 외14인	경기도 평택시 소사2길 9, 105동 1402호 (평택소사SK뷰아파트)				
186	평택	고덕	동고	79-165	제	193	193	국	국(국토교통부)				
187	평택	고덕	동고	79-180	답	7	7	이영환 외14인	경기도 평택시 소사2길 9, 105동 1402호 (평택소사SK뷰아파트)				
188	평택	고덕	동고	79-13	답	1,639	198	이영환 외14인	경기도 평택시 소사2길 9, 105동 1402호 (평택소사SK뷰아파트)				
189	평택	고덕	동고	79-12	답	3,842	633	이규식	경기도 평택시 어인남로26번길 34, 203호 (비전동, 은하연립)	평택농협		근저당권, 지상권	
190	평택	고덕	동고	79-179	답	124	119	국	국(국토교통부)				
191	평택	고덕	동고	79-164	제	760	771	국	국(국토교통부)				
192	평택	고덕	동고	79-163	제	708	705	국	국(국토교통부)				
193	평택	고덕	동고	81-63	천	4,027	4,012	김재숙	김천시 남산2동 191				
194	평택	고덕	동고	79-78	천	1,255	988	국	국(국토교통부)				
195	평택	고덕	동고	79-77	제	1,643	1,501	국	국(국토교통부)				
196	평택	고덕	동고	79-175	답	168	167	국	국(기획재정부)				
197	평택	고덕	동고	79-24	답	2,302	305	국	국(기획재정부)				
198	평택	고덕	동고	79-178	구	52	5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99	평택	고덕	동고	79-141	구	1,253	1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00	평택	고덕	동고	79-22	답	998	326	국	국(국토교통부)				
201	평택	고덕	동고	79-174	제	1,282	1,275	국	국(국토교통부)				
202	평택	고덕	동고	79-11	답	948	239	유병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종생로59번길 9-1, 2동 102호 (조양빌라)	농협 은행(주)		근저당권	
203	평택	고덕	동고	79-177	천	300	296	국	국(국토교통부)				
204	평택	고덕	동고	79-159	천	753	346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05	평택	고덕	동고	79-135	구	67	6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06	평택	고덕	동고	79-176	답	52	56	국	국(기획재정부)				
207	평택	고덕	동고	79-184	답	123	122	국	국(기획재정부)				
208	평택	고덕	동고	79-162	답	102	102	국	국(기획재정부)				
209	평택	고덕	동고	79-7	천	1,485	56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10	평택	고덕	동고	79-161	제	235	234	이영환 외14인	경기도 평택시 소사2길 9, 105동 1402호 (평택소사SK뷰아파트)				
211	평택	고덕	동고	79-8	구	101	9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12	평택		신대	90-12	답	131	142	국	국(기획재정부)				
213	평택		신대	90-17	구	456	45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14	평택		신대	90-13	답	555	562	국	국(기획재정부)				
215	평택		신대	90-3	답	775	237	국	국(기획재정부)				
216	평택		신대	90-14	답	217	225	국	국(기획재정부)				
217	평택		신대	90-4	답	527	108	국	국(기획재정부)				
218	평택		신대	90-15	답	844	848	국	국(국토교통부)				
219	평택		신대	90-5	답	1,964	472	유승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0, 1113호 (정자동, 정자 아이파크)	농협 은행(주)		근저당권	
220	평택		신대	90-7	구	1,013	2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21	평택		신대	90-16	답	1,253	1,252	국	국(국토교통부)				
222	평택		신대	90-6	답	1,797	603	최은환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1-8	㈜우리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223	평택		신대	67-2	천	38,510	8,769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24	평택		신대	92-1	구	119	12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25	평택		신대	93-6	답	652	639	국	국(국토교통부)				
226	평택		신대	93-1	답	1,167	511	최은환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1-8	㈜우리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227	평택		신대	93-5	구	519	51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28	평택		신대	93-7	답	344	338	국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29	평택		신대	93-2	답	703	253	한동진	380				
230	평택		신대	93-8	답	416	411	국	국(국토교통부)				
231	평택		신대	93-3	답	836	302	김창제	안산시 사동 1335-1				
232	평택		신대	93-9	답	523	516	국	국(국토교통부)				
233	평택		신대	93-4	답	909	425	배정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3-29				
234	평택		신대	95-3	도	105	10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35	평택		신대	95-5	구	368	20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36	평택		신대	96-6	답	593	591	국	국(국토교통부)				
237	평택		신대	96-7	답	341	83	국	국(국토교통부)				
238	평택		신대	96-2	답	903	99	김양민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85-15	팽성 농협		근저당권	
239	평택	고덕	동고	79-138	철	791	240	국	국(국토교통부)				
240	평택	고덕	동고	79-137	답	11	6	국	국(기획재정부)				
241	평택	고덕	동고	79-183	답	10	10	국	국(기획재정부)				
242	평택	고덕	동고	79-185	답	33	33	국	국(기획재정부)				
243	평택	고덕	동고	79-10	답	534	15	국	국(기획재정부)				
244	평택	고덕	동고	79-182	답	169	163	국	국(기획재정부)				
245	평택	고덕	동고	79-181	답	153	88	국	국(기획재정부)				
246	평택		신대	90-28	답	4	4	국	국(기획재정부)				
247	평택		신대	90-24	답	358	43	국	국(기획재정부)				
248	평택		신대	90-2	답	31	30	국	국(기획재정부)				
249	평택		신대	92	구	1,993	65 3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50	평택		신대	101-1	답	4,002	105	배정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3-29				
251	평택		신대	95-1	도	521	21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52	평택		신대	99-4	답	1,327	172	박종례	평택시 신장동 263-20				
253	평택		신대	95-2	구	1,151	238 213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54	평택		신대	96-1	답	1,197	522	김양민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85-15	팽성 농협		근저당권	
255	평택		신대	686-8	답	106	69	국	국(기획재정부)				
256	평택		신대	686-3	답	5	5	국	국(기획재정부)				
257	평택		신대	686-9	답	729	729	국	국(국토교통부)				
258	평택		신대	686-4	답	1,419	645	국	국(경기도)				
259	평택		신대	686-10	구	62	6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60	평택		신대	686-5	구	152	15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61	평택		신대	686-11	도	165	16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62	평택		신대	686-6	도	262	26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63	평택		신대	687-1	전	951.1	349.8	전기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북읍촌길 74-7				
264	평택		신대	687-8	답	916	916	국	국(국토교통부)				
265	평택		신대	687-5	구	1,310	1,31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66	평택		신대	687-4	답	2	2	임상근	고덕면 동고리 295				
267	평택		신대	67-2	전	38,510	8,989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68	평택		신대	688	구	1,000	1,00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69	평택		신대	688-3	답	7	7	국	국(경기도)				
270	평택	고덕	동고	466-8	구	301	30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71	평택	고덕	동고	79-7	전	1,485	936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72	평택	고덕	동고	79-159	전	753	45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73	평택	고덕	동고	509-1	구	62	6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74	평택	고덕	동고	472-8	답	192	48	국	국(기획재정부)				
275	평택	고덕	동고	472-3	답	1,732	88	국	국(기획재정부)				
276	평택	고덕	동고	472-4	답	1,139	11	국	국(경기도)				
277	평택	고덕	동고	472-5	구	56	16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78	평택	고덕	동고	471	도	973.8	34.6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79	평택	고덕	동고	465-10	구	916.6	9.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80	평택	고덕	동고	465-11	도	2,253.1	29.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81	평택		신대	687	도	20	1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82	평택		신대	687-6	답	401	399	국	국(국토교통부)				
283	평택		신대	687-7	답	886	886	국	국(국토교통부)				
284	평택		신대	687-2	답	1,313.6	163.2	국	국(경기도)				
285	평택		신대	687-3	답	126.9	64.7	김영범	세교동 558 꿈그린우성아파트 102-907				
286	평택	고덕	동고	466-10	답	267	267	국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87	평택	고덕	동고	466-2	답	4,560.1	84.5	김성태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75-6				
288	평택	고덕	동고	466-11	답	154	154	국	국(국토교통부)				
289	평택	고덕	동고	466-3	답	764.9	23.7	임재원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97-1				
290	평택	고덕	동고	466-9	구	340	34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91	평택	고덕	동고	466-12	답	835	835	국	국(국토교통부)				
292	평택	고덕	동고	466-4	답	4,958	187.7	임재원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97-1				
293	평택	고덕	동고	466-13	답	170	170	국	국(국토교통부)				
294	평택	고덕	동고	466-5	답	5,532.2	119	이옥화	평택시 서정동 298-6 청구빌라 301호	평택 농협		근저당권 설정	
295	평택		신대	688-4	답	704	704	국	국(국토교통부)				
296	평택		신대	688-1	답	221.2	165.3	박대원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3길 33-12	안중 농협		근저당권	
297	평택		신대	688-5	답	952	952	국	국(국토교통부)				
298	평택		신대	688-2	답	367.4	253	박대원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3길 33-12	안중 농협		근저당권	
299	평택	고덕	동고	466-6	답	7,101.7	119.8	차동배	세교동 557 부영원앙아파트 304동 1305호				
300	평택	고덕	동고	466-14	답	149	149	국	국(국토교통부)				
301	평택	고덕	동고	466-7	답	4,880.3	159.5	차봉열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882				
302	평택	고덕	동고	466-15	제	833	807	국	국(국토교통부)				
303	평택	고덕	동고	455-1	도	153.9	110.9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04	평택	고덕	동고	456-1	구	241.5	163.3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05	평택	고덕	동고	79-133	철	508	478	국	국(국토교통부)				
306	평택	고덕	동고	82-45	철	354	21	국	국(국토교통부)				
307	평택	고덕	동고	476	도	8,196	2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08	평택	고덕	동고	500	구	1,174	6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09	평택	고덕	동고	476-1	도	236.2	134.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10	평택	고덕	동고	500-1	구	126	12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11	평택	고덕	동고	508-10	제	686	591	국	국(국토교통부)				
312	평택	고덕	동고	79-160	천	25,792	11,47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13	평택	고덕	동고	231-1	답	3,518	3,513	국	국(국토교통부)				
314	평택	고덕	동고	231-3	제	1,467	1,419	국	국(국토교통부)				
315	평택	고덕	동고	231-2	답	3,800	3,595	국	국(국토교통부)				
316	평택	고덕	동고	231-4	제	167	167	국	국(국토교통부)				
317	평택	고덕	동고	80-1	천	107,551	1,895	국	국(국토교통부)				
318	평택	고덕	동고	241-7	제	5	5	국	국(국토교통부)				
319	평택	고덕	동고	54-7	구	54	5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20	평택	고덕	동고	242-6	답	638	91	국	국(국토교통부)				
321	평택	고덕	동고	508-11	제	478	464	국	국(국토교통부)				
322	평택	고덕	동고	508-1	답	3,367.6	86.5	이은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84 주공아파트 123동 102호				
323	평택	고덕	동고	508-2	답	7,800.4	295.8	오석분 외1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승학동길 25, 201동 1102호 (명지2차아파트)				
324	평택	고덕	동고	508-21	답	637.8	246.1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25	평택	고덕	동고	508-12	제	1,488	1,488	국	국(국토교통부)				
326	평택	고덕	동고	508-22	답	69.8	45.1	이장규	포승면 만호리 산36-2				
327	평택	고덕	동고	508-24	답	646.4	99.9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28	평택	고덕	동고	508-13	제	779	779	국	국(국토교통부)				
329	평택	고덕	동고	508-26	답	703.1	19.2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30	평택	고덕	동고	508-14	제	426	423	국	국(국토교통부)				
331	평택	고덕	동고	508-28	답	1,145	5	현종득	방축리 8				
332	평택	고덕	동고	508-15	제	467	451	국	국(국토교통부)				
333	평택	고덕	동고	508-16	제	284	267	국	국(국토교통부)				
334	평택	고덕	동고	508-17	제	318	285	국	국(국토교통부)				
335	평택	고덕	동고	509	구	581	57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36	평택	고덕	동고	508-9	도	2,106.2	1,998.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37	평택	고덕	동고	508-18	제	1,534.4	825.4	국	국(국토교통부)				
338	평택	고덕	동고	230-6	제	163	147	국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성 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39	평택	고덕	동고	79-130	제	2,345	2,29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40	평택	고덕	동고	232-5	제	697	758	국	국(국토교통부)					
341	평택	고덕	동고	232-6	제	227	233	국	국(국토교통부)					
342	평택	고덕	동고	232-7	제	366	375	국	국(국토교통부)					
343	평택	고덕	동고	232-8	제	176	176	국	국(국토교통부)					
344	평택	고덕	동고	233-3	제	164	164	국	국(국토교통부)					
345	평택	고덕	동고	507	구	2,267.2	97.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46	평택	고덕	동고	233-4	제	422	401	국	국(국토교통부)					
347	평택	고덕	동고	54-6	제	698	29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48	평택	고덕	동고	240-3	제	353	261	국	국(국토교통부)					
349	평택	고덕	동고	240-4	제	242	144	국	국(국토교통부)					
350	평택	고덕	동고	241-4	제	375	248	국	국(국토교통부)					
351	평택	고덕	동고	241-5	제	286	162	국	국(국토교통부)					
352	평택	고덕	동고	241-6	제	345	153	국	국(국토교통부)					
353	평택	고덕	동고	54-8	제	759	1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54	평택	고덕	동고	242-5	제	1,171	-	국	국(국토교통부)					
355	평택	고덕	궁	447-2	도	473	3	국	국(국토교통부)					
356	평택	고덕	궁	447-10	도	152	55	이정남	해창리 737					
357	평택	고덕	궁	352-1	도	258	75	이상우	398					
358	평택	고덕	궁	352-3	도	120	1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59	평택	고덕	궁	352-15	도	22	1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60	평택	고덕	궁	352-2	유	1,022	213	국	국(국토교통부)					
361	평택	고덕	궁	352-9	도	403	22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62	평택	고덕	궁	398-57	제	238	99	국	국(국토교통부)					
363	평택	고덕	궁	398-56	제	413	287	국	국(국토교통부)					
364	평택	고덕	궁	398-14	천	302	0	국	국(국토교통부)					
365	평택	고덕	궁	399-2	제	215	45	국	국(국토교통부)					
366	평택	고덕	궁	351-7	제	1,048	174	국	국(국토교통부)					
367	평택	고덕	궁	168-2	구	2,561	3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68	평택	고덕	궁	347-4	제	636	233	국	국(국토교통부)					
369	평택	고덕	궁	445-4	천	106	30	국	국(국토교통부)					
370	평택	고덕	궁	490	도	774	70	국	국(국토교통부)					
371	평택	고덕	궁	440-5	천	643	287	국	국(국토교통부)					
372	평택	고덕	궁	439-1	천	53	1	국	국(국토교통부)					
373	평택	고덕	궁	439-4	천	301	159	국	국(국토교통부)					
374	평택	고덕	궁	438-2	천	150	60	국	국(국토교통부)					
375	평택	고덕	궁	437-3	제	607	255	국	국(국토교통부)					
376	평택	고덕	궁	436-1	천	317	124	국	국(국토교통부)					
377	평택	고덕	궁	434-2	천	666	217	국	국(국토교통부)					
378	평택	고덕	궁	433	천	112	28	국	국(국토교통부)					
379	평택	고덕	궁	430	제	139	24	국	국(국토교통부)					
380	평택	고덕	궁	342-6	제	317	109	국	국(국토교통부)					
381	평택	고덕	궁	342-7	제	1,003	300	국	국(국토교통부)					
382	평택	고덕	궁	342-8	제	2,551	680	국	국(국토교통부)					
383	평택	고덕	궁	344-7	천	543	157	국	국(국토교통부)					
384	평택	고덕	궁	344-8	제	312	92	국	국(국토교통부)					
385	평택	고덕	궁	344-9	천	224	74	국	국(국토교통부)					
386	평택	고덕	궁	344-10	제	505	174	국	국(국토교통부)					
387	평택	고덕	궁	426-40	천	4,271	745	국	국(국토교통부)					
388	평택	고덕	궁	476-7	제	2,599	738	국	국(국토교통부)					
389	평택	고덕	궁	492	천	164,785	5,546	국	국(국토교통부)					
390	평택	고덕	궁	492-4	천	501	142	국	국(국토교통부)					
391	평택	고덕	궁	476-3	제	27,232	5,871	국	국(국토교통부)					
392	평택	고덕	방축	711-35	제	86	1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93	평택	고덕	방축	711-34	제	247	6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94	평택	고덕	방축	711-23	제	233	29	국	국(국토교통부)					
395	평택	고덕	방축	711-22	제	502	220	국	국(국토교통부)					
396	평택	고덕	방축	711-20	제	877	410	국	국(국토교통부)					
397	평택	고덕	방축	771	구	2,482	246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98	평택	고덕	방축	711-18	제	665	327	국	국(국토교통부)					
399	평택	고덕	방축	711-16	제	1,337	597	국	국(국토교통부)					
400	평택	고덕	방축	711-36	제	171	6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01	평택	오성	신	3-270	제	1,510	462	국	국(국토교통부)					
402	평택	오성	신	3-269	제	400	205	국	국(국토교통부)					
403	평택	오성	신	3-222	제	313	113	국	국(국토교통부)					
404	평택	오성	신	3-226	제	438	94	국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05	평택	오성	신	3-225	제	289	133	국	국(국토교통부)				
406	평택	오성	신	160	도	2,344	54	국	국(국토교통부)				
407	평택	오성	신	3-244	제	251	39	국	국(국토교통부)				
408	평택	오성	신	3-242	제	1,019	311	국	국(국토교통부)				
409	평택	오성	신	3-266	제	789	226	국	국(국토교통부)				
410	평택	오성	신	3-240	제	174	54	국	국(국토교통부)				
411	평택	고덕	동고	443	천	154,954	4,342	국	국(국토교통부)				
412	평택	고덕	방축	786	구	2,485	11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13	평택	고덕	동고	405-126	제	2,980	1,046	국	국(국토교통부)				
414	평택	고덕	동고	405-145	제	169	3	국	국(국토교통부)				
415	평택	고덕	동고	405-130	제	2,900	880	국	국(국토교통부)				
416	평택	고덕	동고	404-34	제	324	143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17	평택	고덕	동고	404-36	제	319	27	국	국(국토교통부)				
418	평택	고덕	동고	404-33	제	142	81	국	국(국토교통부)				
419	평택	고덕	동고	404-32	제	639	242	국	국(국토교통부)				
420	평택	고덕	동고	404-30	제	685	231	국	국(국토교통부)				
421	평택	고덕	동고	405-146	제	156	7	국	국(국토교통부)				
422	평택	고덕	동고	404-29	제	101	1	국	국(국토교통부)				
423	평택	고덕	동고	405-128	제	5,164	1,466	국	국(국토교통부)				
424	평택	고덕	동고	403-18	제	256	42	국	국(국토교통부)				
425	평택	고덕	동고	403-19	제	577	235	국	국(국토교통부)				
426	평택	고덕	동고	403-20	제	929	327	국	국(국토교통부)				
427	평택	고덕	동고	483	구	4,108	11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28	평택	고덕	동고	54-14	제	275	193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29	평택	고덕	동고	395-6	제	226	20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30	평택	고덕	동고	395-8	제	151	141	국	국(국토교통부)				
431	평택	고덕	동고	394-19	제	1,739	550	국	국(국토교통부)				
432	평택	고덕	동고	405-143	제	297	139	이종남	302				
433	평택	고덕	동고	405-148	천	510	159	국	국(국토교통부)				
434	평택	고덕	동고	405-132	제	2,226	697	국	국(국토교통부)				
435	평택	고덕	동고	405-134	제	444	54	국	국(국토교통부)				
436	평택	고덕	동고	405-141	제	191	63	국	국(국토교통부)				
437	평택	고덕	동고	393-6	제	686	266	국	국(국토교통부)				
438	평택	고덕	동고	54-12	제	88	2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39	평택	고덕	동고	354-12	제	95	3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40	평택	고덕	동고	354-11	제	213	58	국	국(국토교통부)				
441	평택	고덕	동고	354-10	제	235	113	국	국(국토교통부)				
442	평택	고덕	동고	354-8	제	563	195	국	국(국토교통부)				
443	평택	고덕	동고	354-6	제	1,000	315	국	국(국토교통부)				
444	평택	고덕	동고	398-25	제	1,865	551	국	국(국토교통부)				
445	평택	고덕	동고	407-84	제	5,369	1,718	국	국(국토교통부)				
446	평택	고덕	동고	407-87	제	2,032	584	국	국(국토교통부)				
447	평택	고덕	동고	407-85	천	6,723	5	국	국(국토교통부)				
448	평택	고덕	동고	407-88	천	2,641	20	국	국(국토교통부)				
449	평택	고덕	동고	499-2	구	1,919	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50	안성	공도	신두	244-7	천	1,046	6	국	국(국토교통부)				
451	안성	공도	신두	442-9	구	35	1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52	안성	공도	신두	산96	임	2,489	494	국	국(산림청)				
453	안성	공도	신두	산95	임	19,890	326	신상철	신두리 181				
454	안성	공도	신두	438-5	천	25,959	1,047	국	국(국토교통부)				
455	안성	공도	웅교	601	천	71,700	795	국	국(국토교통부)				
456	안성	공도	웅교	63-9	답	1,175	335	국	국(국토교통부)				
457	안성	공도	웅교	63-10	답	649	249	국	국(국토교통부)				
458	안성	공도	웅교	64-3	전	486	294	국	국(국토교통부)				
459	안성	공도	웅교	65-10	전	938	529	국	국(국토교통부)				
460	안성	공도	웅교	65-2	전	2,641	1,322	국	국(국토교통부)				
461	안성	공도	웅교	47-10	전	226	24	국	국(국토교통부)				
462	안성	공도	웅교	65-8	천	281	1	국	국(국토교통부)				
463	안성	공도	웅교	65-9	천	83	58	국	국(국토교통부)				
464	안성	공도	웅교	46-10	천	1,554	1	국	국(국토교통부)				
465	안성	공도	웅교	65-5	전	1,603	1,068	국	국(국토교통부)				
466	안성	공도	웅교	65-11	답	338	33	국	국(국토교통부)				
467	안성	공도	웅교	602	도	1,882	140	국	국(국토교통부)				
468	안성	공도	웅교	46-1	답	3,380	91	국	국(국토교통부)				
469	안성	공도	웅교	46-4	전	615	305	국	국(국토교통부)				
470	안성	공도	웅교	46-13	전	285	67	국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71	안성	공도	웅교	46-14	답	418	173	국	국(국토교통부)				
472	안성	공도	웅교	45-1	임	2,267	451	국	국(국토교통부)				
473	안성	공도	웅교	44-3	전	1,716	189	국	국(국토교통부)				
474	안성	공도	웅교	43-6	답	169	21	국	국(국토교통부)				
475	안성	공도	웅교	43-4	잡	2,973	393	국	국(국토교통부)				
476	안성	공도	웅교	41-6	전	1,796	538	국	국(국토교통부)				
477	안성	공도	웅교	68-5	전	1,006	346	국	국(국토교통부)				
478	안성	공도	웅교	71-18	잡	128	52	국	국(국토교통부)				
479	안성	공도	웅교	71-13	잡	26	24	국	국(국토교통부)				
480	안성	공도	웅교	71-19	잡	17,044	1,200	국	국(국토교통부)				
481	안성	공도	웅교	71-20	잡	2,476	1,061	국	국(국토교통부)				
482	안성	공도	웅교	72-3	답	454	290	국	국(국토교통부)				
483	안성	공도	웅교	72-4	답	883	320	국	국(국토교통부)				
484	안성	공도	웅교	604	도	241	30	국	국(국토교통부)				
485	안성	공도	웅교	71-17	답	2,364	1,106	국	국(국토교통부)				
486	안성	공도	웅교	73-3	답	2,148	631	국	국(국토교통부)				
487	안성	공도	웅교	603	구	6,347	420	국	국(국토교통부)				
488	안성	공도	웅교	산43-1	천	433	433	박영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01-6				
489	안성	공도	웅교	산43	임	8,195	939	김미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36-9 현대빌라 2-에치				
490	안성	공도	웅교	77	답	2,122	1,132	농협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홍병렬	천안읍 영성동 47	근저당권	
491	안성	공도	웅교	산46	임	12,099	711	마세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129-44 유원빌라 4-202				
492	안성	공도	웅교	76-5	목	72,695	67	농협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493	안성	공도	웅교	606	천	69,497	2,212	국	국(국토교통부)				
494	안성	공도	웅교	400-1	천	2,020	343	국	국(국토교통부)				
495	안성	공도	웅교	404-1	천	1,124	292	국	국(국토교통부)				
496	안성	공도	웅교	404	제	304	161	국	국(국토교통부)				
497	안성	공도	웅교	405-1	제	337	132	국	국(국토교통부)				
498	안성	공도	웅교	405-2	제	826	303	국	국(안성시)				
499	안성	공도	웅교	405-4	제	271	147	국	국(안성시)				
500	안성	공도	웅교	406	제	301	210	국	국(국토교통부)				
501	안성	공도	웅교	607	제	11,679	1,202	국	국(국토교통부)				
502	안성	공도	웅교	407-1	제	529	227	국	국(국토교통부)				
503	안성	공도	웅교	409-9	제	807	331	국	국(국토교통부)				
504	안성	공도	웅교	410-4	제	473	137	국	국(국토교통부)				
505	안성	공도	웅교	409-7	제	1,160	603	국	국(국토교통부)				
506	안성	공도	웅교	409-10	제	512	24	국	국(국토교통부)				
507	안성	공도	웅교	621-12	천	546	62	국	국(국토교통부)				
508	안성	공도	건천	729-12	구	541	48	국	국(국토교통부)				
509	안성	공도	건천	730	도	3,719	28	국	국(국토교통부)				
510	안성	공도	건천	1-1	제	182	6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511	안성	공도	건천	2-1	제	1,448	545	국	국(국토교통부)				
512	안성	공도	건천	8-2	제	646	213	국	국(국토교통부)				
513	안성	공도	건천	9-3	제	747	283	국	국(국토교통부)				
514	안성	공도	건천	9-5	천	1,649	7	국	국(국토교통부)				
515	안성	공도	건천	12-8	전	1,197	11	국	국(기획재정부)				
516	안성	공도	건천	12-3	제	407	154	국	국(기획재정부)				
517	안성	공도	건천	13-5	천	730	4	국	국(국토교통부)				
518	안성	공도	건천	13-1	제	235	94	국	국(국토교통부)				
519	안성	공도	건천	15-5	제	59	63	박인장	안성읍 도기동				미등기
520	안성	공도	건천	19-1	제	264	134	국	국(국토교통부)				
521	안성	공도	건천	18-7	제	844	583	차기동	성남시 단대1동 5633				미등기
522	안성	공도	건천	19-11	제	3,663	1,201	국	국(국토교통부)				
523	안성	공도	건천	30-2	제	3,203	1,059	국	국(국토교통부)				
524	안성	공도	건천	31-1	제	595	189	국	국(국토교통부)				
525	안성	공도	건천	32-1	제	364	194	국	국(국토교통부)				
526	안성	공도	건천	31-4	제	1,851	1,332	장완모	경성부 아현동 404-2				
527	안성	공도	건천	75-3	답	3,157	1,055	국	국(국토교통부)				
528	안성	공도	건천	77-2	전	1,441	443	국	국(국토교통부)				
529	안성	공도	건천	140-2	제	1,398	471	국	국(국토교통부)				
530	안성	공도	건천	142-1	제	717	361	국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성 명	소유자 주 소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관계	
531	안성	공도	건천	143	천	14,794	21	국	국(국토교통부)				
532	안성	공도	건천	139-3	천	1,527	490	국	국(국토교통부)				
533	안성	공도	건천	157-3	천	691	187	국	국(국토교통부)				
534	안성	공도	건천	139-2	제	2,522	749	국	국(기획재정부)				
535	안성	공도	건천	157-2	제	582	184	국	국(국토교통부)				
536	안성	공도	건천	157-7	도	472	3	국	국(국토교통부)				
537	안성	공도	건천	156-3	천	2,621	79	국	국(국토교통부)				
538	안성	공도	건천	156-9	도	5,081	308	국	국(기획재정부)				
539	안성	공도	건천	156-10	천	8,188	544	국	국(국토교통부)				
540	안성	공도	건천	156-7	제	1,706	559	국	국(국토교통부)				
541	안성	공도	건천	191-2	제	1,078	259	국	국(국토교통부)				
542	안성	공도	건천	155-3	제	1,190	483	국	국(국토교통부)				
543	안성	공도	건천	192-2	제	1,180	342	국	국(국토교통부)				
544	안성	공도	건천	155-2	제	2,635	859	국	국(국토교통부)				
545	안성	공도	건천	195-2	제	8,195	2,674	국	국(국토교통부)				
546	안성	공도	건천	733	도	3,929	80	국	국(국토교통부)				
547	안성	공도	건천	731	천	200,484	183	국	국(국토교통부)				
548	안성	공도	건천	207-2	제	375	15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549	천안	성환	신가	105-6	제	645	13	국	국(국토교통부)				
550	천안	성환	신가	103-2	제	76	2	국	국(국토교통부)				
551	천안	성환	신가	105-7	제	46	8	국	국(국토교통부)				
552	천안	성환	신가	103-10	도	27	21	국	국(국토교통부)				
553	천안	성환	신가	103-5	제	198	74	국	국(국토교통부)				
554	천안	성환	신가	104-2	제	294	20	국	국(국토교통부)				
555	천안	성환	신가	104-3	제	631	2	국	국(국토교통부)				
556	천안	성환	신가	99-112	천	216	26	국	국(국토교통부)				
557	천안	성환	신가	99-48	천	46	20	국	국(국토교통부)				
558	천안	성환	신가	99-53	천	618	618	옥강발	경성부 종로구 명륜정 3정목 67-13				
559	천안	성환	신가	174-1	천	2,281	101	국	국(국토교통부)				
560	천안	성환	신가	445	천	57,365	287 48,930	국	국(국토교통부)				
561	천안	성환	신가	176-1	답	3,736	223	국	국(국토교통부)				
562	천안	성환	신가	177-2	답	53	34	국	국(국토교통부)				
563	천안	성환	신가	454-2	도	596	6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564	안성	미양	진촌	174-2	제	443	93	장윤실	진촌리				
565	안성	미양	진촌	175-2	제	922	244	박성호	175				
566	안성	미양	진촌	183-4	제	299	83	국	국(국토교통부)				
567	안성	미양	진촌	182-4	제	465	121	국	국(국토교통부)				
568	안성	미양	진촌	181-5	제	771	234	국	국(국토교통부)				
569	안성	미양	진촌	178-2	제	106	28	국	국(국토교통부)				
570	안성	미양	진촌	179-7	제	431	136	국	국(국토교통부)				
571	안성	미양	진촌	394-9	천	72	18	국	국(국토교통부)				
572	안성	미양	진촌	202-2	임	178	37	국	국(국토교통부)				
573	안성	미양	진촌	200-2	제	149	30	이춘원	진촌리				
574	안성	미양	진촌	201-4	제	1,140	439	황제성	41				미등기
575	안성	미양	진촌	200-8	천	316	7	국	국(경기도)				미등기
576	안성	미양	진촌	200-6	제	273	152	이춘원	진촌리				미등기
577	안성	미양	진촌	199-7	천	92	3	국	국(국토교통부)				미등기
578	안성	미양	진촌	199-6	천	312	2	국	국(국토교통부)				
579	안성	미양	진촌	199-5	천	336	184	국	국(국토교통부)				미등기
580	안성	미양	진촌	206-2	임	204	3	국	국(국토교통부)				미등기
581	안성	미양	진촌	198-2	제	714	621	김원복	천안시 오룡동 126				
582	안성	미양	진촌	214-2	제	1,365	317	국	국(기획재정부)				
583	안성	미양	진촌	220-2	제	1,220	302	국	국(국토교통부)				
584	안성	미양	진촌	221-2	제	1,098	255	국	국(국토교통부)				
585	안성	미양	진촌	222-2	제	1,342	317	국	국(국토교통부)				
586	안성	미양	진촌	310-3	제	1,696	403	국	국(국토교통부)				
587	안성	미양	진촌	309-2	제	962	874	박기준	경성부삼각동				
588	안성	미양	진촌	312-2	제	172	8	국	국(국토교통부)				
589	안성	미양	진촌	308-2	제	291	94	국	국(국토교통부)				
590	안성	미양	진촌	314-1	제	288	24	국	국(국토교통부)				
591	안성	미양	진촌	306-1	제	195	59	국	국(국토교통부)				
592	안성	미양	진촌	305-1	제	83	66	박종운 외3인	개정리 470				
593	안성	미양	진촌	315-2	제	1,233	300	국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94	안성	미양	진촌	316-2	제	390	90	국	국(국토교통부)				
595	안성	미양	진촌	318-1	제	268	17	국	국(국토교통부)				
596	안성	미양	진촌	319-2	제	3,564	905	국	국(국토교통부)				
597	안성	미양	진촌	335-2	제	129	137	성찬용	서울 성북구 돈암동				
598	안성	미양	진촌	334-2	제	430	93	국	국(국토교통부)				
599	안성	미양	진촌	333-2	제	734	193	국	국(국토교통부)				
600	안성	미양	진촌	341-1	제	486	133	국	국(국토교통부)				
601	안성	미양	진촌	0-2가		0	4						가지변
602	안성	미양	진촌	359-1	제	403	409	성찬용	진촌리				
603	안성	미양	진촌	357-1	제	330	87	국	국(국토교통부)				
604	안성	미양	진촌	356-1	제	271	85	국	국(국토교통부)				
605	안성	미양	진촌	398-1	구	538	123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미등기
606	안성	미양	진촌	361-2	제	225	223	성찬용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273-11				
607	안성	미양	진촌	363-2	제	727	177	국	국(국토교통부)				
608	안성	미양	진촌	364-2	제	664	168	국	국(국토교통부)				
609	안성	미양	진촌	365-2	제	592	149	국	국(기획재정부)				
610	안성	미양	진촌	366-4	제	1,322	312	국	국(국토교통부)				
611	안성	미양	진촌	366-6	제	1,084	185	국	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26조 ③항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7호(2017.3.29.)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하천공사의 명칭 : 오산천 오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고, 하천 개수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개 요 : 제방보축 L=8.67km, 호안공 L=3.73km, 자전거도로 L=5.16km, 구조물공 1식, 부대공 1식
-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일원
-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7년 3월 28일
 - 준공예정일 : 2020년 9월 7일(42개월)
-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변경없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오산		탑	258	천	9,054	1,283	국	국(국토교통부)				
2	오산		탑	259	도	1,121	259	국	국(국토교통부)				
3	오산		탑	259	천	1,144	724	국	국(국토교통부)				
4	오산		두곡	170	천	2,214	512	국	국(국토교통부)				
5	오산		두곡	169-1	도	678	50	국	국(국토교통부)				
6	오산		두곡	92	답	230	47	국	국(국토교통부)				
7	오산		두곡	93	답	813	585	국	국(국토교통부)				
8	오산		두곡	94-1	답	434	173	국	국(국토교통부)				
9	평택	서탄	수월암	1191	도	310	25	국	국(평택시)				
10	평택	서탄	수월암	1	천	704	411	국	국(국토교통부)				
11	평택	서탄	수월암	2-1	천	222	150	이영수	경기도 수원시 성호면 탑리 100				
12	평택	서탄	수월암	3	천	1,418	399	이영수	경기도 수원시 성호면 탑리 100				
13	평택	서탄	수월암	5-3	천	1,112	601	국	국(건설교통부)				
14	평택	서탄	수월암	5	천	832	296	국	국(건설부)				
15	평택	서탄	수월암	73	천	18,890	988	국	국(건설부)				
16	평택	진위	야막	699	천	73,436	3,322	국	국(건설부)				
17	평택	서탄	사	938	천	51,075	2,560	국	국(건설부)				
18	평택	서탄	사	622-1	천	179	3	국	국(건설부)				
19	평택	서탄	사	517	천	3,745	240	국	국(국토교통부)				
20	평택	서탄	사	945	구	2,119	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1	평택	서탄	사	518	천	559	438	국	국(국토교통부)				
22	평택	서탄	사	519	천	2,076	779	국	국(건설부)				
23	평택	서탄	사	520	천	172	59	국	국(건설교통부)				
24	평택	서탄	사	521-1	천	9,696	365	국	국(건설교통부)				
25	평택	서탄	사	521-3	잡	202	22	국	국(건설부)				
26	평택	서탄	사	525	전	1,683	1	국	국(건설교통부)				
27	평택	서탄	사	833-1	제	1,573	98	국	국(건설교통부)				
28	평택	서탄	사	834-4	전	99	62	국	국(건설교통부)				
29	평택	서탄	사	835-1	전	3,874	69	국	국(건설교통부)				
30	평택	서탄	사	833-2	답	291	177	국	국(건설교통부)				
31	평택	서탄	사	841-2	답	2,698	1,016	국	국(건설부)				
32	평택	서탄	사	841-1	답	2,390	433	국	국(건설교통부)				
33	평택	서탄	사	841-5	답	1,056	289	국	국(건설교통부)				
34	평택	서탄	사	840-1	잡	245	5	국	국(건설부)				
35	평택	서탄	사	840-2	잡	163	103	국	국(건설부)				
36	평택	서탄	사	841-6	답	1,536	274	국	국(건설교통부)				
37	평택	진위	하북	700	천	65,517	6,935	국	국(평택시)				
38	평택	서탄	금암	911-4	천	40,223	3,755	국	국(건설부)				
39	평택	진위	하북	482	전	2,241	1,155	김학봉	경기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577				
40	평택	진위	하북	481-5	전	3,421	151	국	국(건설교통부)				
41	평택	서탄	금암	26	천	188	107	국	국(국토해양부)				
42	평택	진위	하북	548-2	천	717	1	국	국(건설부)				
43	평택	진위	하북	548-4	구	1,120	186	국	국(한국농어촌공사)				
44	평택	진위	하북	548-6	천	1,550	91	국	국(건설부)				
45	평택	서탄	금암	31-2	전	800	504	국	국(건설교통부)				
46	평택	서탄	금암	31-3	전	238	120	국	국(건설교통부)				
47	평택	서탄	금암	910	구	1,093	86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8	평택	서탄	금암	34-2	구	565	-	장원성진	경기도 평택시 팽성면 도두리579				
49	평택	서탄	금암	32답	답	73	44	국	국(건설교통부)				
50	평택	서탄	금암	37-1	전	73	72	국	국(건설교통부)				
51	평택	서탄	금암	37-5	구	4,925	98	국	국(건설교통부)				
52	평택	서탄	금암	37-6	답	231	15	국	국(건설교통부)				
53	평택	서탄	금암	39	답	1,197	306	국	국(건설교통부)				
54	평택	서탄	금암	41-1	답	850	103	국	국(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5	평택	서탄	금암	41-2	답	615	38	국	국(건설교통부)				
56	평택	서탄	금암	40	답	635	238	국	국(건설부)				
57	평택	서탄	금암	106-1	답	225	52	국	국(국토해양부)				
58	평택	서탄	금암	106-2	답	11,999	1,086	국	국(건설부)				
59	화성		오산	967-1670	전	897	18	국	국				
60	화성		오산	967-1679	전	11,973	684	국	국				
61	화성		오산	921-128	전	17,795	565	국	국				
62	화성		오산	921-39	전	1,688	453	국	국				
63	화성		오산	902-4	임	14,280	23	국	국				
64	화성		오산	921-41	전	10,656	441	국	국				
65	화성		오산	921-40	전	216	8	국	국				
66	화성		오산	967-1681	전	5,827	569	국	국				
67	화성		오산	967-1671	전	1,079	564	국	국				
68	화성		오산	967-1672	전	2,579	642	국	국				
69	화성		오산	967-1682	도	300	21	국	국				
70	화성		오산	967-1727	도	307	24	국	국				
71	화성		오산	967-1688	전	299	119	국	국				
72	화성		오산	967-1686	전	604	54	국	국				
73	화성		오산	967-1689	전	14	14	국	국				
74	화성		오산	967-1690	전	221	221	국	국				
75	화성		오산	967-1685	전	164	122	국	국				
76	화성		오산	967-1695	전	187	130	국	국				
77	화성		오산	967-1720	답	93	93	법인	법인				
78	화성		오산	967-1723	전	316	222	국	국				
79	화성		오산	967-1716	전	163	116	법인	법인				
80	화성		오산	967-1713	전	315	244	국	국				
81	화성		오산	967-1726	전	3,909	52	국	국				
82	화성		오산	967-1709	전	354	2	국	국				
83	화성	동탄	방교	872-46	전	747	361	국	국				
84	화성		반송	574-13	전	779	1	법인	법인				
85	화성		반송	574-9	전	751	23 16	법인	법인				
86	화성		반송	638-39	전	137	1	법인	법인				
87	화성		반송	634-2	답	1,298	25	법인	법인				
88	화성		반송	635	답	1,949	125 69	법인	법인				
89	화성		반송	638-53	전	3,014	9	법인	법인				
90	화성		반송	639	도	265	8	국	국				
91	화성	동탄	금곡	765	도	312	17	국	국				
92	화성	동탄	금곡	244-8	도	146	105	최난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05-8				
93	화성	동탄	금곡	244-2	대	865	1 88	최난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05-8				
94	화성		오산	967-1687	전	80	80	국	국				
95	화성	동탄	금곡	730	구	13,153	120	국	국				
96	화성		오산	967-1721	답	17	17	법인	법인				
97	화성		오산	967-1722	답	10	10	법인	법인				
98	화성	동탄	금곡	287-4	전	88	1	국	국				
99	화성	동탄	금곡	726	전	340	56	국	국				
100	화성	동탄	방교	872-39	전	159	29	국	국				
101	화성	동탄	방교	872-40	전	1,844	845	국	국				
102	화성	동탄	방교	872-36	전	96	96	이장규	서울시 관안구 상도동 244-265				
103	화성	동탄	방교	872-18	전	139	52	국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04	화성	동탄	방교	872-20	천	376	215	국	국				
105	화성	동탄	방교	872-35	답	64	64	국	국				
106	화성	동탄	방교	872-14	천	202	48	국	국				
107	화성	동탄	방교	872-24	천	684	383	국	국				
108	화성	동탄	방교	872-27	천	132	96	최갑순	경기도 화성시 능동 1143-6, 301호				
109	화성	동탄	방교	872-25	천	114	59	국	국				
110	화성	동탄	방교	872-28	천	765	333	최갑순 외 1인	경기도 화성시 능동 1143-6, 301호				
111	화성	동탄	방교	872-176	도	46	35	국	국				
112	화성	동탄	방교	872-34	천	245	230	국	국				
113	화성	동탄	방교	872-33	천	49	1	국	국				
114	화성	동탄	방교	872-172	천	1,103	736	국	국				
115	화성	동탄	방교	872-260	천	155	71	국	국				
116	화성	동탄	방교	872-173	천	99	99	국	국				
117	화성	동탄	방교	872-263	천	434	310	국	국				
118	화성	동탄	방교	872-233	임	268	228	화성시	화성시				
119	화성	동탄	방교	872-230	임	1,159	961	화성시	화성시				
120	화성	동탄	방교	872-254	천	7,153	323	국	국				
121	화성	동탄	방교	872-169	천	41,403	951	국	국				
122	화성	동탄	방교	872-177	도	46	46	국	국				
123	화성	동탄	방교	872-56	천	127	92	국	국				
124	화성	동탄	방교	872-53	천	353	313	국	국				
125	화성	동탄	금곡	282-4	전	84	1	국	국				
126	화성	동탄	금곡	281-2	전	118	33	국	국				
127	화성	동탄	금곡	280-4	전	83	45	국	국				
128	화성	동탄	금곡	280-5	전	60	34	국	국				
129	화성	동탄	금곡	264-2	천	25	3	국	국				
130	화성	동탄	금곡	265-2	장	986	37	전삼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3 108-402				
131	화성	동탄	금곡	304	도	1,675	99	국	국				
132	화성	동탄	금곡	325-1	답	2,341	4	전대화 외 1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어진로 194번길 23				
133	화성	동탄	금곡	266-5	답	354	192	국	국				
134	화성	동탄	금곡	266-6	답	13	4	국	국				
135	화성	동탄	금곡	267-3	천	271	271	최갑순	경기도 화성시 능동 1143-6, 301호				
136	화성	동탄	금곡	267-5	답	99	70	박남순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2길14,301호				
137	화성	동탄	금곡	326-1	답	464	38	박남순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2길14,301호				
138	화성	동탄	금곡	327	답	1,003	289	국	국				
139	화성	동탄	금곡	327-4	답	884	358	국	국				
140	화성	동탄	금곡	339	도	1,663	27	국	국				
141	화성	동탄	금곡	766-99	구	715	296	국	국				
142	화성	동탄	금곡	766-97	답	1,131	175	국	국				
143	화성	동탄	금곡	766-98	구	597	597	국	국				
144	화성	동탄	금곡	766-96	답	2,624	5 111	국	국				
145	화성	동탄	금곡	730-5	구	12,776	4,593 1,062 961	국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46	화성	동탄	금곡	348	답	3,433	27 43	국	국				
147	화성	동탄	금곡	355	도	1,128	59	국	국				
148	화성	동탄	방교	872-54	천	513	386	국	국				
149	화성	동탄	방교	872-48	천	1,195	856	화성시	화성시				
150	화성	동탄	방교	872-65	천	367	222	국	국				
151	화성	동탄	방교	872-70	천	600	393	국	국				
152	화성	동탄	방교	872-71	천	756	547	국	국				
153	화성	동탄	방교	872-85	천	404	332	국	국				
154	화성	동탄	방교	872-73	천	409	202	국	국				
155	화성	동탄	방교	872-78	제	1,243	965	국	국				
156	화성	동탄	방교	872-96	제	476	419	국	국				
157	화성	동탄	방교	872-97	제	149	132	국	국				
158	화성	동탄	방교	872-109	천	203	97	국	국				
159	화성	동탄	방교	872-98	제	245	192	국	국				
160	화성	동탄	방교	872-99	제	112	94	국	국				
161	화성	동탄	방교	872-100	제	94	94	이정현	경기도 화성시 통탄면 금곡리 475				
162	화성	동탄	방교	872-101	제	129	118	국	국				
163	화성	동탄	방교	872-102	제	142	137	국	국				
164	화성	동탄	방교	872-103	제	155	154	국	국				
165	화성	동탄	방교	872-116	천	147	147	윤인수	경기도 화성시 통탄면 금곡리 490				
166	화성	동탄	방교	872-104	제	117	117	윤인수	경기도 화성시 통탄면 금곡리 490				
167	화성	동탄	방교	872-95	천	46	4	국	국				
168	화성	동탄	방교	872-218	천	13,279	453	국	국				
169	화성	동탄	금곡	400-3	답	1,256	52	국	국				
170	화성	동탄	금곡	401	천	2,636	90	심용섭	경기도 화성시 통탄면 금곡리 473-4				
171	화성	동탄	금곡	405	도	948	59	국	국				
172	화성	동탄	금곡	424-1	천	2,629	127	마순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로 210번길 24-15				
173	화성	동탄	금곡	425	답	3,346	82	황현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274				
174	화성	동탄	금곡	429-1	도	928	76	국	국				
175	화성	동탄	금곡	443-2	답	1,417	32	김종근	경기도 용인시 신갈로 124번길3,102-1703				
176	화성	동탄	방교	872-121	제	25	14	이정현	경기도 화성시 통탄면 금곡리 475				
177	화성	동탄	금곡	444	답	1,495	21 27	국	국				
178	화성	동탄	방교	872-115	천	102	2	국	국				
179	화성	동탄	방교	872-123	천	116	17	국	국				
180	화성	동탄	방교	872-122	제	5	5	국	국				
181	화성	동탄	금곡	446	답	2,937	30	국	국				
182	화성	동탄	금곡	449-3	도	915	87	국	국				
183	화성	동탄	금곡	766-47	답	2,780	43	신광호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동부아파트 103-1401				
184	화성	동탄	방교	872-203	임	3,759	1,466	화성시	화성시				
185	화성	동탄	방교	872-202	임	714	714	화성시	화성시				
186	화성	동탄	방교	872-219	천	4,606	203	국	국				
187	화성	동탄	방교	872-178	천	32,880	3,752	국	국				
188	화성	동탄	방교	872-126	천	407	166	국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89	화성	동탄	방교	872-127	천	372	176	이창래	경기도 오산시 쥬동 26				
190	화성	동탄	방교	872-129	전	847	221	국	국				
191	화성	동탄	방교	872-132	천	1,140	761	국	국				
192	화성	동탄	방교	872-151	천	344	24	국	국				
193	화성	동탄	방교	872-149	천	231	224	국	국				
194	화성	동탄	방교	872-150	천	235	163	국	국				
195	화성	동탄	방교	872-152	천	265	126	국	국				
196	화성	동탄	방교	872-154	천	193	94	국	국				
197	화성	동탄	방교	872-144	천	84	84	박규원	경기도 화성시 방교리 655				
198	화성	동탄	방교	872-143	천	319	64	박규원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98-5 라동 106호				
199	화성	동탄	방교	872-147	천	418	223	박규원	경기도 화성시 방교리 655				
200	화성	동탄	방교	872-137	전	227	148	국	국				
201	화성	동탄	방교	872-139	전	16	16	국	국				
202	화성	동탄	방교	872-180	잡	13	13	국	국				
203	화성	동탄	방교	872-179	천	750	540	국	국				
204	화성	동탄	금곡	766-51	답	2,277	45	한성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도 99번길 36-10				
205	화성	동탄	금곡	766-52	구	2,757	1,752	국	국				
206	화성	동탄	금곡	741	도	761	60	국	국				
207	화성	동탄	금곡	541	답	2,759	137	국	국				
208	화성	동탄	금곡	730-9	구	2,771	1,369 637	국	국				
209	화성	동탄	금곡	542	전	1,250	122	이종구	경기도 오산시 쥬동 26-5				
210	화성	동탄	금곡	757-1	도	451	49	국	국				
211	화성	동탄	금곡	547-2	전	10	10	국	국				
212	화성	동탄	금곡	548-3	답	1,873	611	심재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도 259번길 9,1층				
213	화성	동탄	금곡	557-8	전	1,623	286	정진행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369-5				
214	화성	동탄	금곡	557-9	천	7	7	국	국				
215	화성	동탄	금곡	557-5	장	1,200	22	전성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34번길 11,105-1102				
216	화성	동탄	금곡	555-2	장	911	65	이종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50번길 73, 106-1103				
217	화성	동탄	금곡	555-5	전	345	240	강정율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1-30				
218	화성	동탄	금곡	554-6	대	998	35	강래학	경기도 화성시 오산읍 오산리 320				
219	화성	동탄	금곡	553	전	2,987	105	강래학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8-7, 105-1902				
220	화성	동탄	금곡	746-5	잡	667	106	강래학	경기도 화성시 오산읍 오산리 320				
221	화성	동탄	금곡	552-1	대	1,203	34	강래학	경기도 화성시 오산읍 오산리 320				
222	화성	동탄	금곡	615-11	천	371	207	국	국				
223	화성	동탄	금곡	615-10	대	240	195	국	국				
224	화성	동탄	금곡	615-12	전	983	364	국	국				
225	화성	동탄	금곡	615-7	전	496	436	국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26	화성	동탄	방교	872-158	천	772	334	국	국				
227	화성	동탄	금곡	615-2	천	844	334	김혜란 외 1인	경기도 오산시 쉼동 583-1, 110-104				
228	화성	동탄	방교	872-160	천	124	112	국	국				
229	화성	동탄	방교	872-159	천	6	6	국	국				
230	오산		은계	110-6	도	932	602 213	국	국				
231	오산		은계	6	천	15,355	586	국	국				
232	오산		은계	10-4	천	1,006	805	국	국				
233	오산		은계	9-23	천	139	81	국	국				
234	오산		은계	10-5	도	198	23	국	국				
235	오산		은계	9-22	도	402	255	국	국				
236	오산		은계	9-7	천	2,461	1,221	국	국				
237	오산		은계	111-4	구	18,942	906	국	국				
238	화성	동탄	금곡	598-2	잡	226	10	이항주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 17번길 3, 3층				
239	화성	동탄	금곡	615-8	천	125	31	김산희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 36, 408동 1906호				
240	화성	동탄	금곡	615-1	대	1,339	24	김산희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 36, 408동 1906호				
241	화성	동탄	금곡	615-9	대	228	13	김혜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615-1				
242	화성	동탄	금곡	742-2	도	3,036	247	국	국				
243	화성	동탄	금곡	614-6	잡	259	122	화성시	화성시				
244	화성	동탄	금곡	614-5	잡	1,279	32	화성시	화성시				
245	화성	동탄	금곡	614-8	잡	42	42	화성시	화성시				
246	화성	동탄	금곡	614-7	잡	907	356	화성시	화성시				
247	화성	동탄	금곡	614-9	잡	634	18	화성시	화성시				
248	오산		은계	11	제	181	20	오산시	오산시				
249	오산		은계	10	제	1,164	134	국	국				
250	화성	동탄	방교	872-189	전	18	18	국	국				
251	화성	동탄	방교	872-188	전	309	309	국	국				
252	화성	동탄	방교	872-191	전	58	58	국	국				
253	화성	동탄	방교	872-190	전	64	64	국	국				
254	화성	동탄	방교	872-223	도	3,753	246	국	국				
255	화성	동탄	방교	872-195	전	83	83	국	국				
256	화성	동탄	방교	872-193	전	187	187	국	국				
257	화성	동탄	방교	872-199	전	404	404	국	국				
258	화성	동탄	방교	811	공	20,912	7,875	화성시	화성시				
259	화성	동탄	방교	872-208	답	8	8	국	국				
260	화성	동탄	방교	872-209	답	500	500	국	국				
261	화성	동탄	방교	872-266	천	94	94	이용옥 외 6인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 11길 9, 가동 302호				
262	화성	동탄	방교	872-184	전	1,509	438	국	국				
263	화성	동탄	방교	872-187	전	1,418	945	국	국				
264	화성	동탄	방교	872-192	전	2,197	59	국	국				
265	화성	동탄	방교	872-194	전	365	365	국	국				
266	화성	동탄	방교	872-197	전	1,429	686	국	국				
267	화성	동탄	방교	872-198	전	897	830	국	국				
268	화성	동탄	방교	872-200	전	24	24	국	국				
269	화성	동탄	방교	872-207	전	70	70	국	국				
270	화성	동탄	방교	872-206	전	17	17	국	국				
271	화성	동탄	방교	872-204	천	1,752	139	국	국				
272	화성	동탄	방교	872-205	천	485	421	국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73	화성	동탄	방교	872-219	천	4,606	358	국	국				
274	오산		은계	88-13	천	989	15	국	국(국토교통부)				
275	오산		은계	108-5	대	191	11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76	오산		은계	108-2	대	838	3	국	국(국토교통부)				
							775						
							18						
277	오산		은계	112-6	대	273	165	국	국(국토교통부)				
							42						
							23						
278	오산		은계	102	대	571	134	국	국(오산시)				
							1						
279	오산		은계	108-3	천	22	24	국	국(국토교통부)				
280	오산		은계	88-9	천	6,908	1,028	국	국(국토교통부)				
281	오산		은계	112-7	천	1,154	97	국	국(국토교통부)				
282	오산		은계	7-46	대	209	137	국	국(오산시)				
							1						
283	오산		은계	7-4	대	3,587	73	국	국(오산시)				
							7						
							2						
284	오산		은계	7-42	도	64	37	국	국(오산시)				
285	오산		은계	7-47	도	47	44	국	국(오산시)				
286	오산		은계	7-48	체	185	154	국	국(오산시)				
287	오산		은계	88-14	천	4,360	923	국	국(국토교통부)				
288	오산		오산	345-4	체	170	148	국	국(오산시)				
289	오산		오산	48-3	체	464	346	국	국(기획재정부)				
290	오산		오산	345-2	체	5,350	197	국	국(오산시)				
291	오산		오산	816-1	천	61,625	684	국	국(국토교통부)				
292	오산		오산	48-13	대	301	159	국	국(오산시)				
293	오산		오산	48-16	대	114	132	국	국(오산시)				
294	오산		오산	348-2	대	56	55	국	국(오산시)				
295	오산		오산	48-15	잡	100	20	국	국(기획재정부)				
296	오산		오산	47	전	34	34	송지미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35, 201동401호				
297	오산		오산	47-4	전	170	170	송지미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35, 201동401호				
298	화성	동탄	방교	872-121	체	25	12	이정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475				
299	화성	동탄	금곡	326	답	1,467	12	국	국(제정경제부)				
300	화성	동탄	금곡	425-1	답	346	102	황현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274				
301	화성	동탄	금곡	429-4	도	385	77	국	국(농수산부)				
302	화성	동탄	금곡	443-5	답	1,113	36	김종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24번길3, 102동1703호 (신갈동, 삼익아파트)				
303	화성	동탄	금곡	730-14	구	1,109	409	국	국(농림부)				
304	화성	동탄	금곡	730-15	구	3,663	1,787	국	국(농림부)				
							935						
305	오산		오산	48-11	도	167	4	국	국(오산시)				
306	오산		오산	345	대	10,355	1	국	국(오산시)				
307	오산		오산	348	대	303	19	국	국(오산시)				
308	오산		은계	7-43	체	82	35	국	국(오산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58호(2015.12.30.), 제2017-63호(2017.04.13.), 제2017-144호(2017.07.1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도로	일반 국도	제38호	서산 ~ 동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양기리, 대덕면 신령리, 내리 일원	53,47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덕면	3.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 편입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2월 ~ 2021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항

5.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세 목 조 서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제외		당초	제외 (추정)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311-50		도	18.0	5.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4-1	홍순갑	안성시공도읍승두리 60-83	서안성농업협동조합
2	311-46		대	239.0	45.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4-1	홍순갑	안성시공도읍승두리 60-83	서안성농업협동조합
3	302-43		대	158.0	40.0	경기도안성시공도읍만수동길 72	강비봉 외2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1, 5층 505호	주식회사 에코로바
4	302-38		대	118.0	18.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도화길 87	신혜영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2가120	주식회사 신한은행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제외		당초	제외 (추정)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147-17		대	74.0	40.0	경기도 안성시 금산1길 13, 101동 906호 (금산동,삼부아파트)	김선자 외 2인		
2	147-14		장	114.0	96.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499	(주)우산산업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가50	중소기업은행
3	산47-21		임	781.0	411.0	수원시 곡반정동429-14	김창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 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95호(관보 제17048호, 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81호(관보 제17234호, 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45호(관보 제17752호, 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73호(관보 제18288호, 2014.0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59호(관보 제18713호 2016.03.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02호(관보 제18831호 2016.08.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호(관보 제18930호 2017.01.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08호(관보 제19026호, 2017.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66(관보 제19072호 2017.08.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87(관보 제19089호 2017.09.0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90(관보 제19094호 2017.09.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기점	⑦중점	⑧주요통과지
도로	일반국도	제42호	인천~동해선	용인시	인천광역시 중구	강원도 동해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용인시 등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용인시(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구간 도로구역 추가 토지의 분할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3. 3 ~ 2019.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및 현장사무실(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34-1, 031-333-598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연번	소재지	당초			지목	변경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용인시 처인구 남동	462-3	13,905	1,146	전	462-3	12,851	-	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9-1 두산 동아아파트 109동 605호
						462-11	1,054	1,054		
2	용인시 처인구 남동	462-4	3,110	110	임	462-4	2,939	-	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9-1 두산 동아아파트 109동 605호
						462-12	171	171		
3	용인시 처인구 남동	465-2	2,035	-	전	465-2	1,956	-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92-3 삼풍아파트 17동 707호
						465-7	79	79		
4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509-1	2,325	60	전	509-1	2,265	-	최**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50 강선마을 603-803
						509-20	60	6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 제2016-383호(2016.11.7.)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4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 당초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4차지역
- 변경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4차지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5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가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단지 조성
-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단지와 상호 보완 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로 지역환경(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4. 사업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나. 면 적 (변경)

구 분	면 적(m²)				비 고
	당 초	변 경			
		계	4차지역	5차지역	
계	5,149,363.4	5,151,269.4	1,421,684.7	3,729,584.7	
○ 용지매수	108,675.0	106,561.3	18,470.9	88,090.4	
－ 개발구역	75,675.0	73,561.3	18,470.9	55,090.4	
－ 토 취 장	33,000.0	33,000.0	－	33,000.0	
○ 해면매립	5,040,688.4	5,044,708.1	1,403,213.8	3,641,494.3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 (변경) 4차지역 : 2001년 8월 ~ 2017년 12월 31일
- 5차지역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현황 (변경)

단위 : m²

구 분			지목별	계	임	하천	제방	도로	잡	해면
단지 조성	당초		면 적	5,116,363.4	-	2,691.3	61,129.2	828.9	11,025.6	5,040,688.4
			필지수	30	-	5	14	8	3	0
	변경	계	면 적	5,118,269.4	-	3,141.2	58,405.5	828.9	11,185.7	5,044,708.1
			필지수	35	-	6	17	8	4	0
		4차 지역	면 적	1,421,684.7	-	2,569.2	13,720.3	0.0	2,181.4	1,403,213.8
			필지수	16	-	3	11	0	2	0
		5차 지역	면 적	3,696,584.7	-	572.0	44,685.2	828.9	9,004.3	3,641,494.3
			필지수	19	-	3	6	8	2	-
토 취 장	당초		면 적	33,000	33,000	-	-	-	-	-
			필지수	1	1	-	-	-	-	-
	변경	계	면 적	33,000.0	33,000.0	-	-	-	-	-
			필지수	1	1	-	-	-	-	-
		4차 지역	면 적	0	0	-	-	-	-	-
			필지수	0	0	-	-	-	-	-
		5차 지역	면 적	33,000.0	33,000.0	-	-	-	-	-
			필지수	1	1	-	-	-	-	-
계	당초		면 적	5,149,363.4	33,000.0	2,691.3	61,129.2	828.9	11,025.6	5,040,688.4
			필지수	31	1	5	14	8	3	0
	변경	계	면 적	5,151,269.4	33,000.0	3,141.2	58,405.5	828.9	11,185.7	5,044,708.1
			필지수	36	1	6	17	8	4	-
		4차 지역	면 적	1,421,684.7	-	2,569.2	13,720.3	-	2,181.4	1,403,213.8
			필지수	16	-	3	11	-	2	-
		5차 지역	면 적	3,729,584.7	33,000.0	572.0	44,685.2	828.9	9,004.3	3,641,494.3
			필지수	20	1	3	6	8	2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 적(m ²) / 구성비(%)							
		당초		변경					
				계		4차지역		5차지역	
합 계		5,149,363.4	100.0	5,151,269.4	100.0	1,421,684.7	100.0	3,729,584.7	100.0
주 거 지 역		655,445.0	12.7	655,445.0	12.8	361,408.1	25.4	294,036.9	7.8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86,525.0	1.7	86,525.0	1.7	85,674.9	6.0	850.1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13,792.0	6.1	313,792.0	6.1	275,733.2	19.4	38,058.8	1.0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55,128.0	5.0	255,128.0	5.0	-	-	255,128.0	6.8
상 업 지 역		1,492,466.0	29.0	1,516,676.0	29.4	8,440.5	0.6	1,508,235.5	40.5
일 반 상 업 지 역		1,492,466.0	29.0	1,516,676.0	29.4	8,440.5	0.6	1,508,235.5	40.5
공 업 지 역		667,701.0	13.0	667,701.0	13.0	45,536.4	3.2	622,164.6	16.7
일 반 공 업 지 역		329,231.0	6.4	329,231.0	6.4	2208.4	0.2	327,022.6	8.8
준 공 업 지 역		338,470.0	6.6	338,470.0	6.6	43,328.0	3.0	295,142.0	7.9
녹 지 지 역		2,333,751.4	45.3	2,311,447.4	44.8	1,006,299.7	70.8	1,305,147.7	35.0
자 연 녹 지 지 역		1,921,876.4	37.3	1,897,762.4	36.8	597,776.3	42.1	1,299,986.1	34.9
보 전 녹 지 지 역		411,875.0	8.0	413,685.0	8.0	408,523.4	28.7	5,161.6	0.1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당초		변경					
				계		4차지역		5차지역	
합계		5,149,363.4	100.0	5,151,269.4	100.0	1,421,684.7	100.0	3,729,584.7	100.0
소계		5,116,363.4	99.4	5,118,269.4	99.4	1,421,684.7	100.0	3,696,584.7	99.1
산업시설		116,243.3	2.3	122,843.3	2.4	-	-	122,843.3	3.3
첨단산업시설		116,243.3	2.3	122,843.3	2.4	-	-	122,843.3	3.3
복합(R & D, 벤처)시설		14,434.3	0.3	14,434.3	0.3	-	-	14,434.3	0.4
지원시설		136,943.3	2.7	130,343.3	2.5	19,664.2	1.4	110,679.1	3.0
유통시설		395,260.0	7.7	412,763.0	8.0	-	-	412,763.0	11.1
물류시설		57,256.7	1.1	80,084.7	1.6	-	-	80,084.7	2.1
상업·업무시설		354,410.0	6.9	359,286.0	7.0	-	-	359,286.0	9.6
주상복합		96,024.0	1.9	104,053.0	2.0	-	-	104,053.0	2.8
주거용지		300,554.0	5.8	300,554.0	5.8	149,623.9	10.5	150,930.1	4.0
학교		35,163.0	0.7	35,478.0	0.7	-	-	35,478.0	1.0
공공청사		4,000.0	0.1	4,000.0	0.1	-	-	4,000.0	0.1
공공시설		3,606,074.8	70.0	3,554,429.8	69.0	1,252,396.6	88.1	2,302,033.2	61.7
도로		1,144,899.3	22.2	1,147,242.3	22.3	253,000.3	17.8	894,242.0	24.0
하천		152,044.0	3.0	159,495.0	3.1	151,305.1	10.6	8,189.9	0.2
광장등		62,153.0	1.2	62,153.0	1.2	-	-	62,153.0	1.7
환경보전시설		2,246,854.1	43.6	2,185,415.1	42.4	848,091.2	59.7	1,337,323.9	35.9
공원·녹지		2,108,648.1	40.9	2,047,209.1	39.7	848,091.2	59.7	1,199,117.9	32.2
폐기물매립장		138,206.0	2.7	138,206.0	2.7	-	-	138,206.0	3.7
변전소		40.4	0.0	40.4	-	-	-	40.4	-
통신시설(악취측정소)		84.0	0.0	84.0	-	-	-	84.0	-
소계		33,000.0	0.6	33,000.0	0.6	-	-	33,000.0	0.9
토취장		33,000.0	0.6	33,000.0	0.6	-	-	33,000.0	0.9

다. 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시설계획 (변경)

- 도로총괄표 (변경)

구분		노선수				연장(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4차지역	5차지역		계	4차지역	5차지역
합계		164	169	84	85	47,854	48,107	14,562	33,545
일반 도로	계	116	119	69	50	35,941	35,941	14,190	21,751
	대로	계	5	6	3	5,234	5,234	781	4,453
		2류	3	4	1	4,958	4,958	505	4,453
		3류	2	2	-	276	276	276	-
	중로	계	107	109	66	30,195	30,195	13,409	16,786
		1류	45	47	11	21,542	21,542	5,861	15,681
		2류	15	15	11	2,735	2,735	2,040	695
		3류	47	47	44	5,918	5,918	5,508	410
	소로	계	4	4	-	512	512	-	512
		1류	3	3	-	442	442	-	442
		3류	1	1	-	70	70	-	70
	자동차 전용도 로	계	2	2	-	7,737	7,737	-	7,737
		광로	계	1	-	929	929	-	929
		3류	1	-	-	929	929	-	929
보행자 전용도 로	대로	계	1	-	1	6,808	6,808	-	6,808
		1류	1	-	1	6,808	6,808	-	6,808
	계	46	48	15	33	4,176	4,429	372	4,057
	중로	계	12	-	12	1,376	1,376	-	1,376
		1류	1	-	1	297	297	-	297
		2류	11	-	11	1,079	1,079	-	1,079
	소로	계	34	15	21	2,800	3,053	372	2,681
		1류	25	6	19	2,623	2,623	195	2,428
		3류	9	9	2	177	430	177	253

※ 4·5차지역에 걸친 도로노선 3개소가 노선수에 중복 반영됨

- 도로조서 (4차지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84개소				14,562						
기정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505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소 계		1개소				505						
기정	대로	3	2	28.5	보조간선	43	중로 1-105	중로1-87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3	27.5	보조간선	233	지구계(북측)	중로1-87	일반도로			
소 계		2개소				276						
기정	중로	1	40	20	집산도로	75	중로 1-3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5	21	집산도로	75	지구계(북측)	중로 1-8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5	20	집산도로	138	중로 1-38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7	20	집산도로	235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9	20	집산도로	233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3	22.5	집산도로	92	대로 3-2	안산시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2	20	집산도로	1,089	대로 2-18	대로 2-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4	21.5	집산도로	245	중로 1-82	중로 1-8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5	21.5	집산도로	1,070	대로 2-18	시흥시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7	22.5	집산도로	159	대로 3-3	대로 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6	20	집산도로	2,450	지구계(북측)	대로 3-3	일반도로			
소 계		11개소				5,861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95	중로 1-57	중로 1-5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국지도로	336	중로 1-84	중로 2-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5	국지도로	319	중로 1-84	중로 2-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	15	국지도로	199	중로 1-82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5	국지도로	62	단독주택용지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	15	국지도로	69	중로 2-10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5	15	국지도로	202	중로 1-82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6	15	국지도로	117	대로 2-18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7	15	국지도로	466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63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9	15	국지도로	112	중로 1-85	중로 3-17	일반도로			
소 계		11개소				2,040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805	중로 2-1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379	중로 2-10	중로 2-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116	중로 2-12	중로 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65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65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70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7	12	국지도로	70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	12	국지도로	63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차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9	12	국지도로	68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0	12	국지도로	69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	12	국지도로	69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3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3	12	국지도로	62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4	12	국지도로	62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5	12	국지도로	69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6	12	국지도로	69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537	중로 2-16	중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8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9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0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1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2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3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4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5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6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7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8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9	12	국지도로	361	중로 2-11	중로 2-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0	12	국지도로	638	중로 2-15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1	12	국지도로	78	중로 2-15	중로 3-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2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3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4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5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6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8	12	국지도로	74	중로 3-30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9	12	국지도로	74	중로 3-30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2	국지도로	74	중로 3-30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1	12	국지도로	74	중로 3-30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2	12	국지도로	75	중로 3-30	중로 3-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3	12	국지도로	62	중로 3-30	중로 3-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3	12	국지도로	150	중로 3-92	중로 1-113	일반도로			
소 계		44개소				5,508						
기정	소로	1	9	10	특수도로	40	중로 1-82	중로 3-2	보행자전용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0	10	특수도로	33	중로 1-85	중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1	10	특수도로	31	중로 1-85	중로 2-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21	경관녹지 46	중로 3-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40	중로 1-82	중로 3-2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30	중로 1-85	중로 3-30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6개소				195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27	중로 1-72	상업용지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27	중로 1-82	중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9	중로 1-84	중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17	중로 1-85	중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18	중로 1-85	중로 2-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13	중로 1-85	중로 2-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27	중로 1-82	중로 3-2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30	중로 1-82	중로 3-3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9	수변공원 81	중로 3-30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9개소				177						

- 도로조서 (5차지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85개소				33,545						
기정	광로	3	5	40	주간선	929	지구계(북측)	지구계(남측)	자동차전용도로			
소 계		1개소				929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6,808	지구계(서측)	시경계	자동차전용도로			
소 계		1개소				6,808						
기정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1,674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9	32.5	보조간선	2,203	지구계(서측)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20	32.5	보조간선	576	대로 2-18	대로 2-19	일반도로			
소 계		3개소				4,453						
기정	중로	1	38	21	집산도로	716	대로 2-18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1	21.5	집산도로	78	중로 1-3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3	21	집산도로	866	중로 1-50	대로 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4	21	집산도로	308	중로 1-50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5	20	집산도로	1,593	중로 1-38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58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8	24.5	집산도로	235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299	대로 2-18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1	24.5	집산도로	1,075	대로 2-19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2	24.5	집산도로	247	대로 2-20	중로 1-38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63	20	집산도로	85	대로 2-20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4	20	집산도로	88	대로 2-20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5	20	집산도로	261	대로 2-20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6	20	집산도로	292	대로 2-20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7	20	집산도로	449	대로 2-18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8	20	집산도로	467	대로 2-19	중로 1-6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1	20	집산도로	291	대로 2-18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2	20	집산도로	276	대로 2-19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3	22.5	집산도로	1,329	대로 3-2	안산시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4	20	집산도로	478	대로 2-19	중로 1-7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6	21	집산도로	305	중로 1-53	중로 1-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3	25.5	집산도로	286	중로 1-53	중로 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4	20	집산도로	718	중로 1-93	중로 1-9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5	20	집산도로	322	중로 1-93	중로 1-9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6	21.5	집산도로	162	중로 1-73	중로 1-9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7	20	집산도로	380	중로 1-73	중로 1-9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8	21.5	집산도로	260	중로 1-53	중로 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9	20	집산도로	602	중로 1-73	중로 1-9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0	20	집산도로	410	중로 1-73	중로 1-9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1	21.5	집산도로	164	중로 1-73	중로 1-10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2	21.5	집산도로	173	중로 1-73	중로 1-10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3	20	집산도로	1,130	중로 1-101	중로 1-10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6	22.5	집산도로	313	중로 1-53	중로 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5	21	집산도로	368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0	21	집산도로	133	중로 1-86	중로 1-1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1	21	집산도로	264	중로 1-53	중로 1-54	일반도로			
소 계		36개소				15,681						
기정	중로	2	6	15	국지도로	159	대로 2-20	중로 1-6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144	중로 1-61	중로 1-6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국지도로	224	중로 1-61	중로 1-6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5	국지도로	168	대로 2-18	중로 1-74	일반도로			
소 계		4개소				695						
기정	중로	3	65	12	국지도로	121	중로 1-86	중로 1-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8	12	국지도로	109	중로 1-86	중로 1-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2	12	국지도로	180	중로 1-111	중로 1-114	일반도로			
소 계		3개소				41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13	중로 1-61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63	중로 1-61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66	중로 1-61	중로 1-61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3개소				442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70	중로 1-72	상업용지	일반도로			
소 계		1개소				70						
기정	중로	1	120	20	특수도로	297	소로 1-26	소로 1-29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1개소				297						
기정	중로	2	20	15	특수도로	84	대로 2-20	중로 1-68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1	15	특수도로	109	광장 2	대로 2-2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2	15	특수도로	40	광장 2	중로 1-65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3	15	특수도로	90	중로 1-65	광장 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4	15	특수도로	108	광장 2	중로 1-6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5	15	특수도로	39	중로 1-61	수변공원 5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6	15	특수도로	109	대로 2-18	광장 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7	15	특수도로	111	광장 3	중로 1-6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8	15	특수도로	168	대로 2-18	중로 1-74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9	15	특수도로	161	중로 1-74	중로 1-6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30	15	특수도로	60	중로 1-61	수변공원 59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11개소				1,079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40	광장 3	중로 1-7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506	대로 2-19	대로 2-1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135	소로 1-5	대로 2-1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78	대로 2-19	소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432	소로 3-1	대로 2-1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26	연결녹지 56	중로 1-9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7	10	특수도로	112	중로 1-93	문화공원 6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8	10	특수도로	117	문화공원 69	중로 1-9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9	10	특수도로	140	중로 1-96	문화공원 7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0	10	특수도로	138	문화공원 70	중로 1-98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1	10	특수도로	149	중로 1-98	문화공원 7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2	10	특수도로	151	문화공원 71	중로 1-9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3	10	특수도로	47	중로 1-95	중로 1-7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4	10	특수도로	47	중로 1-97	중로 1-7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5	10	특수도로	47	중로 1-100	중로 1-7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6	10	특수도로	91	중로 1-103	중로 1-10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7	10	특수도로	40	중로 1-103	중로 1-12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8	10	특수도로	41	중로 1-120	중로 1-10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9	10	특수도로	91	중로 1-103	중로 1-103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19개소				2,428						
신규	소로	3	11	5	특수도로	158	중로 1-67	경관녹지46	보행자전용도로			
신규	소로	3	12	5	특수도로	95	경관녹지46	경관녹지46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2개소				253						

2) 주차장 (변경)

- 4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3,354	0.3	3,354.3	
변경	9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354	0.3	3,354.3	시흥시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개소	-	46,434	-	46,434	
기정	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4,387	-	14,387	시흥시
기정	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4,854	-	4,854	시흥시
기정	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290	-	3,290	시흥시
기정	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104	-	1,104	시흥시
기정	5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683	-	3,683	시흥시
기정	6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7,696	-	7,696	시흥시
기정	7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008	-	2,008	시흥시
기정	8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099	-	2,099	시흥시
기정	10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850	-	850	시흥시
기정	11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686	-	686	시흥시
기정	14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636	-	636	시흥시
기정	15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1,150	-	1,150	시흥시
기정	17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670	-	670	시흥시
기정	19	노외주차장	첨단기계산업지구내	3,321	-	3,321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개소	-	15,153	-	15,153	
기정	16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2,044	-	2,044	안산시
기정	20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00	-	1,900	안산시
기정	2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00	-	1,900	안산시
기정	2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92	-	1,792	안산시
기정	2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84	-	1,784	안산시
기정	2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106	-	2,106	안산시
기정	33	노외주차장	환경센터내	3,627	-	3,627	안산시

3) 공원 (변경)

- 4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개소		53,230	-25,914	27,316	
변경	46	근린공원	주거용지내	10,789	9	10,798	시흥시
폐지	82	근린공원	환경센터 동측변	17,884	-17,884	-	시흥시
변경	64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2,268	-2	2,266	시흥시
변경	66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1,910	-2	1,908	시흥시
변경	73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2,343	-1	2,342	시흥시
폐지	85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8,030	-8,030	-	시흥시
변경	81	도시농업공원	제9호 하천변	10,006	-4	10,002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31,281	-24,626	6,655	
변경	51	수변공원	제12 하천변	31,281	-24,626	6,655	안산시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개소		297,693	-11,841	285,852	
기정	50	근린공원	상업업무용지내	90,649	-	90,649	시흥시
변경	55	근린공원	주상복합용지내	20,852	-6,600	14,252	시흥시
변경	59	수변공원	대로 2-19호선변	171,854	-5,241	166,613	시흥시
기정	60	수변공원	대로 2-19호선변	3,861	-	3,861	시흥시
기정	80	수변공원	철새서식지내	9,003	-	9,003	시흥시
기정	84	수변공원	상업업무용지변	1,474	-	1,474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개소		204,643	-6,655	197,988	
기정	75	근린공원	발전소 동측변	20,360	-	20,360	안산시
기정	49	수변공원	제11호 하천변	18,255	-	18,255	안산시
변경	51	수변공원	제12 하천변	31,281	-6,655	24,626	안산시
기정	65	수변공원	제10 하천변	20,999	-	20,999	안산시
기정	68	수변공원	제64호 녹지변	7,274	-	7,274	안산시
기정	72	수변공원	제64호 녹지변	8,154	-	8,154	안산시
기정	83	수변공원	제47호 녹지변	64,373	-	64,373	안산시
기정	53	문화공원	유통업무지구내	6,600	-	6,600	안산시
기정	69	문화공원	상업업무용지내	8,609	-	8,609	안산시
기정	70	문화공원	상업업무용지내	8,505	-	8,505	안산시
기정	71	문화공원	상업업무용지내	9,511	-	9,511	안산시
기정	76	소공원	상업업무용지내	722	-	722	안산시

※ 4·5차지역에 걸친 공원 1개소가 시설수에 중복 반영됨(수변공원 51)

4) 녹지 (변경)

- 4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개소		630,666	-142,834	487,832	
변경	4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155,910	-106,987	48,923	시흥시
변경	44	연결녹지	제8호하천변	13,295	-19	13,275	시흥시
변경	45	연결녹지	제9호하천변	3,794	3	3,797	시흥시
변경	46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422,993	-35,802	387,191	시흥시
변경	63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9,906	-18	19,888	시흥시
변경	66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4,768	-11	14,757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361,989	-35,700	326,289	
변경	53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28,068	-72	27,996	안산시
변경	54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28,333	-1,136	27,197	안산시
변경	72	경관녹지	제75호 공원 우측변	7,093	-55	7,038	안산시
변경	73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298,495	-34,437	264,058	안산시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개소		935,697	-458,185	477,512	
변경	40	경관녹지	시화방조제변	51,171	-10,904	40,267	시흥시
변경	4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155,910	-48,923	106,987	시흥시
기정	42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56,571	-	56,571	시흥시
변경	43	완충녹지	대1-1호선변	205,210	-5,030	200,180	시흥시
변경	46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422,993	-392,975	30,018	시흥시
기정	57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3,088	-	13,088	시흥시
기정	59	경관녹지	상업업무용지변	504	-	504	시흥시
기정	67	완충녹지	제10호하천변	9,286	-	9,286	시흥시
기정	68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14,888	-	14,888	시흥시
변경	74	완충녹지	초등학교 주변	6,076	-353	5,723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개소		530,765	-293,001	237,764	
기정	47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49,727	-	49,727	안산시
변경	52	완충녹지	하수처리장 주변	1,746	-1,746	-	안산시
변경	54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28,333	-27,197	1,136	안산시

기정	55	연결녹지	제12호 하천변	3,661	-	3,661	안산시
기정	56	연결녹지	제11호 하천변	6,159	-	6,159	안산시
기정	64	경관녹지	상업업무용지변	16,871	-	16,871	안산시
기정	69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14,308	-	14,308	안산시
기정	71	완충녹지	대1-1호선변	90,723	-	90,723	안산시
기정	71	경관녹지	제51호 공원 우측변	19,449	-	19,449	안산시
변경	73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298,495	-264,058	34,437	안산시
기정	73	연결녹지	첨단산업지구변	1,293	-	1,293	안산시

※ 4·5차지역에 걸친 녹지 4개소가 시설수에 중복 반영됨

5) 광장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10,859	-	10,859	
기정	1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479	-	2,479	시흥시
기정	2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750	-	2,750	시흥시
기정	3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3,630	-	3,630	시흥시
기정	4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000	-	2,000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17,028	-	17,028	안산시

6) 하천 (변경)

- 4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m ²)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변경	9	하천	소하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시화MTV	0.932	40~60	88,593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m ²)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변경	12	하천	지방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시화MTV	0.673	90	62,712	안산시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m ²)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10	하천	소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시화MTV	0.711	50	38,825	시흥시

7) 학교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35,163	315	35,478	
변경	2	유치원	주거용지 내	4,001	105	4,106	시흥시
변경	2	중학교	제 8 하천변	13,421	105	13,526	시흥시
변경	4	초등학교	제 8 하천변	17,741	105	17,846	시흥시

8) 용수공급시설 : 4차지역, 5차지역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규모	비 고
기정	2	시흥시 정왕동, 거모동 일대	· 시설 용량 = 65,000 m³/일 · 관로 = 9.6km(D : 800mm) · 가압장 = 1개소(69,000m³/일)	MTV 공업용수도 실시계획 (서울청 2016-356호, '16.10.17)

9) 폐기물처리시설 : 5차지역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장	중로 1-53호선 상단	79,673	-	79,673	시흥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58,533	6,600	65,133	
신설	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75호 근린공원 상단부	-	6,600	6,600	환경에너지 센터
기정	6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장	중로 1-53호선 상단	58,533	-	58,533	안산시

※ 폐기물처리시설①은 열공급시설①과 중복 결정임

10) 공공청사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제8호 하천 좌측변	4,000	-	4,000	시흥시

11) 통신시설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규모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통신 설비	시흥시, 안산시 일원	u-서비스(상수도관리,교통, 방법,미디어보드,환경생태, 기업IT지원),정보통신인프라 , 도시통합정보센터	84	-	84	지능형 도시 (Smart City)

12) 상수도시설계획

구 분	시설명	규 격	연 장			비 고
			당초	4차지역	5차지역	
변경	생활 및 공업용수	Φ100mm ~ Φ1,100mm	33.7km	18.7km	15.0km	

13 하수도시설계획

구분	시설명	규 격	연 장			비 고
			당초	4차지역	5차지역	
변경	· 배제방식 ·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 분류식 Φ450mm ~ Φ1,200mm 1.5×1.0×1런~3.0×2.5×4런 Φ300mm ~ Φ1,200mm				
			30.5km	13.9km	16.6km	
			8.0km	0.7km	7.3km	
			35.7km	7.9km	27.8km	

14) 열공급시설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열원시설	신재생 에너지설비	75호 근린공원 상단부	-	6,600	6,600	환경에너지 센터

※ 열공급시설①은 폐기물처리시설①과 중복 결정임

라. 토취장 계획 : 5차지역

○ 14토취장 면적 : 33,000m²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면 적(m ²) / 구성비(%)							
	당초		변경					
			계		4차지역		5차지역	
합 계	5,149,363.4	100.0	5,151,269.4	100.0	1,421,684.7	100.0	3,729,584.7	100.0
주 거 지 역	655,445.0	12.7	655,445.0	12.8	361,408.1	25.4	294,036.9	7.8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86,525.0	1.7	86,525.0	1.7	85,674.9	6.0	850.1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13,792.0	6.1	313,792.0	6.1	275,733.2	19.4	38,058.8	1.0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55,128.0	5.0	255,128.0	5.0	-	-	255,128.0	6.8
상 업 지 역	1,492,466.0	29.0	1,516,676.0	29.4	8,440.5	0.6	1,508,235.5	40.5
일 반 상 업 지 역	1,492,466.0	29.0	1,516,676.0	29.4	8,440.5	0.6	1,508,235.5	40.5
공 업 지 역	667,701.0	13.0	667,701.0	13.0	45,536.4	3.2	622,164.6	16.7
일 반 공 업 지 역	329,231.0	6.4	329,231.0	6.4	2208.4	0.2	327,022.6	8.8
준 공 업 지 역	338,470.0	6.6	338,470.0	6.6	43,328.0	3.0	295,142.0	7.9
녹 지 지 역	2,333,751.4	45.3	2,311,447.4	44.8	1,006,299.7	70.8	1,305,147.7	35.0
자 연 녹 지 지 역	1,921,876.4	37.3	1,897,762.4	36.8	597,776.3	42.1	1,299,986.1	34.9
보 전 녹 지 지 역	411,875.0	8.0	413,685.0	8.0	408,523.4	28.7	5,161.6	0.1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1) 도로시설계획 (변경)

- 도로총괄표 (변경)

구분		노선수				연장(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4차지역	5차지역		계	4차지역	5차지역
합계		164	169	84	85	47,854	48,107	14,562	33,545
일반 도로	계	116	119	69	50	35,941	35,941	14,190	21,751
	대로	계	5	6	3	5,234	5,234	781	4,453
		2류	3	4	1	4,958	4,958	505	4,453
		3류	2	2	2	276	276	276	-
	중로	계	107	109	66	30,195	30,195	13,409	16,786
		1류	45	47	11	21,542	21,542	5,861	15,681
		2류	15	15	11	2,735	2,735	2,040	695
		3류	47	47	44	5,918	5,918	5,508	410
	소로	계	4	4	-	512	512	-	512
		1류	3	3	-	442	442	-	442
		3류	1	1	-	70	70	-	70
자동차 전용도 로	계	2	2	-	2	7,737	7,737	-	7,737
	광로	계	1	1	-	929	929	-	929
		3류	1	1	-	929	929	-	929
	대로	계	1	1	-	6,808	6,808	-	6,808
		1류	1	1	-	6,808	6,808	-	6,808
보행자 전용도 로	계	46	48	15	33	4,176	4,429	372	4,057
	중로	계	12	12	-	1,376	1,376	-	1,376
		1류	1	1	-	297	297	-	297
		2류	11	11	-	1,079	1,079	-	1,079
	소로	계	34	36	15	2,800	3,053	372	2,681
		1류	25	25	6	2,623	2,623	195	2,428
		3류	9	11	9	177	430	177	253

※ 4·5차지역에 걸친 도로노선 3개소가 노선수에 중복 반영됨

- 도로조서 (4차지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84개소				14,562						
기정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505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소 계		1개소				505						
기정	대로	3	2	28.5	보조간선	43	중로 1-105	중로1-87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3	27.5	보조간선	233	지구계(북측)	중로1-87	일반도로			
소 계		2개소				276						
기정	중로	1	40	20	집산도로	75	중로 1-3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5	21	집산도로	75	지구계(북측)	중로 1-8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5	20	집산도로	138	중로 1-38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7	20	집산도로	235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9	20	집산도로	233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3	22.5	집산도로	92	대로 3-2	안산시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2	20	집산도로	1,089	대로 2-18	대로 2-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4	21.5	집산도로	245	중로 1-82	중로 1-8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5	21.5	집산도로	1,070	대로 2-18	시흥시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7	22.5	집산도로	159	대로 3-3	대로 3-2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계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16	20	집산도로	2,450	지구계(북측)	대로 3-3	일반도로			
소 계		11개소				5,861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95	중로 1-57	중로 1-5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국지도로	336	중로 1-84	중로 2-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5	국지도로	319	중로 1-84	중로 2-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	15	국지도로	199	중로 1-82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5	국지도로	62	단독주택용지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	15	국지도로	69	중로 2-10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5	15	국지도로	202	중로 1-82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6	15	국지도로	117	대로 2-18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7	15	국지도로	466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63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9	15	국지도로	112	중로 1-85	중로 3-17	일반도로			
소 계		11개소				2,040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805	중로 2-1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379	중로 2-10	중로 2-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116	중로 2-12	중로 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65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65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70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7	12	국지도로	70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	12	국지도로	63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	12	국지도로	68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0	12	국지도로	69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	12	국지도로	69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3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3	12	국지도로	62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4	12	국지도로	62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5	12	국지도로	69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6	12	국지도로	69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537	중로 2-16	중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8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9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0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1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2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3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4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5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6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7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8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9	12	국지도로	361	중로 2-11	중로 2-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0	12	국지도로	638	중로 2-15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1	12	국지도로	78	중로 2-15	중로 3-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2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3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4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5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6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8	12	국지도로	74	중로 3-30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9	12	국지도로	74	중로 3-30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2	국지도로	74	중로 3-30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1	12	국지도로	74	중로 3-30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2	12	국지도로	75	중로 3-30	중로 3-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3	12	국지도로	62	중로 3-30	중로 3-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3	12	국지도로	150	중로 3-92	중로 1-113	일반도로			
소 계		44개소				5,508						
기정	소로	1	9	10	특수도로	40	중로 1-82	중로 3-2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0	10	특수도로	33	중로 1-85	중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1	10	특수도로	31	중로 1-85	중로 2-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21	경관녹지 46	중로 3-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40	중로 1-82	중로 3-2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30	중로 1-85	중로 3-30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6개소				195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27	중로 1-72	상업용지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27	중로 1-82	중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9	중로 1-84	중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17	중로 1-85	중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18	중로 1-85	중로 2-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13	중로 1-85	중로 2-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27	중로 1-82	중로 3-2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30	중로 1-82	중로 3-3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9	수변공원 81	중로 3-30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9개소				177						

- 도로조서 (5차지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85개소				33,545						
기정	광로	3	5	40	주간선	929	지구계(북측)	지구계(남측)	자동차전용도로			
소 계		1개소				929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6,808	지구계(서측)	시경계	자동차전용도로			
소 계		1개소				6,808						
기정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1,674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9	32.5	보조간선	2,203	지구계(서측)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20	32.5	보조간선	576	대로 2-18	대로 2-19	일반도로			
소 계		3개소				4,453						
기정	중로	1	38	21	집산도로	716	대로 2-18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1	21.5	집산도로	78	중로 1-3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3	21	집산도로	866	중로 1-50	대로 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4	21	집산도로	308	중로 1-50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5	20	집산도로	1,593	중로 1-38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58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8	24.5	집산도로	235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299	대로 2-18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1	24.5	집산도로	1,075	대로 2-19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2	24.5	집산도로	247	대로 2-20	중로 1-3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3	20	집산도로	85	대로 2-20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4	20	집산도로	88	대로 2-20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5	20	집산도로	261	대로 2-20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6	20	집산도로	292	대로 2-20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7	20	집산도로	449	대로 2-18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8	20	집산도로	467	대로 2-19	중로 1-6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1	20	집산도로	291	대로 2-18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2	20	집산도로	276	대로 2-19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3	22.5	집산도로	1,329	대로 3-2	안산시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4	20	집산도로	478	대로 2-19	중로 1-7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6	21	집산도로	305	중로 1-53	중로 1-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3	25.5	집산도로	286	중로 1-53	중로 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4	20	집산도로	718	중로 1-93	중로 1-9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5	20	집산도로	322	중로 1-93	중로 1-9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6	21.5	집산도로	162	중로 1-73	중로 1-9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7	20	집산도로	380	중로 1-73	중로 1-9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8	21.5	집산도로	260	중로 1-53	중로 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9	20	집산도로	602	중로 1-73	중로 1-9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0	20	집산도로	410	중로 1-73	중로 1-99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1	21.5	집산도로	164	중로 1-73	중로 1-10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2	21.5	집산도로	173	중로 1-73	중로 1-10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3	20	집산도로	1,130	중로 1-101	중로 1-10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6	22.5	집산도로	313	중로 1-53	중로 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5	21	집산도로	368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0	21	집산도로	133	중로 1-86	중로 1-1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1	21	집산도로	264	중로 1-53	중로 1-54	일반도로			
소 계		36개소				15,681						
기정	중로	2	6	15	국지도로	159	대로 2-20	중로 1-6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144	중로 1-61	중로 1-6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국지도로	224	중로 1-61	중로 1-6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5	국지도로	168	대로 2-18	중로 1-74	일반도로			
소 계		4개소				695						
기정	중로	3	65	12	국지도로	121	중로 1-86	중로 1-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8	12	국지도로	109	중로 1-86	중로 1-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2	12	국지도로	180	중로 1-111	중로 1-114	일반도로			
소 계		3개소				41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13	중로 1-61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63	중로 1-61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66	중로 1-61	중로 1-61	일반도로			
소 계		3개소				442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70	중로 1-72	상업용지	일반도로			
소 계		1개소				70						
기정	중로	1	120	20	특수도로	297	소로 1-26	소로 1-29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1개소				297						
기정	중로	2	20	15	특수도로	84	대로 2-20	중로 1-68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1	15	특수도로	109	광장 2	대로 2-2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2	15	특수도로	40	광장 2	중로 1-65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3	15	특수도로	90	중로 1-65	광장 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4	15	특수도로	108	광장 2	중로 1-6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5	15	특수도로	39	중로 1-61	수변공원 5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6	15	특수도로	109	대로 2-18	광장 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7	15	특수도로	111	광장 3	중로 1-6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8	15	특수도로	168	대로 2-18	중로 1-74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9	15	특수도로	161	중로 1-74	중로 1-6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중로	2	30	15	특수도로	60	중로 1-61	수변공원 59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11개소				1,079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40	광장 3	중로 1-7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506	대로 2-19	대로 2-1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135	소로 1-5	대로 2-19	보행자전용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78	대로 2-19	소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432	소로 3-1	대로 2-1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26	연결녹지 56	중로 1-9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7	10	특수도로	112	중로 1-93	문화공원 6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8	10	특수도로	117	문화공원 69	중로 1-9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9	10	특수도로	140	중로 1-96	문화공원 7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0	10	특수도로	138	문화공원 70	중로 1-98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1	10	특수도로	149	중로 1-98	문화공원 7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2	10	특수도로	151	문화공원 71	중로 1-9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3	10	특수도로	47	중로 1-95	중로 1-7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4	10	특수도로	47	중로 1-97	중로 1-7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5	10	특수도로	47	중로 1-100	중로 1-7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6	10	특수도로	91	중로 1-103	중로 1-10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7	10	특수도로	40	중로 1-103	중로 1-12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8	10	특수도로	41	중로 1-120	중로 1-103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9	10	특수도로	91	중로 1-103	중로 1-103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19개소				2,428						
신규	소로	3	11	5	특수도로	158	중로 1-67	경관녹지46	보행자전용도로			
신규	소로	3	12	5	특수도로	95	경관녹지46	경관녹지46	보행자전용도로			
소 계		2개소				253						

2) 주차장 (변경)

- 4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3,354	0.3	3,354.3	
변경	9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354	0.3	3,354.3	시흥시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개소	-	46,434	-	46,434	
기정	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4,387	-	14,387	시흥시
기정	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4,854	-	4,854	시흥시
기정	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290	-	3,290	시흥시
기정	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104	-	1,104	시흥시
기정	5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3,683	-	3,683	시흥시
기정	6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7,696	-	7,696	시흥시
기정	7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008	-	2,008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099	-	2,099	시흥시
기정	10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850	-	850	시흥시
기정	11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686	-	686	시흥시
기정	14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636	-	636	시흥시
기정	15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1,150	-	1,150	시흥시
기정	17	노외주차장	주거용지내	670	-	670	시흥시
기정	19	노외주차장	첨단기계산업지구내	3,321	-	3,321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개소	-	15,153	-	15,153	
기정	16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내	2,044	-	2,044	안산시
기정	20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00	-	1,900	안산시
기정	21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900	-	1,900	안산시
기정	22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92	-	1,792	안산시
기정	23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1,784	-	1,784	안산시
기정	24	노외주차장	상업업무용지내	2,106	-	2,106	안산시
기정	33	노외주차장	환경센터내	3,627	-	3,627	안산시

3) 공원 (변경)

- 4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개소		53,230	-25,914	27,316	
변경	46	근린공원	주거용지내	10,789	9	10,798	시흥시
폐지	82	근린공원	환경센터 동측변	17,884	-17,884	-	시흥시
변경	64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2,268	-2	2,266	시흥시
변경	66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1,910	-2	1,908	시흥시
변경	73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2,343	-1	2,342	시흥시
폐지	85	어린이공원	주거용지내	8,030	-8,030	-	시흥시
변경	81	도시농업공원	제9호 하천변	10,006	-4	10,002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31,281	-24,626	6,655	
변경	51	수변공원	제12 하천변	31,281	-24,626	6,655	안산시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개소		297,693	-11,841	285,852	
기정	50	근린공원	상업업무용지내	90,649	-	90,649	시흥시
변경	55	근린공원	주상복합용지내	20,852	-6,600	14,252	시흥시
변경	59	수변공원	대로 2-19호선변	171,854	-5,241	166,613	시흥시
기정	60	수변공원	대로 2-19호선변	3,861	-	3,861	시흥시
기정	80	수변공원	철새서식지내	9,003	-	9,003	시흥시
기정	84	수변공원	상업업무용지변	1,474	-	1,474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개소		204,643	-6,655	197,988	
기정	75	근린공원	발전소 동측변	20,360	-	20,360	안산시
기정	49	수변공원	제11호 하천변	18,255	-	18,255	안산시
변경	51	수변공원	제12 하천변	31,281	-6,655	24,626	안산시
기정	65	수변공원	제10 하천변	20,999	-	20,999	안산시
기정	68	수변공원	제64호 녹지변	7,274	-	7,274	안산시
기정	72	수변공원	제64호 녹지변	8,154	-	8,154	안산시
기정	83	수변공원	제47호 녹지변	64,373	-	64,373	안산시
기정	53	문화공원	유통업무지구내	6,600	-	6,600	안산시
기정	69	문화공원	상업업무용지내	8,609	-	8,609	안산시
기정	70	문화공원	상업업무용지내	8,505	-	8,505	안산시
기정	71	문화공원	상업업무용지내	9,511	-	9,511	안산시
기정	76	소공원	상업업무용지내	722	-	722	안산시

※ 4·5차지역에 걸친 공원 1개소가 시설수에 중복 반영됨(수변공원 51)

4) 녹지 (변경)

- 4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개소		630,666	-142,834	487,832	
변경	4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155,910	-106,987	48,923	시흥시
변경	44	연결녹지	제8호하천변	13,295	-19	13,275	시흥시
변경	45	연결녹지	제9호하천변	3,794	3	3,797	시흥시
변경	46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422,993	-35,802	387,191	시흥시
변경	63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9,906	-18	19,888	시흥시
변경	66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4,768	-11	14,757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361,989	-35,700	326,289	
변경	53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28,068	-72	27,996	안산시
변경	54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28,333	-1,136	27,197	안산시
변경	72	경관녹지	제75호 공원 우측변	7,093	-55	7,038	안산시
변경	73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298,495	-34,437	264,058	안산시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개소		935,697	-458,185	477,512	
변경	40	경관녹지	시화방조제변	51,171	-10,904	40,267	시흥시
변경	41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155,910	-48,923	106,987	시흥시
기정	42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56,571	-	56,571	시흥시
변경	43	완충녹지	대1-1호선변	205,210	-5,030	200,180	시흥시
변경	46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422,993	-392,975	30,018	시흥시
기정	57	완충녹지	주거용지변	13,088	-	13,088	시흥시
기정	59	경관녹지	상업업무용지변	504	-	504	시흥시
기정	67	완충녹지	제10호하천변	9,286	-	9,286	시흥시
기정	68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14,888	-	14,888	시흥시
변경	74	완충녹지	초등학교 주변	6,076	-353	5,723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개소		530,765	-293,001	237,764	
기정	47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49,727	-	49,727	안산시
변경	52	완충녹지	하수처리장 주변	1,746	-1,746	-	안산시
변경	54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28,333	-27,197	1,136	안산시
기정	55	연결녹지	제12호 하천변	3,661	-	3,661	안산시
기정	56	연결녹지	제11호 하천변	6,159	-	6,159	안산시
기정	64	경관녹지	상업업무용지변	16,871	-	16,871	안산시
기정	69	완충녹지	폐기물매립장변	14,308	-	14,308	안산시
기정	71	완충녹지	대1-1호선변	90,723	-	90,723	안산시
기정	71	경관녹지	제51호 공원 우측변	19,449	-	19,449	안산시
변경	73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298,495	-264,058	34,437	안산시
기정	73	연결녹지	첨단산업지구변	1,293	-	1,293	안산시

※ 4·5차지역에 걸친 녹지 4개소가 시설수에 중복 반영됨

5) 광장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10,859	-	10,859	
기정	1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479	-	2,479	시흥시
기정	2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750	-	2,750	시흥시
기정	3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3,630	-	3,630	시흥시
기정	4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000	-	2,000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17,028	-	17,028	
기정	5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17,028	-	17,028	안산시

6) 하천 (변경)

- 4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m ²)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변경	9	하천	소하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시화MTV	0.932	40~60	88,593	시흥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m ²)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변경	12	하천	지방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시화MTV	0.673	90	62,712	안산시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m ²)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10	하천	소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시화MTV	0.711	50	38,825	시흥시

7) 학교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35,163	315	35,478	
변경	2	유치원	주거용지 내	4,001	105	4,106	시흥시
변경	2	중학교	제 8 하천변	13,421	105	13,526	시흥시
변경	4	초등학교	제 8 하천변	17,741	105	17,846	시흥시

8) 용수공급시설 : 4차지역, 5차지역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규모	비 고
기정	2	시흥시 정왕동, 거모동 일대	· 시설 용량 = 65,000 m³/일 · 관로 = 9.6km(D : 800mm) · 가압장 = 1개소(69,000m³/일)	MTV 공업용수도 실시계획 (서울청 2016-356호 '16.10.17)

9) 폐기물처리시설 : 5차지역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장	중로 1-53호선 상단	79,673	-	79,673	시흥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58,533	6,600	65,133	
신설	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75호 근린공원 상단부	-	6,600	6,600	환경에너지 센터
기정	6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장	중로 1-53호선 상단	58,533	-	58,533	안산시

※ 폐기물처리시설①은 열공급시설①과 중복 결정임

10) 공공청사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제8호 하천 좌측변	4,000	-	4,000	시흥시

11) 통신시설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규모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통신 설비	시흥시, 안산시 일원	u-서비스(상수도관리,교통, 방범,미디어보드,환경생태, 기업IT지원),정보통신인프라 , 도시통합정보센터	84	-	84	지능형 도시 (Smart City)

12) 상수도시설계획

구 분	시설명	규 격	연 장			비 고
			당초	4차지역	5차지역	
변경	생활 및 공업용수	Φ100mm ~ Φ1,100mm	33.7km	18.7km	15.0km	

13) 하수도시설계획

구분	시설명	규 격	연 장			비 고
			당초	4차지역	5차지역	
변경	· 배제방식 ·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 분류식				
		Φ450mm ~ Φ1,200mm	30.5km	13.9km	16.6km	
		1.5×1.0×1런~3.0×2.5×4런	8.0km	0.7km	7.3km	
		Φ300mm ~ Φ1,200mm	35.7km	7.9km	27.8km	

14) 열공급시설 : 5차지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열원시설	신재생 에너지설비	75호 근린공원 상단부	-	6,600	6,600	환경에너지 센터

※ 열공급시설①은 폐기물처리시설①과 중복 결정임

9. 토지세목조서 (변경)

1) 시화MTV 조성구역 (변경)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7-4	제	7,860.7	1,210.5		국(국토교통부)	
2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7-5	제	8,354.5	650.3		국(국토교통부)	
3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7-13	제	16,096.0	15,004.1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07-13	제	14,904.6	7,035.3		국(국토교통부)	
4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7-20	제	20,035.7	18,934.5		국(국토교통부)	
5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7-24	천	2,009.8	273.1		국(국토교통부)	
6	기정	시흥시 정왕동	2376	제	404,324.8	8,569.2		국(국토교통부)	
7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7-16	천	4,076.3	555.9		국(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207-31	천	555.9	555.9		국(국토교통부)	
8	신규	시흥시 정왕동	2207-38	제	6,442.6	6,442.6		국(국토교통부)	
9	신규	시흥시 정왕동	2207-39	제	334.8	334.8		국(국토교통부)	
10	기정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42	도	6,085.5	201.7		국(국토교통부)	
11	기정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43	제	1,649.8	1,649.8		국(국토교통부)	
12	기정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69	잡	5,356.2	5,356.2		국(국방부)	
13	기정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68	잡	3,648.1	3,648.1		국(국방부)	
14	기정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502	도	3,113.7	39.9		국(국토교통부)	
15	기정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503	제	892.1	892.1		국(국토교통부)	
16	기정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510	도	3,907.8	44.5		국(국토교통부)	
17	기정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511	제	739.1	739.1		국(국토교통부)	
18	기정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31	도	6,315.0	329.4		국(국토교통부)	
19	기정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32	제	1,389.3	1,389.3		국(국토교통부)	
20	기정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37-8	도	6,790.3	34.4		국(국토교통부)	
21	기정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37-9	제	852.0	87.9		국(국토교통부)	
	변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37-9	제	852.0	1.7		국(국토교통부)	
22	기정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3	도	3,007.1	121.0		국(국토교통부)	
23	기정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4	제	770.6	770.6		국(국토교통부)	
24	기정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9-4	도	4,157.5	38.7		국(국토교통부)	
25	기정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9-5	제	1,332.3	1,218.9		국(국토교통부)	
	변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9-5	제	1,332.3	1,332.3		국(국토교통부)	
26	신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9-9	제	52.9	52.9		국(국토교통부)	
27	신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1-4	잡	34.7	34.7		안산시	
28	기정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77	도	25,908.2	19.3		국(국토교통부)	
29	기정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0	천	2,091.0	284.9		국(국토교통부)	
30	기정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4	제	16,571.6	8,285.4		국(국토교통부)	
31	기정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5	천	571.7	14.0		국(국토교통부)	
32	기정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6	제	18,208.4	1,727.5		국(국토교통부)	
	변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6	제	18,208.4	115.1		국(국토교통부)	
33	기정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9	천	2,393.1	1,563.4		국(국토교통부)	
	변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9	천	2,393.1	1,624.0		국(국토교통부)	
34	신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89-1	천	580.4	389.3		국(국토교통부)	
35	기정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1	잡	220,442.9	2,021.3		안산시	
	변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1	잡	220,442.9	2,146.7		안산시	
합계			35필지		801,684.7	73,561.3			

2) 14토취장 (변경)

순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1	기정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산148	임	70,092	33,000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산148-2		33,000	33,000			
소 계			1필지		33,000	33,000			

10.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산시청, 시흥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1>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 - 시흥시

□ 46호 근린공원 (변경)

가) 개 요

- 공원명 : 46호 근린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중로-1-84번(시점) 주변에 입지
- 면 적 : 10,797.6㎡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나) 조성방향

- 설계개요
 - 중앙부에 잔디마당과 어린이 물테마놀이기구 도입
 - 체험형 놀이기구 및 경사를 활용한 놀이기구 적극 도입
- 주요도입시설
 - 다목적 잔디마당, 어린이 물놀이시설, 자연놀이시설, 휴게데크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0,797.6			
시설면적	4,319.0	4,136.90	38.31%	법규가능범위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2,159.5	92.40	0.86%	법규가능범위내(법정20%이하)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1,994.00	10,797.60	100.0	100.0	
도로 및 광장	3,083.60	2,532.90	25.71	23.46	
조경시설	133.20	-	1.11	-	
휴양시설	562.77	151.80	4.69	1.41	
유희시설	818.63	1,036.60	6.83	9.60	
운동시설	-	17.50	-	0.16	
편익시설	76.00	398.10	0.63	3.69	
녹지 및 기타	7319.80	6,660.70	61.03	61.69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1,994.00	10,797.60	76.00	92.40	60.00	92.40		
도로 및 광장	소계			3,083.60	2,532.90						
		도로		1,567.00	1,777.1						
	가	광장		1,516.60	755.80						
	가-1	진입광장A		760.44	143.10						
	가-2	진입광장B		422.19	252.50						
	가-3	중앙광장A		149.71	360.20						
	가-4	휴게광장C		27.73	-						
	가-5	휴게광장D		156.53	-						
조경 시설	소계			133.20	-						
	나-1	조형가벽		7.44	-						
	나-2	바닥분수		125.76	-						
휴양 시설	소계			562.77	151.80						
	다-1	연결형파고라	1	-	-						
	다-2	파고라A	1	16.00	69.90						
	다-3	팔각정자		-	-						
	다-4	등의자A	1식	-	-						
	다-5	평의자A	1식	-	-						
	다-6	사각의자	3	24.21	-						
	다-7	야외테이블		-	-						
	다-8	목재테크A,B	1식	409.76	81.90						
	다-9	앉음벽(산석)	-	112.80	-						
운동 시설	소계			-	17.50						
	라-1	체력단련시설	1식	-	17.50						
	라-2	레그익스텐션	1	-	-						
	라-3	쇼올더	1	-	-						
	라-4	스텝퍼	1	-	-						
	라-5	체스트프레스	1	-	-						
	라-6	트위스트	1	-	-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유희 시설	소계			818.63	1,036.60					
	마-1	모래놀이터1	1		304.30					
	마-2	모래놀이터2	1		92.20					
	마-3	모래놀이터3	1		19.60					
	마-4	통나무다리놀이대	1		-					
	마-5	스파이더그물놀이 대	1		-					
	마-6	경사형미끄럼틀A	1		-					
	마-7	경사형미끄럼틀B	1		-					
	마-8	거북이조형물	3		-					
	마-9	물놀이장	1	818.63	620.50					
	마-10	물놀이조합놀이대	1	-	-					
	마-11	물놀이시설A	1		-					
	마-12	물놀이시설B	1		-					
	마-13	물놀이시설E	1		-					
	마-14	물놀이시설F	1		-					
	마-15	물놀이시설H	3		-					
	마-16	물놀이시설J	1		-					
	마-17	물놀이시설L	1		-					
	마-18	물놀이시설(frog)	1		-					
	마-19	물놀이시설(carb)	1		-					
	마-20	물놀이시설(turtle)	1		-					
	마-21	야외사위기	2		-					
편익 시설	소계			76.00	398.10	76.00	92.40	60.00	92.40	
	바-1	화장실+창고	1	76.00	129.40	76.00	92.40	60.00	92.40	지상1층
	바-2	주차장	1		258.90					
	바-3	공원명판(기동형)	1		-					
	바-4	안전수칙판	2		-					
	바-5	음수전	2		9.80					
	바-6	자전거보관대	1	-	-					
	바-7	트렐리스A	1	-	-					
	바-8	트렐리스B	1	-	-					
녹지 및 기타	소계			7,319.80	6,660.70					
	-	녹지		7,319.80	6,660.70					

□ 50호 근린공원 (변경)

가) 개 요

- 공원명 : 50호 근린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상업용지 대2-20호선변 주변에 입지
- 면 적 : 90,649.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5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87호)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MTV 조성사업 3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나) 조성방향

- 설계개요
 - 다목적 잔디마당 및 휴게시설 설치 등 이용객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 중앙부에 대규모 잔디마당과 다양한 수경시설 도입
- 주요도입시설
 - 다목적 잔디마당, 수경시설, 아트테라스, 화장실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90,649.0			
시설면적	36,259.2	36,085.2	39.81	법규가능범위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18,129.6	397.44	0.43	법규가능범위내(법정20%이하)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90,648.0	90,649.00	100.0	100.0	
도로 및 광장	21,027.1	24,947.77	23.2	27.52	
조경시설	4,666.0	3,887.30	5.1	4.29	
휴양시설	7,358.9	5,205.07	8.1	5.74	
유흥시설	507.9	1,551.94	0.6	1.71	
편익시설	180.7	493.12	0.2	0.55	
녹지 및 기타	56,907.4	54,563.80	62.8	60.19	

○ 시설계획 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90,648.0	90,649.00	180.74	397.44	180.74	216.65	
도로 및 광장	소계			21,027.1	24,947.77	-	-	-	-	
		도로		8,676.0	9,425.81	-	-	-	-	
	가-1	진입광장A		2,558.3	3,382.01	-	-	-	-	
	가-2	진입광장B		1,040.0	1,275.35	-	-	-	-	
	가-3	진입광장C		1,621.6	1,634.99	-	-	-	-	
	가-4	진입광장D		1,121.0	1,076.79	-	-	-	-	
	가-5	진입광장E		552.0	2,555.29	-	-	-	-	
	가-6	진입광장F		108.0	1,066.10	-	-	-	-	
	가-7	진입광장G		934.8	1,447.75	-	-	-	-	
	가-8	진입광장H		713.8	1,286.63	-	-	-	-	
	가-9	휴게광장A		1,370.1	454.37	-	-	-	-	
	가-10	휴게광장B		1,052.2	1,342.68	-	-	-	-	
	-	휴게광장C		686.6	-	-	-	-	-	삭제
	-	휴게광장D		592.7	-	-	-	-	-	삭제
조경 시설	소계			4,666.0	3,887.30	-	-	-	-	
	나-1	워터가든	1	2,610.7	2,616.05	-	-	-	-	
	나-2	벽천	1	1,122.9	777.10	-	-	-	-	
	-	수로	1	200.7		-	-	-	-	
	나-4	아트테라스	3	731.7	494.15	-	-	-	-	
유희 시설	소계			507.9	1,551.94	-	-	-	-	
	다-1	키즈워터랜드	1	507.9	1,306.45	-	-	-	-	명칭 변경
	다-2	어린이놀이시설	5	-	245.49	-	-	-	-	
휴양 시설	소계			7,358.9	5,205.07	-	-	-	-	
	라-1	휴게쉼터	-	704.5	2,174.97	-	-	-	-	
	라-2	목재데크	-	6,288.8	2,869.81	-	-	-	-	
	라-3	파고라	5	-	-	-	-	-	-	
	라-4	등의자/평의자	70	-	-	-	-	-	-	
	라-5	야외테이블세트	23	-	-	-	-	-	-	
	라-6	앉음벽	8	-	-	-	-	-	-	
	라-7	어반캠핑장	-	365.6	160.29	-	-	-	-	
편의 시설	소계			180.7	493.12	180.7	397.44	180.7	216.65	
	마-1	화장실	1	180.7	493.12	180.7	397.44	180.7	216.65	지상1층
기타 시설	소계			56,907.4	54,563.80		-	-	-	
	-	녹지		56,907.4	54,563.80		-	-	-	

□ 59호 수변공원 (변경)

가) 개 요

- 공원명 : 59호 수변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상업용지 대로 2-19 주변
- 면 적 : 166,613m²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5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87호)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MTV 조성사업 3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나) 조성방향

- 설계개요
 - 산책, 여가활동, 휴게 등 수변테라스형의 가변형 문화공간 조성
 - 주변 수변상업지역과 연계하여 수변활성화 및 휴게 ·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주요도입시설
 - Wading Pool, 샌드비치, 자이언트 폭포, 등의자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m ²)	적용면적(m ²)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66,613.0			
시설면적	66,645.2	35,917.9	21.56	법규가능범위 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33,322.6	103.50	0.001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m ²)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71,853.0	166,613.00	100.0	100.0	
도로 및 광장	20,420.2	21,225.12	11.9	12.74	
조경시설	3,481.6	2,667.41	2.0	1.6	
휴양시설	13,284.1	8,414.76	7.7	5.05	
유흥시설	3,490.2	3,482.11	2.0	2.09	
편익시설	128.5	128.5	0.1	0.08	
녹지 및 기타	131,048.4	130,695.10	76.3	78.44	내수면 포함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71,853.0	166,613.0	128.50	103.50	128.50	103.50	
도로 및 광장	소계			20,420.2	21,225.12	-	-	-	-	
		도로	-	4,815.1	6,094.70	-	-	-	-	
	가-1	진입광장A	-	1,390.8	1,453.31	-	-	-	-	
	가-2	진입광장B	-	775.4	757.54	-	-	-	-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m²)		건축면적(m²)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가-3	진입광장C	-	1,976.9	1,396.26	-	-	-	-		
	가-4	진입광장D	-	397.4	397.44	-	-	-	-		
	가-5	진입광장E	-	3,438.7	3,171.00	-	-	-	-		
	가-6	휴게광장A	-	1,705.7	1,786.27	-	-	-	-		
	가-7	휴게광장B	-	3,979.3	152.65	-	-	-	-		
	가-8	휴게광장C	-	843.0	382.30	-	-	-	-		
	가-9	휴게광장D	-	594.1	1,320.32	-	-	-	-		
	가-10	휴게광장E	-	503.8	541.53	-	-	-	-		
	가-11	휴게광장F	-	-	1,770.32	-	-	-	-		
	가-12	휴게광장G	-	-	1,289.67	-	-	-	-		
	가-13	휴게광장H	-	-	174.67	-	-	-	-		
	가-14	휴게광장I	-	-	537.14	-	-	-	-		
	조경 시설	소계			3,481.6	2,667.41	-	-	-	-	
		-	수로	-	568.6	-	-	-	-	-	삭제
나-2		자이언트폴	1	332.8	202.99	-	-	-	-		
나-3		보행교	1	822.0	766.48	-	-	-	-		
나-4		스탠드데크A	1	216.4	83.45	-	-	-	-	명칭변경	
나-5		스탠드데크B	1	1,172.2	553.82	-	-	-	-	명칭변경	
나-6		마리나데크	1	369.60	235.86	-	-	-	-	명칭변경	
나-7		스탠드데크C	1	-	192.97	-	-	-	-		
나-8		전망데크	1	-	217.38	-	-	-	-		
나-9	아트테라스	5	-	414.46	-	-	-	-			
유희 시설	소계			3,490.2	3,482.11	-	-	-	-		
	다-1	샌드비치	1	2,760.7	3,042.40	-	-	-	-		
	다-2	웨딩폴	1	729.5	439.71	-	-	-	-		
휴양 시설	소계		139	13,284.1	8,414.76	-	-	-	-		
	라-1	목재데크	-	10,673.8	6,332.94	-	-	-	-		
	라-2	휴게쉼터-1	-	25.1	25.20	-	-	-	-		
	라-3	휴게쉼터-2	-	318.4	88.56	-	-	-	-		
	라-4	휴게쉼터-3	-	471.8	272.44	-	-	-	-		
	라-5	휴게쉼터-4	-	1,210.8	1,111.47	-	-	-	-		
	라-6	휴게쉼터-5	-	50.3	50.27	-	-	-	-		
	라-7	휴게쉼터-6	-	533.9	533.88	-	-	-	-		
	라-9	파고라	3	-	-	-	-	-	-		
	라-10	등의자/평의자	97	-	-	-	-	-	-		
	라-11	조형벤치	21	-	-	-	-	-	-		
	라-12	썬텐베드	18	-	-	-	-	-	-		
	라-13	야외테이블세트	10	-	-	-	-	-	-		
편의 시설	소계			128.5	128.50	128.5	103.50	128.5	103.50		
	마-1	화장실	1	128.5	128.50	128.5	103.50	128.5	103.50	지상1층	
공원 관리 시설	소계			-	-						
	바-1	배수갑문	1	-	-					삭제	
기타 시설	소계			131,048.4	130,695.10						
	-	녹지	-	29,237.7	25,902.10						
	-	내수면	-	101,810.7	104,793.00						

□ 60호 수변공원 (변경)

가) 개 요

- 공원명 : 60호 수변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거북섬 상업용지 내
- 면 적 : 3,861.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5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87호)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MTV 조성사업 3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나) 조성방향

- 설계개요
 - 거북섬의 머리에 바다를 향한 전망공간 조성
 - 스탠드 및 막구조파고라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 주요도입시설
 - 막구조파고라, 휴게시설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3,861.0			
시설면적	1,544.4	1,524.7	39.5	법규가능범위 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772.2	-	-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3,861.0	3,861.0	100.0	100.0	
도로 및 광장	623.7	897.3	16.1	23.2	
휴양시설	902.5	627.4	23.4	16.3	
녹지 및 기타	2,334.8	2,366.3	60.5	60.5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9	3,861.0	3,861.0	-	-	-	-	
도로 광장	소계		-	623.7	897.3	-	-	-	-	
		도로	-	623.7	433.2	-	-	-	-	
	나-1	진입광장A	-		464.1	-	-	-	-	신규
휴양 시설	소계		19	902.5	627.4	-	-	-	-	
	다-1	휴게소	-	902.5	627.4	-	-	-	-	
	다-2	막구조파고라	1	-	-	-	-	-	-	
	다-3	파고라	2	-	-	-	-	-	-	
	다-4	등의자/평의자	6	-	-	-	-	-	-	
	다-5	야외테이블세트	4	-	-	-	-	-	-	
	다-6	앉음벽	6	-	-	-	-	-	-	
기타 시설	소계		-	2,334.8	2,336.3	-	-	-	-	
	-	녹지	-	2,334.8	2,336.3	-	-	-	-	

□ 80호 수변공원 (변경)

가) 개 요

- 공원명 : 80호 수변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철새도래지 부근
- 면 적 : 9,003.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나) 조성방향

- 설계개요
 - 환경문화센터와 철새 은신처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
 -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 설계와 공간 배치
 - 자연 소재를 활용한 시설 도입으로 조화로운 경관 연출
- 주요도입시설
 - 진입광장, 푸른누리원, 휴게쉼터, 데크관찰로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9,003.0			
시설면적	3,601.2	3,534.60	39.26	법규가능범위 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1,800.6	715.95	7.95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9,098.00	9,003.00	100.00	100.00	
도로 및 광장	1,823.04	1,213.80	20.04	13.48	
조경시설	-	-	-	-	
휴양시설	-	280.93	-	3.12	
유흥시설	-	-	-	-	
운동시설	-	-	-	-	
교양시설	-	912.52	-	10.14	
편의시설	325.06	1,127.35	3.57	12.52	
공원관리시설	-	-	-	-	
녹지 및 기타	6,949.90	5,468.40	76.39	60.74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9,089.00	9,003.00	325.06	715.95	539.32	808.91	
도로 및 광장	소계			1,823.04	1,213.80						
	-	도로		747.55	1,101.65						
	가	광장		1,075.49	112.15						
조경 시설	소계			-							
	나-1	숫대	8	-	-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휴양 시설	소계			-	280.93					
	다-1	휴게쉼터-1	1	-	104.20					
	다-2	휴게쉼터-2	1	-	51.29					
	다-3	휴게쉼터-3	1	-	125.44					
	다-4	막구조파고라	1	-	-					
	다-5	야외탁자	3	-	-					
	다-6	벤치	3	-	-					
교양 시설	소계			325.06						
	라-1	환경문화센터	1	-	912.52	-	715.95	-	808.91	지상2층
편익 시설	소계			325.06						
	마-1	주차장	1		1,127.35					
	-	탐조관	1	325.06	-	325.06	-	539.32	-	명칭변경
공원 관리 시설	소계			-						
	바-1	웬스	1	-	-					
	바-2	종합안내판	1	-	-					
	바-3	시설안내판	8	-	-					
	바-4	장애인주차표지판	1	-	-					
녹지 및 기타	소계			6,949.90	5,468.40					
	-	녹지		6,949.90	5,468.40					

□ 84호 수변공원 (변경)

가) 개 요

- 공원명 : 84호 수변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거북섬 앞밭 부분
- 면 적 : 1,474.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5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87호)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MTV 조성사업 3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나) 조성방향

- 설계개요
 - 거북섬의 앞밭에 휴게 및 전망공간 조성
 - 거북섬의 상업시설과 연계된 공간으로 조성
 - 막구조파고라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 주요도입시설
 - 막구조파고라, 휴게시설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474.0			
시설면적	589.2	581.9	39.5	법규가능범위 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294.6	-	-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473.0	1,474.0	100.0	100.0	
도로 및 광장	320.3	401.7	21.8	27.3	
휴양시설	239.1	180.2	16.2	12.2	
녹지 및 기타	913.6	892.1	62.0	60.5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7	1,473.0	1,474.0	-	-	-	-	
도로 및 광장	소계		-	320.3	401.7	-	-	-	-	
		도로	-	320.3	401.7	-	-	-	-	
조경 시설	소계		10	-	-	-	-	-	-	
	나-1	경관석농기	10	-	-	-	-	-	-	
휴양 시설	소계		7	239.1	180.2	-	-	-	-	
	-	목재데크	-	239.1	-	-	-	-	-	삭제
	다-2	등의자	6	-	-	-	-	-	-	
	-	앉음벽	-	-	-	-	-	-	-	삭제
	다-4	휴게쉼터	-	-	180.2		-		-	
	다-5	막구조파고라	1	-	-		-		-	
기타 시설	소계		-	913.6	892.1	-	-	-	-	
	-	녹지	-	913.6	892.1	-	-	-	-	

□ 81호 도시농업공원 (변경)

가) 개 요

- 공원명 : 81호 도시농업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중로1-85번(시점) 주변에 입지
- 면 적 : 10,002.4㎡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나) 조성방향

- 설계개요
 - 철새서식처 인근 완충녹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식생 중심의 자연스러운 경관형성
 - 주변 이용객을 위한 게이트볼장과 텃밭을 조성
 - 수변 조망이 가능한 소규모 다목적 야외무대 도입
- 주요도입시설
 - 연결형 파고라, 경관벤치, 산책로, 앉음벽, 진입광장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0,002.4			
시설면적	3,665.92	3,654.6	36.54%	법규가능범위 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1,832.96	-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 도시농업시설(텃밭) 면적 : 837.6㎡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0,007.00	10,002.40	100.00	100.00	
도로 및 광장	2,056.11	1,888.70	20.55	18.88	
조경시설	35.10	59.10	0.35	8.96	
휴양시설	242.63	170.50	2.42	1.70	
유희시설	-	-	-	-	
운동시설	954.58	1,251.60	9.54	12.51	
편익시설	106.68	284.70	1.07	2.85	
녹지 및 기타	6,611.90	6,347.8	66.07	55.09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0,007.00	10,002.40						
도로 및 광장	소계				2,056.11	1,888.70					
	-	도로			1,452.69	1,420.10					
		광장			50.61	468.60					
	가-1	진입광장			166.23	51.70					
	가-2	휴게광장A			328.70	108.00					
	가-4	휴게광장B			57.88	308.90					
조경 시설	소계				35.10	59.10					
	나-1	조형가벽E		1	-	37.10					
	나-2	디딤돌A		-	35.10	-					
	나-3	앉음벽		1	-	22.0					
휴양 시설	소계				242.63	170.50					
	다-1	쉼터		4	242.63	-					
	다-2	파고라B		5	-	80.00					
	다-3	팔각정자		3	-	74.00					
	다-4	평의자B		1식	-	-					
	다-5	등의자B		1식	-	-					
	다-5	야외테이블		4	-	16.60					
운 동 시설	소계				954.58	1,251.60					
	마-1	다목적골대		1식	-	-					
	마-2	다목적포스트		1식	-	-					
	마-3	다목적코트		1	613.01	740.80					
	마-4	게이트볼장		1	341.57	510.80					
	마-5	메쉬웬스B		88	-	-					
	마-6	메쉬웬스 출입문B		2	-	-					
편익 시설	소계				106.68	284.70					
	사-1	세족장		1식	106.68	-					
	사-1	음수전		1식	-	-					
	사-3	주차장		1		284.70					
녹지 및 기타	소계				6,611.90	6,347.80					
	-	녹지			6,611.90	5,510.20					
	-	도시농업시설			-	837.60					

□ 64호 어린이공원 (변경)

가) 개 요

- 공원명 : 64호 어린이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주거용지 주변에 입지
- 면 적 : 2,266.1㎡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나) 조성방향

- 설계개요
 - 숲속마을을 주제로 한 조합놀이대 배치로 랜드마크 요소 확보
 - 자유로운 어린이놀이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 확보
- 주요도입시설
 - 조합놀이대, 모래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음수전, 파고라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2,266.1			
시설면적	1,356.7	1,355.9	59.83%	법규가능범위 내(법정60%이하)
건 폐 율	-	-	-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827.00	2,266.10	100.0	100.0	
도로 및 광장	165.63	641.60	9.07	28.31	
휴양시설	18.60	35.70	1.02	-	
유흥시설	823.67	649.80	45.08	1.58	
편익시설	13.09	-	0.72	28.67	
운동시설	44.01	28.80	2.41	1.27	
녹지 및 기타	762.00	910.20	41.71	40.17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827.00	2,266.10						
도로 및 광장	소계			165.63	641.6						
	-	도로		165.63	236.10						
	가	진입광장		-	405.50						
	기-1	진입광장		-	72.80						
	기-2	진입광장		-	332.70						
휴양 시설	소계			18.60	35.70						
	나-1	파고라B	2	16.0	32.00						
	나-2	평의자B	1식	-	-						
	나-3	등의자B	1식	-	-						
	나-4	앉음벽(화강석)	9.3	2.6	3.70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유희 시설	소계			823.67	649.80					
	다-1	고무칩놀이터	1		492.70					
	다-2	모래놀이터A	1		128.70					
	다-3	모래놀이터B	1		28.40					
	다-4	조합놀이대 (숲속마을)	1	764.90	-					
	다-5	2인용시소(구름)	1	-	-					
	다-6	그네(구름)	1	-	-					
	다-7	흔들놀이(꽃)	1	-	-					
	다-8	흔들놀이(나비)	1		-					
	다-9	모래굴삭기	3	58.77	-					
	다-10	모래놀이집	1	-	-					
	다-11	모래놀이탁자A	1		-					
	다-12	다람쥐통(토끼)	1		-					
운동 시설	소계			44.01	28.80					
	마-1	체력단력장	-	44.01	28.80					
	마-2	쇼울더	1	-	-					
	마-3	스텝퍼	1	-	-					
	마-4	체스트프레스	-	-	-					
편익 시설	소계			13.09	-					
	라-1	공원명판(기둥형)	1	-	-					
	라-2	안전수칙판	1	-	-					
	라-3	음수전	1	-	-					
녹지 및 기타	소계			762.00	910.20					
	-	녹지		762.00	910.20					

□ 66호 어린이공원 (변경)

가) 개 요

- 공원명 : 66호 어린이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주거용지 주변에 입지
- 면 적 : 1,907.6m²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나) 조성방향

- 설계개요
 - 주변공원 텃밭과 연계하는 테마형 놀이시설 배치
 - 자연과 더불어지는 놀이를 통한 교육효과 기대
- 주요도입시설
 - 조합놀이대, 모래놀이터, 체력단련시설, 파고라, 음수전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m ²)	적용면적(m ²)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1,907.6			
시설면적	1,144.6	1,141.6	59.84%	법규가능범위 내(법정60%이하)
건 폐 율	-	-	-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m ²)		구 성 비 (%)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806.00	1,907.60	100.00	100.0	
도로 및 광장	522.26	720.70	28.93	37.78	
휴양시설	16.00	28.70	0.89	1.50	
유흥시설	309.92	363.40	17.16	19.05	
편익시설	10.09	-	0.56	-	
운동시설	58.63	28.80	3.25	1.51	
녹지 및 기타	888.80	766.00	49.21	40.16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806.00	1,907.60						
도로 및 광장	소계			522.26	720.70					
		도로		414.34	422.00					
		광장		108.22	298.70					
	가-1	진입광장A		108.22	154.90					
	가-2	진입광장B		-	143.80					
휴양 시설	소계			16.00	28.70					
	나-1	파고라	1	16.00	-					
	나-2	연결형파고라	1	-	21.60					
	나-3	평의자	7	-	-					
	나-4	플랜더(점토)	14.2	-	7.10					
유희 시설	소계			309.92	363.40					
	다-1	고무칩놀이터	1	-	289.50					
	다-2	모래놀이터	1	-	73.90					
	다-3	조합놀이대	1	262.00	-					
	다-4	그네(체리)								
	다-5	흔들놀이(양파)								
	다-6	흔들놀이(오이)								
	다-7	흔들놀이(토마토)								
	다-8	모래놀이집	2	47.92	-					
	다-9	모래놀이탁자A	1	-	-					
	다-10	다람쥐통(말)	1	-	-					
운동 시설	소계			58.63	28.80					
	라-1	체력단련장	1	-	28.80					
	라-2	레그익스텐션	1	-	-					
	라-3	쇼울더	1	-	-					
	라-4	스텝퍼	1	-	-					
	라-5	체스트프레스	1	-	-					
	라-6	트위스트	1	-	-					
편익 시설	소계			10.39	-					
	마-1	음수전	1	-	-					
	마-2	공원명판(기둥형)	1	-	-					
	마-3	안전수칙판	1	-	-					
녹지 및 기타	소계			888.80	766.00					
	-	녹지		888.80	766.00					

□ 73호 어린이공원 (변경)

가) 개 요

- 공원명 : 73호 어린이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주거용지 주변에 입지
- 면 적 : 2,341.9㎡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나) 조성방향

- 설계개요
 - 바다와 가장 인접한 장소로 푸른바다를 연상시키는 뱃놀이시설 도입
 - 바다속 요소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바다놀이시설 도입
- 주요도입시설
 - 조합놀이대, 모래놀이터, 체력단련시설, 파고라, 음수전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2,341.9			
시설면적	1,405.1	1,404.00	59.95%	법규가능범위 내(법정60%이하)
건 폐 율	-	-	-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2,077.00	2,341.9	100.0	100.0	
도로 및 광장	605.92	736.00	29.2	31.1	
휴양시설	36.67	50.20	1.8	2.0	
유흥시설	336.77	617.80	16.2	26.6	
편익시설	25.24	-	1.2	0.3	
녹지 및 기타	1,072.40	937.90	51.6	40.0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2,077.00	2,341.90						
도로 및 광장	소계		605.92	736.00						
		도로	291.70	41.10						
		광장	-	694.90						
	가-1	진입광장A	226.32	213.50						
	가-2	진입광장B	87.90	152.40						
	가-3	진입광장C	-	329.00						
	소계		36.67	50.20						
휴양 시설	나-1	연결형파고라	1	36.67	50.20					
	나-2	등의자	3	-	-					
	나-3	평의자	6	-	-					
	나-4	앉음벽	9	-	-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유희 시설	소계			335.56	617.80					
	다-1	고무칩놀이터	1	-	501.40					
	다-2	모래놀이터	1	-	116.40					
	다-3	조합놀이대(배)	1	305.37	-					
	다-4	그네(물방울)	1	-	-					
	다-5	흔들놀이(물고기)	1	-	-					
	다-6	흔들놀이(해마)	1	-	-					
	다-7	흔들놀이(물결)	1	-	-					
	다-8	모래굴삭기	2	31.40	-					
	다-9	모래놀이집	1	-	-					
	다-10	모래놀이탁자A	1	-	-					
	다-11	모래놀이탁자B	1	-	-					
	다-12	회전놀이(땃)	1	-	-					
	다-13	유아놀이대	1	-	-					
	다-14	다람쥐통(물개)	1	-	-					
편익 시설	소계			25.24	-					
	라-1	공원명판(기둥형)	1		-					
	라-2	안전수칙판	1	-	-					
	라-3	음수전	1	-	-					
녹지 및 기타	소계			1,073.80	937.90					
	-	녹지		1,073.80	937.90					

<붙임 1>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 - 안산시

□ 83호 수변공원 (변경)

가) 개 요

- 공원명 : 83호 수변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75호 근린공원 남측에 위치
- 면 적 : 64,373.0m²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나) 조성방향

- 설계개요
 - 갈대초지를 통한 생태공간 조성, 일부 산책로 및 휴게공간 도입
- 주요도입시설
 - 주차장, 화장실, 휴게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m ²)	적용면적(m ²)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64,373.0			
시설면적	25,749.2	5,017.0	7.8	법규가능범위 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12,974.6	71.1	0.1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64,373.0	64,373.0			
도로 및 광장	4,239.2	4,259.9			
조경시설	-	-			
휴양시설	131.1	156.1			
유흥시설	-	-			
운동시설	-	-			
교양시설	-	-			
편의시설	435.9	601.0			
녹지 및 기타	59,566.8	59,356.0	92.5%	92.2%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6	4,806.2	5,017.0		71.1		71.1	
도로 및 광장	소계		-	4,239.2	4,259.9					
	-	도로		4,239.2	4,259.9					
휴양 시설	소계		12	131.1	156.1					
	1-1	휴게쉼터1		131.1	131.1					
	1-2	휴게쉼터2			25.0					
	1-3	파고라	3							
	1-4	평의자	9							파고라 하부
편의 시설	소계		3	435.9	601.0		71.1		71.1	
	2-1	주차장		435.9	441.8					
	2-2	화장실			159.2		71.1		71.1	
	2-2	종합안내판	1							
	2-3	방향안내판	2							
관리 시설	소계		1							
	3-1	바리케이트	1							
녹지 및 기타	소계			59,566.8	59,356.0					
	-	녹지		59,566.8	59,356.0					92.2%

○ 도로계획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1,081.6	1,095.4	4,239.2	4,259.9				
신설	산책로	3	1	6.0	521.7	521.7	3,130.4	3,130.4	진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신설	산책로	3	2	2.0	458.5	458.5	917.0	917.0	진입로	부지외곽	부지외곽	
신설	산책로	3	3	2.0	16.2	16.2	32.3	32.3	진입로	부지외곽	산책로3-2	
신설	산책로	3	4	2.0	12.4	12.4	24.7	24.7	연결로	부지외곽	산책로3-2	
신설	산책로	3	5	2.0	17.9	17.9	35.8	35.8	진입로	산책로3-2	산책로3-1	
신설	산책로	3	6	1.5	21.7	35.5	32.6	53.3	진입로	주차장	산책로3-1	
신설	산책로	3	7	2.0	33.2	33.2	66.4	66.4	연결로	부지외곽	산책로3-1	

□ 51호 수변공원 (변경)

가) 개 요

- 공원명 : 51호 수변공원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제12하천변 입지
- 면 적 : 6,655.0㎡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 최초결정 : 2001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변경 고시
 - 최종결정 : 2012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3호)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나) 조성방향

- 설계개요
 - 적극적 이용구간과 소극적 이용구간으로 이원화
 - 간선수로와 연계한 초지경관 연출
 - 완충녹지 및 인근하천(제4간선수로)와 연결
- 주요도입시설
 - 가벽 및 잔디마당, 주차장 12대, 화장실 30평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6,655.00			
시설면적	2,662.00	2,163.04	32.5	법규가능범위 내(법정40%이하)
건 폐 율	1,331.00	100.53	1.51	법규가능범위 내(법정20%이하)

라) 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31,365.00	6,655.00	100.0	100.0	
도로 및 광장	5,767.31	1,593.35	18.39	23.94	
조경시설	124.10	30.14	0.40	0.45	
휴양시설	14.10	8.52	0.05	0.13	
운동시설	1,351.00	-	4.31	-	
편익시설	1,271.43	531.03	4.05	8.0	
녹지 및 기타	22,837.06	4,491.96	72.8	67.48	

○ 시설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수 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31,365.00	6,655.00					
도로 및 광장	소계			5,767.31	1,593.35						
	-	도로		4,231.00	1,292.00						
	가-1	광장1		170.06	72.59						
	가-2	광장2		130.51	150.51						
	가-3	광장3		78.25	78.25						
	가-4	광장4		254.00	-						
	가-5	광장5		320.40	-						
	가-6	광장6		583.09	-						
조경 시설	소계			124.10	30.14						
	나-1	바닥분수	1식	20.00	-						
	나-2	환경장치물	1식	27.34	27.34						
	나-3	물결가벽	1식	70.76	-						
	나-4	입구가벽	1식	6.00	-						
	나-5	해바라기원 가벽	1개소	-	2.80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수 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휴양 시설	소계			14.10	8.52					
	다-1	사각정자	3	-	-					
	다-2	파고라	1	-	-					
	다-3	앉음벽	21.3m	14.10	8.52					
	다-4	등의자	4개소	-	-					
	다-5	평의자	13개소	-	-					
관리 시설	소계			-	-					
	라-1	웬스	148경간	-	-					
	라-2	통과높이제한시설	1개소	-	-					
운 동 시설	소계			1,351.00	-					
	마-1	농구장	2	511.40	-					
	마-2	체력단련장	1	839.60	-					
편의 시설	소계			1,271.43	531.03					
	사-1	주차장	1	430.50	430.50					
	사-2	화장실	1	100.53	100.53	100.53	100.53	100.53	100.53	
	사-3	주차장	1	740.40	-					
녹지및 기타	소계			22,837.06	4,491.96					
	-	녹지		22,837.06	4,491.96					

○ 도로계획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1,447.00	324.00	3,889.00	1,292.00				
신설	산책로	3	1	3.0	14.00	-	45.00	-	진입로	부지경계	광 장1	
신설	산책로	3	2	4.0	108.00	10.00	38.00	40.00	연결로	산책로3-4	산책로3-2	
신설	산책로	3	3	2.5	27.00	27	67.00	68.00	연결로	부지경계	산책로3-7	
신설	산책로	3	4	2.5	14.00	20.00	36.00	50.00	연결로	산책로3-3	산책로3-7	
신설	산책로	3	5	2.5	13.00	18.00	72.00	45.00	진입로	부지경계	광 장3	
신설	산책로	3	6	2.5	35.00	36.00	116.00	90.00	연결로	부지경계	광장3	
신설	산책로	3	7	8.0	34.00	36.00	206.00	288.00	연결로	산책로3-12	부지경계	
신설	산책로	3	8	5.0	54.00	90.00	261.00	450.00	연결로	산책로3-7	광 장3	
신설	산책로	3	9	1.5	19.00	-	95.00	-	연결로	산책로3-12	광 장2	
신설	산책로	3	10	1.5	16.00	-	49.00	-	연결로	산책로3-12	광 장2	
신설	산책로	3	11	3.0	14.00	24.00	56.00	72.0	연결로	산책로3-12	산책로3-8	
신설	산책로	3	12	3.0	77.00	63.00	116.00	189.00	연결로	휴양시설	편익시설1	
신설	산책로	3	13	3.6	283.00	-	1,023.00	-	연결로	광 장4	광 장5	
신설	산책로	3	14	3	146.00	-	455.00	-	연결로	부지경계	산책로3-13	
신설	산책로	3	15	2~4.5	184.00	-	549.00	-	연결로	산책로3-14	산책로3-13	
신설	산책로	3	16	1.5	137.00	-	206.00	-	연결로	산책로3-15	산책로3-15	
신설	산책로	3	17	1.5	54.00	-	86.00	-	연결로	산책로3-16	산책로3-18	
신설	산책로	3	18	1.5	47.00	-	76.00	-	진입로	부지경계	광 장5	
신설	산책로	3	19	1.5	41.00	-	74.00	-	연결로	운동시설1	산책로3-13	
신설	산책로	3	20	3~4.5	18.00	-	57.00	-	진입로	부지경계	광 장4	
신설	산책로	3	21	2	18.00	-	35.00	-	연결로	편익시설2	산책로3-13	
신설	산책로	3	22	2	40.00	-	67.00	-	연결로	산책로3-14	광 장5	
신설	산책로	3	23	2	27.00	-	48.00	-	연결로	산책로3-14	광 장5	
신설	산책로	3	24	2	15.00	-	31.00	-	연결로	산책로3-13	산책로3-14	
신설	산책로	3	25	2	8.00	-	15.00	-	연결로	산책로3-13	산책로3-14	
신설	산책로	3	26	3	4.00	-	10.00	-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3-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선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1,393㎡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산35-1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산35-11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0.1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로구역 일부 변경함. 토지 매각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산35-11	산35-11	임	10,763	9,370	국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10월(1개월)

나.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4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3호선	노선명	고성~구미선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및 범위	○ 변경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 시점 :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지내 - 종점 :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지내 (0.1km)				
접도구역 변경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비 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 영덕선	예천군 유천면 가리	340㎡	예천 유천 가리 446-5	예천 유천 가리 446-2	예천 유천 가리 445-4	0.04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잔여부지 미사용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10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6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선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 시점 : 경북 예천군 유천면 가리 지내 - 종점 : 경북 예천군 유천면 가리 지내 (0.040 km)				
접도구역 변경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 영덕선	예천군 유천면 가리	340㎡	예천 유천 가리 446-5	예천 유천 가리 446-2	예천 유천 가리 445-4	0.040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630-005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강릉선	양산시 동면 가산리	-	양산시 동면 가산리	양산시 동면 가산리	양산시 동면 가산리	0.0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 내 도로가 아니 부지 제척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해제 할 토지의 세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83-1	답	38	-	김성태 김현수 김한수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83 양산시 동면 금오7길 45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1016번길 10				해제
2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83	대	35	-	김성태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83	근저 당권	양산시 북안록1길 10-19	양산 농협	해제
3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83-6	답	84	-	김성태 김현수 김한수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83 양산시 동면 금오7길 45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1016번길 10				해제
4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85-1	답	16	-	국토교통부					해제
합 계				173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2)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1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선	양산시 동면 가산리	-	양산시 동면 가산리	양산시 동면 가산리	양산시 동면 가산리	0.06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2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족구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7-280번지

나. 면적 : 2,00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22. ~ 2022. 10.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6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서천군수(문화관광과장)
 - 나. 주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 점용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 나. 개요 : 신성리 갈대밭 꾸미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8-18번지 등 63필지
 - 나. 면적 : 75,676m²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가. 2017. 09. 11. ~ 2022. 09.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인천-강릉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산556-5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82-19답	강원도 횡성군	11.1	
변경								1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3. 사업시행기간 : 2014. 6. 11 ~ 2018. 02. 28.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33-769-5803)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 사업 지역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일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구 분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2-11	도	145	145	공	횡성군				
2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2-15	도	57	57	공	횡성군				
3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2-16	도	37	37	공	횡성군				
4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2-17	도	245	245	공	횡성군				
5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2-18	도	149	149	공	횡성군				
6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3-25	도	140	140	공	횡성군				
7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3-26	도	100	100	공	횡성군				
8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3-27	도	20	20	공	횡성군				
9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3-28	도	206	206	공	횡성군				
10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1-2	도	231.7	231.7	공	횡성군				
11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99-9	도	254	254	공	횡성군				
12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99-10	도	261	261	공	횡성군				
13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99-11	도	2	2	공	횡성군				
14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99-19	도	61	61	공	횡성군				
15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15-14	도	1027	1027	공	횡성군				
16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15-20	도	12	12	공	횡성군				
17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15-21	도	68	68	공	횡성군				
18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33-13	대	36	36	공	한국철도시설공단				
19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33-14	대	516	516	공	한국철도시설공단				
20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42-2	도	595	595	공	횡성군				
21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03-21	도	5	5	공	횡성군				
22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03-28	도	510	510	공	횡성군				
23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05-5	도	159	159	공	횡성군				
24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05-8	도	1,742	1,742	공	횡성군				
25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3-18	도	97	97	공	횡성군				
26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64-4	도	8	8	공	횡성군				
27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64-5	도	71	71	공	횡성군				
28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620	도	1,224.8	1,224.8	공	횡성군				
29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00-1	도	3	3	사	심봉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구 분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30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03-23	전	83	83	사	장영숙				
31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03-7	도	76	76	사	한상국				
32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06-1	도	63	63	사	김양대				
33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7-13	전	138	138	사	이한준				
34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7-68	전	106	106	사	나은숙				
35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17-69	전	39	39	사	나은숙				
36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2-2	도	152	152	사	성낙중				
37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519-2	도	523	523	공	횡성군				
38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578-4	도	385	385	공	횡성군				
39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580-3	도	50	50	공	횡성군				
40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583-13	도	244	244	공	횡성군				
41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583-14	전	16	16	공	횡성군				
42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584-1	도	270	270	공	횡성군				
43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583-15	잡	71	71	사	장성원				
44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588-5	잡	2	2	사	장성원				
45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588-6	잡	46	46	사	장성원				
46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659-1	도	60	60	사	이용률				
47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659-10	답	1	1	사	최미희				
48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659-11	답	26	26	사	최미희				
49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	659-9	대	63	63	사	최미희				
50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57-2	도	448	448	공	횡성군				
51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58-2	도	207	207	공	횡성군				
52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59-8	도	96	96	공	횡성군				
53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59-9	도	8	8	공	횡성군				
54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62-12	천	24	24	공	횡성군				
55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90-2	도	26	26	공	횡성군				
56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427-2	도	304	304	공	횡성군				
57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427-6	도	28	28	공	횡성군				
58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512-3	도	7	7	공	횡성군				
59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512-5	도	3	3	공	횡성군				
60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530-4	도	66	66	공	횡성군				
61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531-2	도	66	66	공	횡성군				
62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536-2	도	89	89	공	횡성군				
63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537-2	도	112	112	공	횡성군				
64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538-2	도	112	112	공	횡성군				
65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539-2	도	18	18	공	횡성군				
66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57-26	도	119	119	공	횡성군				
67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57-27	도	775	775	공	횡성군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구 분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68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38-9	전	851	851	사	윤규섭				
69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38-10	전	64	64	사	윤규섭				
70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59-3	도	219	219	사	윤인섭				
71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59-5	도	40	40	사	윤인섭				
72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76-2	전	538	538	사	윤규섭				
73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377-1	전	218	218	사	윤규섭				
74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415-1	전	342	342	사	추만봉				
75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418-6	답	463	463	사	표봉만				
76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531-3	답	266	266	사	추죽엽				
77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57-31	답	241	241	사	추죽엽				
78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57-35	답	1,350	1,350	사	김병호				
79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57-36	답	913	913	사	김병호				
80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57-37	답	706	706	사	한장순				
81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57-38	답	1,710	1,710	사	한장순				
82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57-39	답	1,548	1,548	사	한장순				
83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57-43	답	358	358	사	윤규섭				
84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657-45	답	781	781	사	윤규섭				
85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산 281-3	임	2,680	2,680	사	이기환				
86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산 281-4	임	3,336	3,336	사	이기환				
87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379-2	도	99	99	공	횡성군				
88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395-1	도	1	1	공	화동리				
89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395-9	도	6	6	공	화동리				
90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02-2	도	9	9	공	횡성군				
91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02-7	도	42	42	공	횡성군				
92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02-9	도	484	484	공	횡성군				
93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02-11	도	7	7	공	횡성군				
94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98-2	도	337	337	공	횡성군				
95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98-4	전	11	11	공	횡성군				
96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98-5	전	70	70	공	횡성군				
97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98-8	도	480	480	공	횡성군				
98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502-1	도	48	48	공	화동리				
99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502-3	도	28	28	공	화동리				
100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7-40	도	238	238	공	횡성군				
101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28-56	도	45	45	공	횡성군				
102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488-3	전	125	125	사	신태순				
103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산 139-6	임	331	331	사	김기열				
104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산 139-7	임	371	371	사	최익섭				
105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산 211-3	도	136	136	사	안봉찬				
106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산 211-4	도	526	526	사	안봉찬				

*당초 도로구역 결정 고시 누락 공유지 67필지, 사유지 39필지, 총 106필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구 분	소 유 자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6 (336-6)	도	26	23	사	박해봉				추가
2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336-17 (336-7)	도	59	6	사	황선병				추가
3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산 306-2 (산 306)	임	14,569	134	사	이봉근외 11인				추가
4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산 104-7 (산 104)	임	83,127	416	사	윤재숙외 11인				추가
5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산 103-5 (산 103-2)	임	28,903	5	사	심상돈				추가
6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03-8 (603-3)	임	464	13	사	서영택				추가

* 지적확정측량 결과 추가 편입토지 6필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당초편입 면적(㎡)	변경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구 분	소 유 자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횡성군 둔내면 마암리	464-8 (464-7)	전	435	410	국	국토부				변경
2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585-8 (585-5)	대	21	14	국	국토부				변경
3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588-16 (588-14)	대	131	104	국	국토부				변경

* 지장물 도로구역 침범으로 도로구역 변경 3필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산556-5도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82-19답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 위치	○ 신설노선 설치로 접도구역 해제구간은 없음		
접도구역 변경사유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1310번지 외 36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이설
4. 점용면적 : 영구 63.567m²
5. 점용개요 : 「고막원천 다시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지장전주 이설
- 한전주 95본 이설
6. 점용기간 : 2017.10.18. ~ 2022.10.17. (5년)
(공사기간) 2017.10.18. ~ 2018.10.17. (1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나주시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1016-51번지 외 1필지(1013-14번지)
3. 점용목적 : 차량한계틀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24m²
5. 점용개요 : 철도교량 보호용 차량통행제한 시설물 설치
- 차량한계틀(B=7.0m, H=4.4m) 2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2012.5.15. ~ 2017.5.14. (5년)
(연장) 2017.5.15. ~ 2022.5.14. (5년)
7. 피허가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오량동 42-1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050m²
5. 점용개요 : 오량배수장 배수문(200HP×1,200mm×4련)

6. 점용기간 : (당초) 2011.8.22. ~ 2016.8.21. (5년)

(연장) 2016.8.22. ~ 2021.8.21.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44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800㎡
5. 점용개요 : 신가배수장 토출관(D1,000mm×4련, L=58.4m), 토출조 1식
6. 점용기간 : (당초) 2012.7.26. ~ 2017.7.25. (5년)
(연장) 2017.7.26. ~ 2022.7.25.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960-30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772㎡
5. 점용개요 : 송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문 2개소
- 안곡1배수문(2.0×2.0×2련), 안곡2배수문(3.0×2.0×3련)
6. 점용기간 : (당초) 2012.4.6. ~ 2017.4.5. (5년)
(연장) 2017.4.6. ~ 2022.4.5.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170-1번지 외 33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2,754㎡
5. 점용개요 : 배수장 3개소(문동, 동당1, 동당2) 토출수로, 문동배수문 1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2012.10.15. ~ 2017.10.14. (5년)
(연장) 2017.10.15. ~ 2022.10.14.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60-3번지 외 1필지(덕진동 616-6번지)
3. 점용목적 : 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44㎡
5. 점용개요 : 통신케이블 안내표지판 2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1995.7.21. ~ 2010.6.30.
(1차 연장) 2010.7.1. ~ 2015.6.30. (5년)
(2차 연장) 2015.7.1. ~ 2020.6.30. (5년)
7. 피허가자 : (주)케이티 전주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위치 이탈)되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비고
김녕기상 파고부표	N 33° 34' 54.0" E 126° 45' 49.0"	-	-	-	황원형 0.7m	2017. 10.18.	소유자 : 제주지방기상청 기상호전 시 즉시 복구예정
용담기상 파고부표	N 33° 31' 31.1" E 126° 29' 38.2"	-	-	-	황원형 0.7m	2017. 10.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기능정지 기간	비고
감천항에이치아이 조선B호등부표	N 35-04-47.9, E128-59-38.5	Fl(4)Y8s	3	황 망대형	2011. 7. 21.	2017. 10. 18. ~10. 31.	기능정지 (소등)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m ³ /일)	하천의 명칭(등급)
1	산성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292-3번지 일원	7,200	보청천(지방하천)
2	천남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566-1번지 외 3필지	10,800	보청천(지방하천)
3	천남1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712번지 외 1필지	7,800	오덕천(지방하천)
4	천남2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천남리 897번지 외 1필지	8,500	오덕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0.20.~2019.12.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2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산성지구 및 천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번호	공사명칭	위치	공사개요
1	산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취수설비부분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292-3번지 일원	- 양 수 장: 1동 - 흡입수조: B4.0mxL4.0mxH8.4m - 집수암거: D1,500mmxL101m - 송수관로: D250mmxL720m - 펌프: 22kWx150mm 2대 - 유량계: 1식
2	천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취수설비부분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566-1번지 외 3필지	- 양 수 장: 1동 - 흡입수조: B5.0xH5.0xH10.5m - 집수암거: D1,500mmxL100m - 송수관로: D250mmxL852m - 펌프: 55kWx250mm 2대 - 유량계: 1식
3	천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취수설비부분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712번지 외 1필지	- 양 수 장: 1동 - 집수암거: D1,500mmxL83m - 송수관로: D250mmxL443m - 펌프: 11kWx125mm 1대
4	천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취수설비부분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천남리 897번지 외 1필지	- 양 수 장: 1동 - 집수암거: D1,500mmxL71m - 송수관로: D250mmxL655m - 펌프: 11kWx125mm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10.20.~2019.12.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5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강진군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사용 목적	허가량 (m³/일)	면적 (m²)	허가기간
덕천양수장 (제83-72호)	탐진강 (국가)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365-5	농업	3,800	72	'15.10.27.~'18.12.31.
어상보 (제83-74호)	"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851	농업	3,700	4,750	'15.10.27.~'20.10.26.

- 장흥군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사용 목적	허가량 (m³/일)	면적 (m²)	사업기간
신야보 (제83-109호)	탐진강 (국가)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394	농업	2,794	2,348	'17.06.17.~'22.06.16.

-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사용 목적	허가량 (m³/일)	면적 (m²)	허가기간
석대양수장 (제83-120호)	탐진강 (국가)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21-6	농업	26,600	9,944	'17.06.25.~'22.06.24.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26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 산118-	임야	국 (산림청)	170,876	154,222	295	농업·임업관련 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0838	알루미늄관의 원둘레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폐지	KSBISO1027	비파괴 검사용 방사선 투과 사진 상질계 — 원리 및 식별
폐지	KSDISO9764	압력용 전기저항 및 유도 용접 강관 — 길이방향 결함 탐지용 용접 이음매 초음파 탐상 검사
폐지	KSDISO9765	압력용 서버머지드 아크 용접 강관 — 길이 방향 및 나비 방향 결함 탐지용 용접 이음매 초음파 탐상 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KSB0838 : 타 표준(KSD0242, 알루미늄 용접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 KSBISO1027 : 타 표준(KSBISO 19232-1, KSBISO 19232-2, KSBISO 19232-3)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 KSDISO9764, KSDISO9765 : 타 표준(KSBNEW20172104(임시 표준번호)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1부: 종과 횡 방향 불완전부 검출을 위한 용접 강관의 심 용접부에 대한 자동화된 초음파탐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0426-3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 — 제3부: 심해의 유정 시멘트 성형에 대한 시험
확인	KSBISO10426-4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 — 제4부: 대기압에서의 거품 시멘트 슬러리의 조제 및 시험
확인	KSBISO10424-1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제1부: 회전 천공 장비에 대한 사양
확인	KSB6943	LNG 저장탱크 — 멤브레인식 내부탱크 규격
확인	KSBISO10426-2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 — 제2부: 유정 시멘트의 시험
확인	KSB6944	LNG 저장탱크 — 외부탱크 및 기초 규격
확인	KSBISO10426-5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 — 제5부: 대기압에서의 유정 시멘트 성형의 수축 및 팽창 측정
확인	KSB6942	LNG 저장탱크 — Ni강식 내부탱크 규격
확인	KSB6941	LNG 저장탱크 — 일반표준
확인	KSBISO10407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시추 스템 설계 및 작업 제한
확인	KSBISO10426-1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 — 제1부: 제품 규격
확인	KSBISO13535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인양 장비
확인	KSBISO13503-3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완성 유체 및 재료 — 제3부: 중염수 시험
확인	KSBISO17078-1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제1부: 사이드-포켓 맨드릴
확인	KSBISO13534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인양 장비의 점검, 유지보수, 수리 및 재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제정, 개정, 확인 후 5년도래 확인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8157	비료 및 토양 조절제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MISO815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MISO8157 : ISO 개정에 의한 KS 개정

부칙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388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행위로 인해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 수험생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부 경력경쟁채용에서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만으로 채용이 가능해 응시자의 능력검증에 미흡할 소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시험 방법 개선(안 제29조제1항, 제1의3호 신설, 제2항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경우 반드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나. 5년간 공무원 시험 자격정지 부정행위자 통합관리(안 제51조제4항, 제7항 신설)

-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소관 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가 발생할 경우 처분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
- 2) 안 제51조제4항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로부터 수집·처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공 가능함

다.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2, 제53조제1항 삭제)

-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15.12.22.)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2) 응시의사 철회기간 및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05/팩스 : 044) 201-821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5호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및 제50조의3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될 회계기준을 같은 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제정함으로써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자 등 공익법인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및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
-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복식부기 방식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나. 재무상태표

- 회계연도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함
- 순자산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기본순자산과 필요 없는 보통순자산 등으로 구분함

다. 운용성과표

-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 표시하고, 고유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함
-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 표시하고 고유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수익사업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함

라. 자산·부채의 평가

-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실로 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함

마. 주석

-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dy21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법무부공고제2017-267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찰청에서 생산한 기록 중 보존기간 영구(준영구)·30년 이상 중요 사건기록 및 재판서를 '18. 1. 개관 예정인 대검찰청(특수기록관)에서 통합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
-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검찰보존업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때 민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가 기재된 서식 추가

2. 주요내용

-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대검찰청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제3항 개정)
-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기록·내사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등 (안 제5조 제4항 신설)
- 별지 제5호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및 제7호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합계 2종의 민원 서식에 대하여, 외국어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를 병용토록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 - 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7-268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뇌물죄 적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53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신설, '16. 3.)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개시·종료 통보 및 관련 서식 개정 필요
-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검찰사건사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때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 기재된 서식 추가 필요
- ‘불기소이유 통지서’ 서식에 ‘고발인’ 표시가 없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처분결과통지 등) 제2항의 통보 근거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추가 (안 제60조)
 - 별지 ‘통보서식’에 통보 근거 규정 추가 및 관련 표현 수정
 - ※ 별지 제110호(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제110호의2(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제111호(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 제111호의2(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 서식 개정
- 별지 제16호 ‘출석요구서’ 등 5종의 민원 서식에 대하여, 외국어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를 병용토록 서식 신설(안 제12조, 제72조)
 - ※ 별지 제16호의2, 제16호의3(출석요구서), 제17호의2, 제17호의3(참고인출석요구서), 제114호의2, 제114호의3(부재기결정통지), 제128호의2, 제128호의3(불기소 이유 통지), 제129호의2, 제129호의3(사건처분결과증명서) 서식 신설
- ‘불기소이유 통지’는 ‘고발인’에게도 통지되나, 통보 서식에 ‘고소인’만 기재되어 있어 위 통지서 서식에 ‘고발인’ 추가 기재(안 제72조)
 - ※ 별지 제128호(불기소 이유 통지)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 - 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7-269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타법 개정(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문 내 명칭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제54조(환부의 공고)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54조 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 - 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01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의 국내 에너지원의 수급여건, 특성 등이 반영된 에너지원별 열량환산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열량환산기준 재산정(별표)

- 총 30종(석유류 17종, 석탄류 7종, 가스류 3종, 기타 3종)의 에너지원에 대해 5개년('11~'15) 동안의 발열량 측정·분석값을 근거로 에너지열량 재산정
- 정책변경, 이론값 대신 실제값 등을 반영해 발열량 수치 및 명칭 표기
 - 도시가스 LNG : 표준열량제 → 열량범위제('12.7)
 - 프로판, 부탄 : 프로판, 부탄의 이론 발열량에서 실제 생산제품(LPG1호, LPG3호) 발열량 측정·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k404@korea.kr
- 팩스 : 044-203-47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044-203-5119, 팩스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여 국가적 예우와 생계안정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안 제5조의2제6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2조제2항제7호 신설)

중앙자활센터에서 자활급여 중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eenjj@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6·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등과 관련하여 현행 신청 및 결과 통보 절차 외에 법 제18조의4 제4항에서 위임한 자산형성지원의 방법 등을 상세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등(안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금의 적립, 지급, 사전 예탁 등의 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eenjj@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6·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345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해지정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취소사유
다산생명과학원(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06번길 119	김영웅	제30호	기관 폐업으로 인한 지정 자진 반납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7-308호

2018년도 제62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수의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2018년도 제62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1. 응시자격

「수의사법」(법률 제14482호, 2016.12.27.)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수의사법」(법률 제5953호, 1999.3.31) 부칙 제4항 및 「수의사법」(법률 제7546호, 2005.5.31)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동 규정을 적용]로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시험 일정 등

가. 시험 시행 일시 : 2018. 1. 19.(금) 09:00 ~ 16:30

○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 08: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나. 시험 과목, 시험내용 및 문제수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제수
기초수의학	생체의 구조와 기능, 약리작용과 독성 작용, 생식과 성숙	100
예방수의학	질병과 병태생리, 병인론, 감염과 예방, 기생충질환, 면역, 공중위생	100
임상수의학	소화기/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순환/조혈기질환, 내분비/대사성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유방질환, 진찰/진단/검사, 중독, 치료와 합병증 등 임상진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130
수의법규·축산학	수의관련 법령 및 동물 윤리와 복지, 축산일반(사육·육종·환경·시설 등)	20

다.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수의학(100개)	09:00~10:40	100분
2	예방수의학(100개)	11:00~12:40	100분
점심시간	-	12:40~13:40	60분
3	임상수의학 1(75개)	13:40~14:55	75분
4	임상수의학 2(55개) 수의법규·축산학(20개)	15:15~16:30	75분

* 배점 : 문제당 1점

3. 시험 시행 장소

가. 귀인중학교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90번길 114(평촌동 914)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범계역 4번출구

→ (마을버스 7번, 시내버스 1번) 귀인중학교 앞 하차

→ (시내버스 3번) 현대홈타운아파트 하차, 도보 5분 거리

* 교통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17. 12. 4.(월) ~ 2017. 12. 8.(금)

나. 교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공고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에 게재되는 공고문 하단의 응시원서 서식을 A4 용지에 양면(좌우열기)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원서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기간 : 2017. 12. 4.(월) ~ 2017. 12. 8.(금) 09:00~18:00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행복동 1층(고객감동센터)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울곡동) ☎054-912-0356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수수료 : 2만원(응시원서 뒷면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 용)의 경우 응시원서에 부착하지 않고 제출

사. 제출 서류

1) 국내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원서(첨부 1.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2. 서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단, 졸업예정증명서에는 졸업예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외국대학 졸업자

○ 응시원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졸업증명서) 사본

○ 외국의 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법률제5953호 의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나, 위 규정 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전학년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관련외국대학인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48호, 2015.7.6) 제2조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위 고시 제2조제1호에 한함) 또는 졸업 대학이 증명하는 당해 대학의 교과과정 편성표, 교수요목, 해당 대학의 학칙 및 학교 안내서(위 고시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한함)

*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또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공증 생략 가능)

*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기준과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

6.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나. 발표 예정일 : 2018. 1. 26.(금) 이전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에 게시

다. 합격자는 수의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면허증 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사항

- 제출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기간 :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
 - 사진 1매(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가로3cm×세로4cm)이어야 하며, 모자 또는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거나 디지털 사진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7. 면허 교부 예정일

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

나. 단,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제출된 응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응시수수료(수입인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시간(08: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 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일 이내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마.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아.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및 과목코드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차.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하는 경우에는 답안지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단,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타. 시험문제와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파. 부정행위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하.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 거.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우리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054-912-0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첨부서식

- 가. 응시원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8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 1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4가	1	서울성북우체국 지원과	(02)3396-0112

2. 위탁대상 업무

-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 나. 우편물 접수
-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급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의 「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 가. 기 간 : 2017. 10. 24.(화) ~ 11. 7.(화) 09:00 ~ 18:00(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제외)
- 나. 교부장소
 - 해당 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 가. 기 간 : 2017. 11. 3.(금) ~ 11. 7.(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나. 장 소 :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 다. 신청서류
 -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7. 11. 14.(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지 방 자 치 단 체

●천안시고시제2017-272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천안시고시 2017-219호(2017.08.14.)로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 사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천 안 시 장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산업단지 (변경)

○ 위 치 : (A3블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9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면 적 : (A3블록) 기정 24,935.5㎡, 변경 24,936.7㎡, 증) 1.2㎡

- 산업단지 : 기정 1,623,714.1㎡, 변경 1,623,715.3㎡, 증) 1.2㎡

(기조성단지 : 827,073.2㎡, 신규조성단지 : 796,642.1㎡)

※ 변경사유 : A3블록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면적변경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변경)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25번지 일원

○ 면적 : 기정 196.2㎡, 변경 196.5㎡, 증) 0.3㎡

※ 변경사유 : A3블록 지구외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면적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구분		시행자 및 주소	비고
기조성단지	전체	• 시행자 : 천안시장	2001.08.02. 준공인가
	A1-2일원	• 시행자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농서동)	
	A3일원	• 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신규단지	1공구	• 시행자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2013.05.15. 준공인가
	2공구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12-1 203호	2015.01.13. 준공인가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

구분	시행자 및 주소	비고
기조성단지(A3블록)준용사업 (광로3-3, 제6호완충녹지 변경)	• 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구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고
기조성단지	전체(그 외)	• 1992년 ~ 2001년	• 공영개발	2001.08.02. 준공인가
	A1-2일원	• 2015.06 ~ 2016.05	• 민간개발(실수요자)	
	A3일원	• 2013년 ~ 2017년 12월	• 민간개발	
신규단지	1공구	• 2006년 ~ 2014년	• 제3섹터개발	2013.05.15. 준공인가
	2공구			2015.01.13. 준공인가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

구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고
기조성단지(A3블록)준용사업 (광로3-3, 제6호완충녹지 변경)	• 2017년 7월 ~ 2017년 12월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23,714.1	증) 1.2	1,623,715.3	100.0	
주거지역		411,850.6	-	411,850.6	25.4	주거용지, 이주주택지, 생활대책용지 지원시설용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시설, 종교시설, 주차장, 폐수가압장 등
제1종일반주거지역		27,921.9	-	27,921.9	1.7	
제2종일반주거지역		323,025.1	-	323,025.1	19.9	
준주거지역		60,903.6	-	60,903.6	3.8	
공업지역		1,132,257.5	증) 1.2	1,132,258.7	69.7	산업시설용지, 폐수처리시설, 오수가압장, 폐기물매립시설, 주차장 등
일반공업지역		1,132,257.5	증) 1.2	1,132,258.7	69.7	
녹지지역		79,606.0	-	79,606.0	4.9	도로, 하천, 근린공원, 완충녹지, 수도 시설 등
자연녹지지역		79,606.0	-	79,606.0	4.9	

※ 변경사유 : A3블록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면적조정으로 용도지역면적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산업단지(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623,714.1	증) 1.2	1,623,715.3	100.0	
산업시설용지		894,265.6	-	894,265.6	55.1	
지원시설용지		33,940.1	-	33,940.1	2.1	
주거용지		217,543.8	-	217,543.8	13.4	
이주대책용지		15,561.1	-	15,561.1	0.9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62,403.5	증) 1.2	462,404.7	28.5	
	도로	184,491.0	증) 9.8	184,500.8	11.4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9,744.5	-	9,744.5	0.6	
	학교	12,502.2	-	12,502.2	0.8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	4,848.2	-	4,848.2	0.3	
	종교시설	486.6	-	486.6	0.0	
	공공공지	4,586.1	-	4,586.1	0.3	
	하천	10,243.3	-	10,243.3	0.6	
	공원 · 녹지	소 계	감) 8.6	139,515.5	8.6	
		공원	-	57,854.2	3.6	
		완충녹지	감) 8.6	69,545.6	4.3	
		연결녹지	-	12,115.7	0.7	
	공급 처리 시설 용지	소 계	-	95,977.5	5.9	
		수도시설(배수지)	-	14,214.1	0.9	
		가스공급설비	-	1,871.7	0.1	
		폐수종말처리시설	-	48,145.3	3.0	
		폐수가압장	-	487.5	0.0	
		오수가압장	-	1,353.9	0.1	
		유수지	-	5,061.5	0.3	차암공원과 중복면적 (4,496.6㎡) 제외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 및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22,680.2	1.4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용도별 구분
				2,163.3	0.1	

※ 변경사유 : A3블록 지적 분할 및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토지이용면적 변경

○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96.5	-	196.5	100.0	
도로		196.2	증) 0.3	196.5	100.0	광로3-3호선
완충녹지		0.3	감) 0.3	-	-	제6호완충녹지

※ 변경사유 : 지구외 지적분할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 및 녹지 면적 변경

8.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3	40 ~ 62	주간선 도로	842 (8,773)	북측 3산업단지 지구계(대로 1-1)	외국인단지 지구계 (불당동 구역계)	일반 도로	충고 25 (93.2.23)	
변경	광로	3	3	40 ~ 62	주간선 도로	842 (8,773)	북측 3산업단지 지구계(대로 1-1)	외국인단지 지구계 (불당동 구역계)	일반 도로	충고 25 (93.2.23)	확정반영 선형조정, 지구외 분할측량
기정	대로	1	6	30.5 ~ 35	주간선 도로	128 (4,715)	광로 3-3 (대로1-1)	중로 1-37 (백석동 구역계)	일반 도로	충고 25 (93.2.23)	
변경	대로	1	6	30.5 ~ 35	주간선 도로	128 (4,715)	광로 3-3 (대로1-1)	중로 1-37 (백석동 구역계)	일반 도로	충고 25 (93.2.23)	확정반영 선형조정
기정	대로	2	3	30 ~ 62	주간선 도로	758 (4,552)	광로 3-3 (광로 3-3)	중로 1-37 (대로 2-5 시점)	일반 도로	충고 168 (97.10.22)	
기정	중로	1	37	20	보조간선 도로	1,437 (4,098)	대로1-6 (대로1-6)	대로 2-3 (중로 2-55)	일반 도로	천고 3 (93.3.6)	
변경	중로	1	37	20	보조간선 도로	1,437 (4,098)	대로1-6 (대로1-6)	대로 2-3 (중로 2-55)	일반 도로	천고 3 (93.3.6)	확정반영 선형조정
기정	중로	1	38	20	보조간선 도로	790 (1,090)	중로 1-40 (중로 1-40)	백석공원 동측부 외국인 산업단지 지구계(중로1-36)	일반 도로	충고 168 (97.10.22)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0	20	보조간선 도로	1,137	광로 3-3	중로1-131	일반 도로	천고 3 (93.3.6)	
기정	중로	1	131	20	주간선 도로	1,458	대로 2-3	차암 299-5 일원 (남서측 지구계)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1	132	22	보조간선 도로	314	중로 1-131	차암 283 일원 (제127호 완충녹지)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1	133	20	보조간선 도로	142	중로 1-131	차암 276-2 일원 (주거용지 출입구)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1	134	20	국지도로	86	중로 1-131	차암 168-4 일원	일반 도로	충고 230 (11.07.20)	
기정	중로	2	92	16	특수도로	10	대로 2-3	성성동 508번지 (삼성 SDI)	보행자 전용도로	천고 제 2002-165 (2003.1.13)	
기정	중로	2	210	15	집산도로	221	중로 1-132	중로 1-133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2	211	15	집산도로	21	차암 370-1 일원 (남측 지구계)	소로 3-1195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2	215	18	집산도로	78	중로 1-131	차암 348-6 일원 (산업시설용지출입구)	일반 도로	충고 230 (11.07.20)	
기정	중로	3	26	12	보조간선 도로	300	중로 1-38	중로 1-37	일반 도로	천고 3 (93.3.6)	
기정	중로	3	168	14	집산도로	19	중로 1-131	소로 1-387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3	169	14	집산도로	18	중로 1-131	소로 1-387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3	195	13	집산도로	179	중로 1-37 (중로 1-37)	광로 3-3 (대로1-1)	일반 도로	충고 17 (14.01.28)	
변경	중로	3	195	13	집산도로	179	중로 1-37 (중로 1-37)	광로 3-3 (대로1-1)	일반 도로	충고 17 (14.01.28)	확정반영 선형조정
기정	소로	1	325	11~ 18	국지도로	168	대로 1-6	3호 폐수처리장 북측경계부	일반 도로	천고 제 2002-165 (2003.1.13)	
기정	소로	1	387	10	국지도로	293	차암동 344-7 (이주자택지 남측)	소로 2-1459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2	1444	8	국지도로	102	소로 1-387	소로 2-1445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2	1445	8	국지도로	150	소로 1-387	소로 2-1447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2	1446	8	국지도로	30	소로 1-387	소로 2-1445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2	1447	8	국지도로	72	소로 1-387	차암 340-11 일원 (이주자택지 남측)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2	1448	8	국지도로	186	차암 334-1 일원 (소로 1-387)	차암동 337-6 일원 (소로 1-387)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2	1459	8	국지도로	118	소로 1-387	차암동 303-6 (남서측구역계)	일반 도로	충고 230 (11.07.20)	
기정	소로	3	1191	6	국지도로	31	차암 305-2 일원 (이주자택지 서측)	차암 303-3 일원 (이주자택지 서측)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3	1192	6	특수도로	15	소로 1-387	차암 326-3 일원 (제43호 공공공지)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3	1193	4	특수도로	20	중로 1-131	소로 2-1448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3	1194	6	국지도로	40	소로 2-1444	차암 323-4 일원 (이주자택지 서측)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3	1195	6	국지도로	161	중로 1-37	중로 2-211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3	1282	3	특수도로	8	대로 1-6	백석동 719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17 (14.01.28)	
변경	소로	3	1282	3	특수도로	8	대로 1-6	백석동 719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17 (14.01.28)	확정반영 선형조정
기정	소로	3	1283	3	특수도로	7	광로 3-3 (대로1-1)	백석동 719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17 (14.01.28)	
변경	소로	3	1283	3	특수도로	7	광로 3-3 (대로1-1)	백석동 719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17 (14.01.28)	확정반영 선형조정

주 : 연장은 사업지구 내 편입구간을 기재하였으며, 도로의 전체구간 연장은 () 내에 기재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다. 공원·녹지계획(변경)

1) 공원계획(변경없음)

2)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2개소				81,669.9	감) 8.6	81,661.3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대로1-6호선 ~ 대로1-1호선	8,635.5 (100,059.5)	증) 22.2 (증)21.9	8,657.7 (100,081.4)	충고 25 (93.12.18)	백석동, 제4산단 (확정반영) (지구외 분할측량)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대로 1-6호선변	4,475.4 (91,920.4)	감) 30.8 (감)30.8	4,444.6 (91,889.6)	충고 25 (93.12.18)	백석동 (확정반영)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37호선변	8,143.5	-	8,143.5	충고 168 (97.10.22)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대로 2-3호선변	10,027.7 (51,140.1)	-	10,027.7 (51,140.1)	충고 192 (01.01.02)	제4산단
기정	171	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75 서측변	7,253.2	-	7,253.2	충고 388 (09.01.07)	
기정	172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서측변	18,398.1	-	18,398.1	충고 388 (09.01.07)	
기정	173	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우측부	904.0	-	904.0	충고 388 (09.01.07)	
기정	17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동측변	4,842.3	-	4,842.3	충고 388 (09.01.07)	
기정	175	녹지	완충녹지	소로 1-387호선 종점부	20.9	-	20.9	충고 388 (09.01.07)	
기정	176	녹지	완충녹지	이주자택지 우측부	3,721.8	-	3,721.8	충고 388 (09.01.07)	
기정	177	녹지	완충녹지	주차장 78 서측	3,131.8	-	3,131.8	충고 388 (09.01.07)	
기정	178	녹지	연결녹지	하천 178(산동천) 동측	12,115.7	-	12,115.7	충고 388 (09.01.07)	

주 : •면적은 사업지구 내 편입면적을 기재하였으며, 녹지의 전체면적은 () 내에 기재

• 천안4산단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27호 완충녹지 전체면적() 변경사항 반영 (천안시고시 2012-144호, 2012.09.03.)

3) 공공공지(변경없음)

4) 하천(변경없음)

라. 학교계획(변경없음)

마. 복합커뮤니티시설계획(변경없음)

바.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사.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아.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자.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차.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카.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타. 신규조성단지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변경없음)

파.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하.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거. 유수지계획(변경없음)

9.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없음) - 다른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생략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구분		시행자 및 주소	비고
기조성단지	전체	• 시행자 : 천안시장	2001.08.02. 준공인가
	A1-2일원	• 시행자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농서동)	
	A3일원	• 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신규단지	1공구	• 시행자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2013.05.15. 준공인가
	2공구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12-1 203호	2015.01.13. 준공인가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

구분	시행자 및 주소	비고
기조성단지(A3블록)준용사업 (광로3-3, 제6호완충녹지 변경)	• 시행자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이사 김규철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산업단지 (변경)

○ 위 치 : (A3블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9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면 적 : (A3블록) 기정 24,935.5㎡, 변경 24,936.7㎡, 중) 1.2㎡

- 산업단지 : 기정 1,623,714.1㎡, 변경 1,623,715.3㎡, 중) 1.2㎡

(기조성단지 : 827,073.2㎡, 신규조성단지 : 796,642.1㎡)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변경)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25번지 일원

○ 면적 : 기정 196.2㎡, 변경 196.5㎡, 중) 0.3㎡

※ 변경사유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일원에 광로3-3호선과 중로3-195호선이 연결되는 지구 외 가각부 선형조정을 하고자 금회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을 신설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구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고
기조성단지	전체(그 외)	• 1992년 ~ 2001년	• 공영개발	2001.08.02. 준공인가
	A1-2일원	• 2015.06 ~ 2016.05	• 민간개발(실수요자)	
	A3일원	• 2013년 ~ 2017년 12월	• 민간개발	
신규단지	1공구	• 2006년 ~ 2014년	• 제3섹터개발	2013.05.15. 준공인가
	2공구			2015.01.13. 준공인가

나. 산업단지(A3블록) 외의 사업

구분	개발기간	개발방법	비고
기조성단지(A3블록)준용사업 (광로3-3, 제6호완충녹지 변경)	• 2017년 7월 ~ 2017년 12월	• 민간개발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첨부(도면생략)

7.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 생략)

□ 첨부(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3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1,623,714.1	증) 1.2	1,623,715.3	중고 388 (09.01.0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103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1,623,714.1m ² → 1,623,715.3m ² (증) 1.2m ²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지구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623,714.1	증) 1.2	1,623,715.3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계	411,850.6	-	411,850.6	25.4	
		소 계	350,947.0	-	350,947.0	21.6	
		제1종 일반주거지역	27,921.9	-	27,921.9	1.7	
		제2종 일반주거지역	323,025.1	-	323,025.1	19.9	
	준주거지역		60,903.6	-	60,903.6	3.8	
공업 지역	계		1,132,257.5	증) 1.2	1,132,258.7	69.7	
	일반공업지역		1,132,257.5	증) 1.2	1,132,258.7	69.7	
녹지 지역	계		79,606.0	-	79,606.0	4.9	
	자연녹지지역		79,606.0	-	79,606.0	4.9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일반공업	일반공업	1.2	250%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조정으 로 용도지역면적 변경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33	8,529	172,402	10	5,143	114,005	11	1,746	33,156	12	1,640	24,802
광로	1	842	16,758	-	-	-	-	-	-	1	842	16,758
대로	2	886	22,988	1	128	-	1	758	22,988	-	-	-
중로	15	5,400	120,705	7	4,554	109,078	4	330	5,193	4	516	6,434
소로	15	1,401	11,951	2	461	5,366	6	658	4,975	7	287	1,610

주1 : 도로면적은 가각·가감속차선·버스정차장 등의 면적(12,089.0m² → 12,098.8 중) 9.8m²)을 미포함

주2 : 광로 3-3호선, 대로1-6호선, 대로2-3호선, 소로 1-325호선, 소로 2-1447호선은 평균폭원을 적용하여 면적산정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3	40 ~62	주간선 도 로	842 (8,773)	북측 3산업단지 지구계(대로 1-1)	외국인단지 지구계 (불당동 구역계)	일반 도로	충고 25 (93.2.23)	
변경	광로	3	3	40 ~62	주간선 도 로	842 (8,773)	북측 3산업단지 지구계(대로 1-1)	외국인단지 지구계 (불당동 구역계)	일반 도로	충고 25 (93.2.23)	확정반영 지구외 분할측량
기정	대로	1	6	30.5 ~35	주간선 도 로	128 (4,715)	광로 3-3 (대로1-1)	중로 1-37 (백석동 구역계)	일반 도로	충고 25 (93.2.23)	
변경	대로	1	6	30.5 ~35	주간선 도 로	128 (4,715)	광로 3-3 (대로1-1)	중로 1-37 (백석동 구역계)	일반 도로	충고 25 (93.2.23)	확정반영 선형조정
기정	대로	2	3	30 ~62	주간선 도 로	758 (4,552)	광로 3-3 (광로 3-3)	중로 1-37 (대로 2-5 시점)	일반 도로	충고 168 (97.10.22)	
기정	중로	1	37	20	보조간선 도 로	1,437 (4,098)	대로1-6 (대로1-6)	대로 2-3 (중로 2-55)	일반 도로	천고 3 (93.3.6)	
변경	중로	1	37	20	보조간선 도 로	1,437 (4,098)	대로1-6 (대로1-6)	대로 2-3 (중로 2-55)	일반 도로	천고 3 (93.3.6)	확정반영 선형조정
기정	중로	1	38	20	보조간선 도 로	790 (1,090)	중로 1-40 (중로 1-40)	백석공원 동측부 외국인 산업단지 지구계(중로1-36)	일반 도로	충고 168 (97.10.22)	
기정	중로	1	40	20	보조간선 도 로	1,137	광로 3-3	중로1-131	일반 도로	천고 3 (93.3.6)	
기정	중로	1	131	20	주간선 도 로	1,458	대로 2-3	차암 299-5 일원 (남서측 지구계)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1	132	22	보조간선 도 로	314	중로 1-131	차암 283 일원 (제127호 완충녹지)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1	133	20	보조간선 도 로	142	중로 1-131	차암 276-2 일원 (주거용지 출입구)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1	134	20	국지도로	86	중로 1-131	차암 168-4 일원	일반 도로	충고 230 (11.07.20)	
기정	중로	2	92	16	특수도로	10	대로 2-3	성성동 508번지 (삼성 SDI)	보행자 전용도로	천고 제 2002-165 (2003.1.13)	
기정	중로	2	210	15	집산도로	221	중로 1-132	중로 1-133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2	211	15	집산도로	21	차암 370-1 일원 (남측 지구계)	소로 3-1195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2	215	18	집산도로	78	중로 1-131	차암 348-6 일원 (산업시설용지출입구)	일반 도로	충고 230 (11.07.20)	
기정	중로	3	26	12	보조간선 도 로	300	중로 1-38	중로 1-37	일반 도로	천고 3 (93.3.6)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68	14	집산도로	19	중로 1-131	소로 1-387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3	169	14	집산도로	18	중로 1-131	소로 1-387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중로	3	195	13	집산도로	179	중로 1-37 (중로 1-37)	광로 3-3 (대로1-1)	일반 도로	충고 17 (14.01.28)	
변경	중로	3	195	13	집산도로	179	중로 1-37 (중로 1-37)	광로 3-3 (대로1-1)	일반 도로	충고 17 (14.01.28)	확정반영 선형조정
기정	소로	1	325	11~ 18	국지도로	168	대로 1-6	3호 폐수처리장 북측경계부	일반 도로	천고 제 2002-165 (2003.1.13)	
기정	소로	1	387	10	국지도로	293	차암동 344-7 (이주자택지 남측)	소로 2-1459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2	1444	8	국지도로	102	소로 1-387	소로 2-1445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2	1445	8	국지도로	150	소로 1-387	소로 2-1447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2	1446	8	국지도로	30	소로 1-387	소로 2-1445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2	1447	8	국지도로	72	소로 1-387	차암 340-11 일원 (이주자택지 남측)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2	1448	8	국지도로	186	차암 334-1 일원 (소로 1-387)	차암동 337-6 일원 (소로 1-387)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2	1459	8	국지도로	118	소로 1-387	차암동 303-6 (남서측구역계)	일반 도로	충고 230 (11.07.20)	
기정	소로	3	1191	6	국지도로	31	차암 305-2 일원 (이주자택지 서측)	차암 303-3 일원 (이주자택지 서측)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3	1192	6	특수도로	15	소로 1-387	차암 326-3 일원 (제43호 공공공지)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3	1193	4	특수도로	20	중로 1-131	소로 2-1448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3	1194	6	국지도로	40	소로 2-1444	차암 323-4 일원 (이주자택지 서측)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3	1195	6	국지도로	161	중로 1-37	중로 2-211	일반 도로	충고 388 (09.01.07)	
기정	소로	3	1282	3	특수도로	8	대로 1-6	백석동 719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17 (14.01.28)	
변경	소로	3	1282	3	특수도로	8	대로 1-6	백석동 719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17 (14.01.28)	확정반영 선형조정
기정	소로	3	1283	3	특수도로	7	광로 3-3 (대로1-1)	백석동 719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17 (14.01.28)	
변경	소로	3	1283	3	특수도로	7	광로 3-3 (대로1-1)	백석동 719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충고 17 (14.01.28)	확정반영 선형조정

주 : 연장은 사업지구 내 편입구간을 기재하였으며, 도로의 전체구간 연장은 () 내에 기재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3	광로3-3	● 확정반영	● A3블럭 확정측량 결과 및 지구외 지적 분할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미세한 선형조정
대로1-6	대로1-6	● 확정반영	● A3블럭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미세한 선형조정
중로1-37	중로1-37	● 확정반영	● A3블럭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미세한 선형조정
중로3-195	중로3-195	● 확정반영	● A3블럭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미세한 선형조정
소로3-1282	소로3-1282	● 확정반영	● A3블럭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미세한 선형조정
소로3-1283	소로3-1283	● 확정반영	● A3블럭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미세한 선형조정

2)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없음)

2) 녹지(변경)

○ 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2개소				81,669.9	감) 8.6	81,661.3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대로1-6호선 ~ 대로1-1호선	8,635.5 (100,059.5)	증) 22.2 (증)21.9	8,657.7 (100,081.4)	충고 25 (93.12.18)	백석동, 제4산단 (확정반영) (지구외 공간변경)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대로 1-6호선변	4,475.4 (91,920.4)	감) 30.8 (감)30.8	4,444.6 (91,889.6)	충고 25 (93.12.18)	백석동 (확정반영)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37호선변	8,143.5	-	8,143.5	충고 168 (97.10.22)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대로 2-3호선변	10,027.7 (51,140.1)	-	10,027.7 (51,140.1)	충고 192 (01.01.02)	제4산단
기정	171	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75 서측변	7,253.2	-	7,253.2	충고 388 (09.01.07)	
기정	172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서측변	18,398.1	-	18,398.1	충고 388 (09.01.07)	
기정	173	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우측부	904.0	-	904.0	충고 388 (09.01.07)	
기정	174	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1호선 동측변	4,842.3	-	4,842.3	충고 388 (09.01.07)	
기정	175	녹지	완충녹지	소로 1-387호선 종점부	20.9	-	20.9	충고 388 (09.01.07)	
기정	176	녹지	완충녹지	이주자택지 우측부	3,721.8	-	3,721.8	충고 388 (09.01.07)	
기정	177	녹지	완충녹지	주차장 78 서측	3,131.8	-	3,131.8	충고 388 (09.01.07)	
기정	178	녹지	연결녹지	하천 178(산동천) 동측	12,115.7	-	12,115.7	충고 388 (09.01.07)	

주1 : 면적은 사업지구 내 편입면적을 기재하였으며, 전체면적은 () 내에 기재

○ 완충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완충녹지	•면적 변경 : 증) 21.9㎡ - 100,059.5㎡→100,081.4㎡	• A3블록 확정측량 결과반영 및 지구외 지적분할 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8	완충녹지	•면적 변경 : 감) 30.8㎡ - 91,920.4㎡→91,889.6㎡	• A3블록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

학교(삼송6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내 초6에 (가칭)삼송6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사 1 성 명 : (주)엠디엠플러스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인텔리지1 킨스타워

나. 시행사 2 성 명 : (주)피데스피엠씨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4층(삼성동,조양빌딩)

다. 시행사 3 성 명 : (주)매일방송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필동 1가) 매경미디어센터

라. 시행사 4 성 명 : 한국자산신탁(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삼송6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지구내 초6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315.8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082.34 M²

건축 연면적 : 11,060.73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초6	학	11,315.80m ²	11,315.80m ²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황남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주시 도시디자인과 및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거점지원센터(☎ 054-740-91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동천동 918)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황남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용황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 내 B78(경주시 용강동 597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사업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시행면적 : 15,000m²
- 건 축 면 적 : 4,222.64m²
- 건축연면적 : 12,114.54m²
- 사 업 기 간 : 2017. 10. ~ 2019. 2.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목적

- 경주 용황지구 단지 내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이 되어 입주 예정이며, 기존 황남초등학교를 이전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m²)

위 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용황지구도시개발구역 내 B78(학교2 부지)	초등학교	15,000	15,000	

●(서울)마포구공고제2017-98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22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I-L90T-60	승강기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내장형(90도)] 60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17.10.18	신규 인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공고제2017-54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다우엘리베이터 대표이사 나종국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04, 202호(비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사자는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와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이행 (계약이행 포기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6. 의 건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부서명	의정정책관실	담당자	박병훈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1번지)			전화번호	(053) 803-5142
			전자우편 주 소	bhpark119@korea.kr			모사전송	(053) 803-5046
			제 출 기 한		2017년 11월 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경식(趙敬植)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에 보함

2017.10.2.

방위사업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문승욱(文勝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에 보함

2017.10.12.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정열(劉正悅)

방위사업청 차장에 보함

2017.10.13.

특허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영대(李永大)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0.17.

특허청 특허심판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연호(金蓮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0.17.

병무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상진(李相振)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0.20.

조안초등학교 교사

교사

이중현(李仲鉉)

장학관에 임함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에 보함

2017.10.16.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양성호(梁成豪)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에 보함

2017.10.16.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울릉경찰서장

경정

강상길(姜相吉)

충경에 임함

2017.10.17.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정

김성준(金成俊)

총경에 임함

2017.10.17.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정

이원준(李元準)

총경에 임함

2017.10.1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감

김병수(金丙壽)

경정에 임함

2017.10.17.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윤종원(尹鍾元)

경정에 임함

2017.10.17.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김연호(金年好)

경정에 임함

2017.10.17.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신석기(辛奭基)

경정에 임함

2017.10.17.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박철한(朴哲漢)

경정에 임함

2017.10.17.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이한동(李漢東)

경정에 임함

2017.10.17.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최승우(崔丞佑)

경정에 임함

2017.10.17.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김진서(金振誓)

경정에 임함

2017.10.17.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배근석(裵根錫)

경정에 임함

2017.10.17.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신대호(申大浩)

경정에 임함

2017.10.17.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이인배(李仁培)

경정에 임함

2017.10.17.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정광채(鄭光埰)

경정에 임함

2017.10.17.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조원철(趙源徹)

경정에 임함

2017.10.17.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감

박경흠(朴敬欽)

경정에 임함

2017.10.17.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감

김용재(金容宰)

경정에 임함

2017.10.17.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감

민용기(閔俗基)

경정에 임함

2017.10.17.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강현구(姜賢求)

경정에 임함

2017.10.17.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임석환(林錫煥)

경정에 임함

2017.10.17.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최현(崔賢)

경정에 임함

2017.10.17.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신수익(辛受益)

경정에 임함

2017.10.17.

(대 통 령)

상

훈

‘세계한인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모모야마가쿠인대학 대학원	서 용 달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우투자 및 컨설팅회사	김 주 성	국민훈장 모란장
전 재덴마크한인회	이 형 식	국민훈장 모란장
미주 한국일보	전 성 환	국민훈장 모란장
텍스캠 이집트	조 경 행	국민훈장 모란장
재일민단 니가타현 지방본부	김 경 소	국민훈장 동백장
몽골한인회	박 호 성	국민훈장 동백장
재과키스탄한인회	오 성 훈	국민훈장 동백장
전 카타르한인회	주 길 식	국민훈장 동백장
재일민단 효고현 지방본부	차 득 룡	국민훈장 동백장
전 조선장학회	故 고 계 환	국민훈장 목련장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김 응 창	국민훈장 목련장
오타와 의과대학	이 호 윤	국민훈장 목련장
재일민단 미야기현 지방본부	전 병 준	국민훈장 목련장
워싱턴주 킹카운티 고등법원	정 상 기	국민훈장 목련장
재아랍에미레이트한인회	차 정 현	국민훈장 목련장
작은자매관상선교회	황 옥 선	국민훈장 목련장
길앤신코브 법률사무소	길 옥 빈	국민훈장 석류장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	도 재 영	국민훈장 석류장
전 재일 대한부인회 야마구치현 지방본부	故 신 군 자	국민훈장 석류장
한성코알라	엄 경 호	국민훈장 석류장
소록유니재단	장 재 중	국민훈장 석류장
한인유권자프로젝트	정 종 하	국민훈장 석류장
샌프란시스코 매스터 코럴	정 지 선	국민훈장 석류장
재인도한인회	현 동 화	국민훈장 석류장
재인니 동부자마한인회	김 수 용	국민포장
재일민단 시가현 지방본부	김 시 율	국민포장
알 하나	김 효 관	국민포장
선양한국인(상)회	나 종 수	국민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가나한인회	나 화 련	국민포장
무도관	못쉬 노베르트	국민포장
뉴햄프셔한인회	박 선 우	국민포장
재일민단 나가노현 지방본부	양 성 근	국민포장
재일민단 오카야마현 지방본부	이 근 배	국민포장
전 뉴욕한인 와이엠씨에이	이 원 규	국민포장
재우루과이한인회	이 형 만	국민포장
미주 태권도 및 무예 고수 총연맹	최 응 길	국민포장
권철회 합동법률사무소	권 철 회	대통령표창
뉴델리한글학교	김 명 애	대통령표창
동티모르 체육청소년청	김 신 환	대통령표창
멜번 한인문화원 건립추진위원회	김 용 귀	대통령표창
사우디아라비아리아드한인회	김 원 철	대통령표창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김 주 철	대통령표창
전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	김 준 배	대통령표창
재일민단 이쿠노 미나미지부	김 철 홍	대통령표창
라스팔마스한글학교	김 현 숙	대통령표창
남서부플로리다한인회	김 혜 일	대통령표창
재칠레한국한글학교	남 도 우	대통령표창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대통령표창
	워싱턴지회	
	미국 엘에이	
	한인타운 노인 및	대통령표창
	커뮤니티 센터	
재일민단 홋카이도 치토세지부	미쓰하시요시	대통령표창
뉴욕시립대학교 퀸즈칼리지 및 대학원	민 권 센터	대통령표창
니카라과한인회	민 병 갑	대통령표창
중국 천진한국인(상)회	박 대 규	대통령표창
한브교육협회	성 민 영	대통령표창
재일민단 아이치현 메이추지부	안 경 자	대통령표창
	안 종 한	대통령표창
	웰링턴한인회	대통령표창
과테말라한글학교	이 은 덕	대통령표창
프랑스한글학교협의회	이 장 석	대통령표창
재일본관서한국인연합회	이 효 성	대통령표창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장 세 구	대통령표창
	재이란한인회	대통령표창
싱가포르한인회	정 건 진	대통령표창
카자흐스탄한인회	조 성 관	대통령표창
전 미시간한인회	차 승 순	대통령표창
전 알래스카앵커리지한인회	최 갑 순	대통령표창
밴쿠버한인라이온스클럽	최 태 주	대통령표창
서울-샌프란시스코 자매도시위원회	최 해 건	대통령표창
북경한글학교	황 인 원	대통령표창
		2017. 9. 27.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캘거리 노인회	강 대 욱	국무총리표창
전 교회일보	故 우 병 만	국무총리표창
중국한국인회	구 기 창	국무총리표창
청도조선족여성협회	김 미 정	국무총리표창
엘살바도르한인회	김 은 희	국무총리표창
사우디아라비아 카티프중앙병원	김 혜 영	국무총리표창
재일본한국인연합회	박 승 관	국무총리표창
독일 중부 태권도협회	백 진 건	국무총리표창
마인츠 한독친목회	베른트 키비쉬	국무총리표창
재인도네시아반동한인회	엄 정 호	국무총리표창
브라질한인회	오 창 훈	국무총리표창
유나이티드 엔터프라이즈	이 춘 섭	국무총리표창
홍콩한인여성회	임 미 정	국무총리표창
바울선교회	정 병 훈	국무총리표창
재우루과이한인회	조 동 준	국무총리표창
재일본한국인연합회	조 옥 제	국무총리표창
재청도한국인(상)회 평도지회	조 현 석	국무총리표창
시드니 주안교회	진 기 현	국무총리표창
빅토리아주한인회	최 유 근	국무총리표창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단	표 성 룡	국무총리표창
파리한글학교	함 미 연	국무총리표창
모잠비크한인회	홍 승 춘	국무총리표창

2017. 9. 27.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 형사소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7형제 40507호	2017압제 2129호	최○○	외환거래 법위반 등		1	애플 아이폰6플러스 (IMEI:352050076366631, 케이스 포함)	

-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10월 24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 환부인	압 수 물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5형 제3 6567	2015압제1 659	김길현 외 1	성명불상	1	[압수현금]5만원권 (일부 피해자 환부 후 잔액 1,754,712원)	1,754,712원
				2	[압수현금]1만원권	206매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7년 10월 24일

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6형 제 15159	2016압제 551	국화외11명	사기	성명불상	15	현금(오만원권 215장, 일만원권 8장)	
2016형 제 15159	2016압제 551	국화외11명	사기	성명불상	16	현금(오만원권 20매)	